

2011년도 국가통계 품질개선평가 연구용역

『평생교육통계』 품질개선평가 최종결과보고서

- 통계작성 포괄범위 개선 -

2011. 11.

제 출 문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평생교육통계』 품질개선지원 연구
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개선지원 부문]: 통계작성 포괄범위 개선

2011년 11월

계약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진

책임연구원	한승희
연구원	김한별, 양은아
연구보조원	이은정, 이재열

요 약 문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평생교육통계」 통계작성 포괄범위 개선
주제어	평생교육통계
연구기간	2011. 07. 07 ~ 2011. 11. 10 (4개월)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한승희, 김한별, 양은아
2007년 출범한 평생교육통계는 평생교육법의 직접 관리를 받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관리를 지원함과 아울러 기타 핵심기관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지난 4년간 자료가 축적되었지만, 자료의 신뢰성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자료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평생교육통계 작성 포괄범위 개선 연구>는 2007년 출범한 평생교육통계의 현단계 문제를 보완하고 포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평생교육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은 크게 첫째, 데이터 및 방법적 수준에서, 둘째, 개념과 범주 수준에서, 셋째 운영 및 제도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첫째, 데이터 및 방법적 수준의 단계에서는 (1) 프로그램 영역 데이터 오류와 (2) 불필요한 데이터 입력의 간소화 문제, (3) 활용가치에 따른 조사항목 조정의 필요성, (4) 조사내용의 장표 및 자료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개념과 범주 수준의 단계에서는 (4) 조사내용의 장표 및 자료집에 대한 개선 (5) 조사기관 범위의 재설정 (6) 자료수집 방식의 개선, (7) 조사주체의 전문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현재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평생교육법령 등록 기관만으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실제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자체 수준에서는 이미 평생교육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1유형)을 넘어선 기타법령 등록기관(2유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수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평생교육통계조사가 1유형 기관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평생교육 실천에 관한 전수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관의 전수 범위를 재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생교육통계조사가 확장해야 할 유형을 범주화하여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 및 제도적 차원에서는 (8) 분류체계 항목 선택의 구조적 오류, (9)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하였다. 여러 부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기관 및 특히 프로그램 조사 분류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새로운 논리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평생교육법을 통해 기관유형 뿐 아니라 프로그램 유형에 관한 명확한 범주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자격조건 유지 관리 방안 및 품질 유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 차

1장. 서론	1
1절. 연구 목적	1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2장. 평생교육통계 개요 및 개선과제	10
1절. 평생교육통계 개요	10
1) 국제 평생교육통계조사 현황	10
2) 한국 평생교육의 공급지형	17
3) 국내 평생교육통계의 실제	26
2절. 개선과제	43
1) 개선과제명 1: 프로그램 영역 데이터 오류의 문제	43
(1) 현황	43
(2) 문제점	43
(3) 개선방안 개요	47
2) 개선과제명 2: 불필요한 데이터 입력의 간소화 문제	48
(1) 현황	48
(2) 문제점	48
(3) 개선방안 개요	54

3) 개선과제명 3: 활용가치에 따른 조사항목 조정의 필요성	55
(1) 현황	55
(2) 문제점	55
(3) 개선방안 개요	55
4) 개선과제명 4: 조사내용의 장표 및 자료집에 대한 개선	56
(1) 현황	56
(2) 문제점	56
(3) 개선방안 개요	57
5) 개선과제명 5: 조사기관 범위의 재설정	59
(1) 현황	59
(2) 문제점	61
(3) 개선방안 개요	61
6) 개선과제명 6: 자료수집 방식의 개선	64
(1) 현황	64
(2) 문제점	64
(3) 개선방안 개요	66
7) 개선과제명 7: 조사주체의 전문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	68
(1) 현황	68
(2) 문제점	68
(3) 개선방안 개요	70

8) 개선과제명 8: 분류체계 항목 선택의 구조적 오류	72
(1) 현황	72
(2) 문제점	73
(3) 개선방안 개요	74
9) 개선과제명 9: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75
(1) 현황	75
(2) 문제점	75
(3) 개선방안 개요	76
3장. 개선과제별 세부 개선방안	78
1절. 개선과제명: 프로그램 영역 데이터 오류의 문제	78
2절. 개선과제명: 불필요한 데이터 입력의 간소화 문제	83
3절. 개선과제명: 활용가치에 따른 조사항목 조정의 필요성	87
4절. 개선과제명: 조사내용의 장표 및 자료집에 대한 개선	112
5절. 개선과제명: 조사기관 범위의 재설정	114
6절. 개선과제명: 자료수집 방식의 개선	118
7절. 개선과제명: 조사주체의 전문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	122
8절. 개선과제명: 분류체계 항목 선택의 구조적 오류	129
9절. 개선과제명: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131
4장. 결론 및 제안	133
참고문헌	162

- 표 목 차 -

[표 1] 평생교육통계조사 품질진단에 따른 제시 과제	3
[표 2] 전문가 회의 수행 목록	7
[표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담당자 전화인터뷰 목록	8
[표 4] 15개의 평생학습의 질적 지표	14
[표 5] 유럽 성인교육조사의 용어 구분 및 분류 예시	15
[표 6]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유형	19
[표 7] 설학원 형태 평생직업교육기관 세부 유형	20
[표 8] 복지관 등 기타 형태 평생교육기관	22
[표 9]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대상, 기준일, 방법	26
[표 10] 평생교육통계시스템을 통한 평생교육통계 직접 조사대상	27
[표 11] 평생교육통계 공통 조사항목	30
[표 12] 평생교육통계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39
[표 13]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명령에 관한 통계법	40
[표 14] 관련 통계작성기관의 의무에 관한 통계법	40
[표 15] 관련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응답자의 의무에 관한 통계법	41
[표 16]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한 통계법	41
[표 17]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통계법	42
[표 18] 통계종사자를 위한 통계교육에 관한 통계법	42
[표 19]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대상기관 현황	60
[표 20] 부산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대상기관 현황	60
[표 21] 평생교육시설 분류 및 조사대상 범위 예시	62
[표 21] 평생교육통계에 포함될 수 있는 타법령에 따른 기관 수	63

[표 23]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 통계조사 관련 조항	75
[표 24] 평생교육통계 조사항목 조정안	89
[표 25] 평생교육시설 분류 및 조사대상 범위 예시 (조사유형 포함) ·	115
[표 26]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대상기관 현황	116
[표 27] 부산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대상기관 현황	116
[표 28] 평생교육통계에 포함될 수 있는 타법령에 따른 기관 수	117
[표 29]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조사체계	121
[표 30] 2유형 평생교육시설 관련 해당 중앙부처의 통계담당부서	124
[표 31] 기술계 학원의 교습과정	130
[표 32]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 통계조사 관련 조항	131

- 그 림 목 차 -

[그림 1] 연구 흐름도	9
[그림 2]기관개황 입력 화면	29
[그림 3] 교육청 체계, 지자체 체계, 대학 체계의 평생교육통계조사	31
[그림 4] 교육청 체계 평생교육통계조사 흐름	32
[그림 5] 평생학습관 체계 평생교육통계조사 흐름	33
[그림 6] 대학(원) 부설 체계 평생교육통계조사 흐름	34
[그림 7] 2008년 학력보완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44
[그림 8] 2008년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45
[그림 9] 2009-2010년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46
[그림 10]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46
[그림 11]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그램 및 학습자 입력창	49
[그림 12] 평생교육통계조사 교강사 입력창	50
[그림 13] 평생교육통계조사 일반프로그램 분류	52
[그림 14] 평생교육통계조사 교육시수계산 방법	53
[그림 15] 2008년 학력보완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78
[그림 16] 2008년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79
[그림 17] 2009-2010년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	79
[그림 18]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80
[그림 19]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그램 및 학습자 입력창	83
[그림 20] 평생교육통계조사 교강사 입력창	84
[그림 21] 평생교육통계조사 일반프로그램 분류	85

[그림 22] 평생교육통계조사 교육시수계산 방법	86
[그림 23] 중앙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 평생교육 담당부서와의 협력관계	127

- 부 록 -

[부록 1] 시도별 평생교육기관 조사 범위 및 기관 유형화, 기관조사 항목	124
[부록 2] 시도별 프로그램 분류 및 프로그램 조사항목	127
[부록 3] 한국교육개발원과 지역별 조사항목 비교	129
[부록 4] 평생교육통계조사를 하는 지역 사례 자료	136
[부록 5] 프로그램 분류체계(KLPCS) 설명	161

1장. 서론

1절. 연구 목적

- 평생교육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형식 성인교육을 의미하며, 국가에 의해 지원, 관리되고 있는 형식, 비형식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강사 및 전문가, 시설 및 재정 등 가운데 학교교육관련법(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의해 직접 조사 관리되는 교육시스템을 제외한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등록 관리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및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포함된다.
- 평생교육통계는 평생교육시스템이 포괄하는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교강사, 학습자, 예산 및 시설, 기타 평생교육의 이해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현재는 전체 모수 가운데 평생교육법이 직접 관리하는 영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심으로 매년 실시한다. 그 내용은 교육기관 개황, 프로그램 현황, 학습자 현황 및 교직원 수 등과 함께 평생교육사 양성현황, 학습도시 현황 등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

□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출범

- 평생교육통계는 그 설계 당시부터 <평생학습지표>라는 거시지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2000년 대로 들어서면서 평생학습, 고령화, 직업유연화와 계속교육의 증대, 취미교양 및 문화학습의 확대, 자발적 교육공급의 확대, 학습도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의 등장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학습사회> 구도에 발맞추어 이 흐름을 총체적으로 지표화하려는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당시 관련 연구 (한승희 외, 2007, 평생학습 지표개발 및 통계조사체제 수립 연구)는 대한민국의 학습사회화를 지표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디자인하였고, 이를 위한 조사체계로서 (1) 개인 표본조사, (2) 성인교육기관 표본조사, (3) 핵심역량 표본조사, (4) 자격 및 직무능력표준 조사, (5) 평생교육 정책, 자원, 시스템 종합 조사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평생교육통계>는 성인교육기관에 관한 조사시스템으로 디자인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평생교육통계는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는 관련교육기관, 프로그램, 교강사, 학습자 및 현황 등에 관련된 기초조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2007년 출범하였다. 이후 평생교육법의 직접 관리를 받는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관리를 지원함과 아울러 기타 핵심기관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 평생교육통계조사 개선의 필요성 대두

- 점차적으로 통계의 의미가 확장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가면서 평생교육통계에 대해 기대되는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평생교육통계시스템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그 한계는 우선 (1) 평생교육 전체현황 가운데 일부 기관만 조사를 하고 있으며, (2) 동향과 추세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보다는 평생교육법의 집행기능을 지원하는 행정적 목적이 더 컸으며, (3)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강제력의 미흡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정확성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4) 비형식성인교육 조

사의 경우 학교조사의 일사불란함과는 다른 분권화된 조사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체계가 요청되었다.

- 2008년 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분리 독립하게 됨으로써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시스템과의 이 분야 통계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협조체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청은 평생교육통계조사 정기품질진단(2008년)을 통하여 본 통계조사의 품질을 진단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단기 및 장기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종류	개선과제
단기과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집 장표 개선
	이용자의 자료접근성 강화
	정확한 응답확보 가능성 제고
장기과제	조사대상 범위의 점진적 확대
	이용자 정보 이용가능성 개선
	조사대상기관의 응답절차의 간소화
	통계작성 인력의 보강
	통계작성의 전문성 유지기반 확보

[표 1] 평생교육통계조사 품질진단에 따른 제시 과제

- 이에 이번 <평생교육통계 작성 포괄범위 개선 연구>는 2007년 출범한 평생교육통계의 현단계 문제를 보완하고 포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평생교육통계의 장표, 조사범위, 사용자 편의성, 파급효과 등 전반에 관한 포괄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조사체제 개선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이를 위해 다음의 여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통계의 현단계 문제를 보완하고 포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조사의 목적 및 사용자 범위에 대한 재정의

- 평생교육통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조사의 목적 및 범위 등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다.

☐ 조사내용의 장표에 대한 개선

- 수요변화에 대한 조사 내용 및 장표 등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을 제공한다.

☐ 조사기관 범위에 대한 재정의 및 협조체계 가능성 탐색

- 현재 평생교육법 직접 관리 대상 기관의 범주를 확대하여 새롭게 조사에 포함될 기관들의 범위와 영역을 확정한다.

☐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조사체계 개선

- 조사항목의 개념적 다의성(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료의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 조사담당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 시스템 디자인

- 현재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 주무부서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핵심조사체계로서의 <평생교육통계>의 위상과 전략 구축
- 긴 안목에서 본 조사가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의 평생교육의 거시적 경향성을 지표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항목 및 조사 범위를 조정한다.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관련 문헌연구 및 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담당자 인터뷰, 통계자료분석 및 재개념화, 시행기관과의 정례회의 등의 방법으로 수행된다.

□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 국내의 평생교육통계조사 관련 사례 및 관련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국외의 경우 OECD, EU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사업에 대한 문헌 및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국내의 경우 한국의 사회지표, 교육통계연보, 평생교육통계, 평생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 관련 사업 연구, 각 지역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등에 대한 문헌 및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 특히 국내 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조사 양식들을 수집하여 시도별 평생교육기관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기관 및 프로그램의 범위, 기관 및 프로그램의 유형화,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주기, 데이터 관리 방법과 활용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평생교육기관 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광역의 자료를 참고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나 해당 지역 기관 차원의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6개 시도의 흐름을 파악한다.

□ 전문가 회의

- 통계의 활용 및 사용범위 확정, 새로운 조사항목 개발 등을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수행한다.

구 분		참석자	논의 주제
1	7/7	·이경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평생교육팀장) ·신진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평생교육팀)	1. 조사주체의 전문성 및 운영방식 문제 2. 각 16개 시도에서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사의 현황, 조사항목및 기관들의 범주, 현재까지 설립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향후 역할 가능성 등
2	7/20	·최돈민 (상지대학교 교수, 평생교육학회 회장)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	3. 250여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패턴 및 best practice사례
3	8/10	·고영상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지역평생교육지원실 실장)	4. 통계조사 항목 설정에서의 구조적 문제와 결함 및 삭제하거나 새로 삽입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고민
4	8/12	·조대연 (고려대학교 교수)	5. 조사대상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및 향후 조사를 비법정 기관까지로 확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예측
5	8/17	·고영상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지역평생교육지원실 실장) ·박상옥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대학평생교육지원실 실장) ·박형민 (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본부 대외협력실 실장)	6. 비법정 기관까지 확대할 때, 평생교육기관의 개념과 정의를 다시 만드는 일 등의 개념적 범주에 관한 논의 등 7.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개정 문제 등

구 분		참석자	논의주제
6	10/6	·김무웅 (달서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 ·안현숙 (대구 수성구청 평생교육사)	1. 조사주체의 전문성 및 운영방식 문제 2. 각 16개 시도에서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사의 현황, 조사항목및 기관들의 범주, 현재까지 설립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향후 역할 가능성 등
7	10/12	·이충렬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고영화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진화 (동의대학교 교수) ·오혁진 (동의대학교 교수)	3. 250여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패턴 및 best practice 사례 4. 통계조사 항목 설정에서의 구조적 문제와 결함 및 삭제하거나 새로 삽입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고민 5. 조사대상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및 향후 조사를 비법정 기관까지로 확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예측
8	10/19	·이영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6. 비법정 기관까지 확대할 때, 평생교육기관의 개념과 정의를 다시 만드는 일 등의 개념적 범주에 관한 논의 등
9	10/22	·추계 평생교육학회에서 평생교육 연구자들 및 실천가들과의 논의 (광주교대에서 진행됨)	7.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개정 문제 등

[표 2] 전문가 회의 수행 목록

□ 통계 자료 분석 및 재개념화

- 기존 조사체계를 통해 확보된 자료들의 현실적인 활용도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재디자인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평생교육통계 원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 2011년 8월 17일 1차 워크숍
- 2011년 8월 24일 2차 워크숍
- 2011년 8월 31일 3차 워크숍

□ 관련기관 담당자 전화 인터뷰

- 향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사현실성 확보를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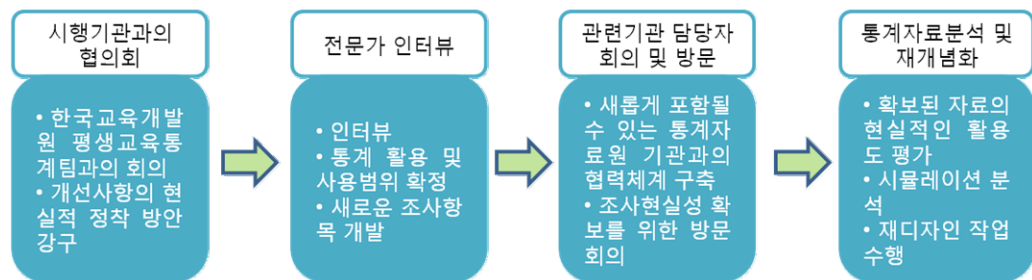
구분	지역	광역	기관명	담당자
1	강원도	강원	삼척시 평생학습지원센터	정미경
2	강원도	강원	화천군청	이영순
3	경기도	경기	과천시청	홍복자
4	경기도	경기	광명시 평생학습원	신민선
5	경기도	경기	안산교육청	이원근
6	경기도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청	이경철
7	경기도	경기	김포시청	김숙경
8	경기도	경기	남양주시	김종선
9	경기도	경기	수원시	최라영
10	경기도	경기	시흥시	김정애
11	경기도	경기	안산시	장나리
12	경기도	경기	경기도청	연종희
13	경기도	경기	평택시청	강대호
14	경상남도	경남	거창군청	김광선
15	경상남도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전하영
16	경상남도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박경희
17	경상남도	부산	해운대구청	송정환
18	경상남도	부산	부산 평생교육진흥원	고영화

19	경상북도	경북	경북도청	유수호
20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청	노태일
21	경상북도	대구	달서구청	김무용
22	경상북도	대구	대덕구	이유진
23	서울	서울	서울시청 평생교육지원팀	이학용
24	인천	인천	연수구청	이주희
25	전라남도	광주	광주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김재철
26	전라남도	전남	전라남도청	박순란
27	제주도	제주	서귀포시	김훈자
28	제주도	제주	제주도청	김인영
29	제주도	제주	제주시	고성중
30	충청남도	대전	대전시 평생교육진흥원	박성익
31	충청남도	충남	서천군	정선옥
32	충청남도	충남	아산시	최형순

[표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담당자 전화인터뷰 목록

□ 시행기관과의 회의

- 현재 통계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평생교육통계팀 팀장 및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의 현실적 정착 방안을 강구한다.



[그림 1] 연구흐름도

2장. 평생교육통계 개요 및 개선과제

1절. 평생교육통계 개요

1) 국제 평생교육통계조사 현황

-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습행위와 결과물들을 측정하기 위한 국가적/국제적 지표 개발 노력들이 OECD나 UNESCO, EU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치가 경제적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여겨지면서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평생학습은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재구조화와 재개념화를 지향한다.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법을 상정하면서, 통합된 관점으로 다양한 학습현상의 특성과 변화들을 읽어낼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평생학습은 형식, 무형식, 비형식학습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지식, 스킬, 역량 발전을 목적으로 삶 전체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학습활동을 포함한다(European Commission, 2005). 따라서 평생학습 지표는 이러한 평생학습의 특성이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화될 때 평생학습 지표로서의 의미가 형성될 수 있다.
- 이에 대한 기초작업으로서 평생학습의 기본개념 및 측정기준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고, 학습을 학습행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는 체계적 노력들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기초조사로서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ALS: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와 그 후속 사업으로 진행된 ‘성인 문해 및 생애능력 조사(ALL: Adult Literacy & Life Skills Survey)’를 실시하였고, 국제교육지표사업(INES:

Indicators of Educational System)의 일환으로 계속 교육과 훈련(CET: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에 대한 정기적인 자료 수집을 해오고 있다.

- EU 역시 개인의 기술 및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위한 전략으로 평생학습 임시 조사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평생학습행위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로 HaLLa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행위의 준거를 제공하였으며, 유럽연합의 행정기구인 유럽 집행 위원회는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토대로 평생학습의 질적 지표를 만들어 34개 국가의 평생학습의 질을 비교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2).
- 국제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는 성인학습 참여율 등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패턴과 관련된 연구들이며, 이 참여패턴과 노동참여패턴을 연결함으로써 평생학습의 고용가능성 증진 및 사회통합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의 평생교육통계조사처럼 비형식 성인교육 기관 전수를 전략적으로 조사하려는 시도는 일본 등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평생교육 제도화 및 법제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정책 주체,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시행 네트워크, 중앙정부-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평생학습도시 사업, 각종 프로그램 지원 정책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의 제도화, 정책화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기관, 프로그램, 강사, 조건 등에 관한 전수조사는 그 시행여하에 따라 평생교육정책 및 현상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유럽위원회(EC)의 평생학습의 질 관련 지표 보고서

(European Report on Quality Indicators of Lifelong Learning)

- 2000년 3월 리스본 유럽의회(The Lisbon European Council)는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지식 기반 경제로 발전시키기로 결의했다. 2010년까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욱 응집된 사회결속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럽 전체의 교육·훈련 체제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실천들이 1) 유럽 연합의 교육·훈련 체제의 질과 효과성 향상 2) 모든 시민이 교육·훈련 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3) 유럽 외 다른 국가들에게 교육·훈련 체제의 개방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교육·훈련은 지식사회에서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해결하는 전략이 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은 시민성, 사회적 응집성, 고용 및 개인 성취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 되면서 개인에 대한 교육·훈련 정책 수립시 유럽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의 질은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평생학습의 질에 대한 지표 연구가 시작되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998년 6월 프라하에서 열린 ‘학교 체제 내 평가’에 대한

회의를 기반으로 하여 2000년 부카레스트 연차 회의에서 16개의 질 지표를 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의 질에 관한 유럽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는 교육·훈련의 전 분야를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려는 노력의 시초가 되었다.

- 유럽 의회가 정한 세 가지 목표에 따라 또다시 13개의 구체적인 목표들이 설정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지표 개발, 벤치마킹, 성공 사례 교환, 동료 평가 등의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유럽 연합의 평생학습 지표개발은 이와 같이 사회적 맥락과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작된 것으로, 평생학습 질 지표개발에 관한 본격적인 작업은 2001년 1월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는 OECD와 UNESCO는 물론 34개 유럽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유럽은 2010년까지 유럽의 교육·훈련 체제를 세계적 표준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우며 평생교육 질 지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지표들은 다음 장의 표와 같다. 이 지표들은 크게 네 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 첫 번째 영역은 기술, 태도, 역량에 대한 것으로 개인적 차원의 지표이다. 2) 두 번째 영역은 접근과 참여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개인과 체제(system)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3) 세 번째 영역은 평생학습의 자원으로 개인보다는 주로 체제적 변수들을 나타내고, 마지막 영역에서는 '체제'로서 평생학습을 정의내리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전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유념하였다.

영역	지표	내용
Area A: 기술, 역량, 태도 (Skills, Competencies and Attitudes)	문해력	PISA 독해력에서 level 1 이하인 학생들의 비율(나라별) - OECD/PISA, 2000
	수리력	PISA 수리력에서 380점 미만의 학생들의 비율(나라별) - OECD/PISA, 2000
	학습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기술	PISA 과학 문해력 400점 미만인 학생들의 비율(나라별) - OECD/PISA, 2000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 기술	PISA "정교화 전략"에서 25% 미만의 수행률을 나타낸 학생들의 비율(나라별) - OECD/PISA, 2000
	능동적 시민성, 문화적·사회 적 기술	시민지식(civic knowledge), 시민참여, 시민참여에 대한 질적 지표 - IEA, 2001
Area B: 접근성 및 참여 (Access and Participation)	평생학습 접근성	Not Available
	평생학습 참여	25~64세의 교육/훈련 참여 현황 - Eurostat: Labour Force Survey, 2001
Area C : 평생학습 자원 (Resources for Lifelong Learning)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	GDP 대비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 Eurostat: Structural Indicator
	교육자와 학습	최근 4주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교사의 비율 - Eurostat: Labour Force Survey, 2002
	ICT	인터넷을 갖춘 가정의 비율
Area D : 전략과 시스템 개발 (Strategies and System Development)	평생학습 전략	평생학습 전략을 개발하는 회원국들의 현황 - European Commission: Joint Employment Report, 2001
	학습의 일관성	Not available
	안내 및 상담	Not available
	인정 및 자격	Not available
	질 보장	Not available

[표 4] 15개의 평생학습의 질적 지표(Fifteen Quality Indicators of Lifelong Learning)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2). European Report on Quality Indicators of Lifelong Learning.

□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성인교육조사 전담반 보고서

(Task force report on adult education survey)

- 유럽연합이 1996년을 “유럽 평생교육의 해”로 선언하면서 평생학습은 정책적 논의의 중심으로 진입하였다. 이후 평생학습은 유럽식 고용 전략이라는 획일화된 목적으로 여겨졌으나, 2000년 리스본 유럽의회(The Lisbon European Council)는 평생학습을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로서의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포함시키게 된다. 또한 2001년 유럽 통신위원회(Europe commission communication)는 “유럽식 평생학습 실현(Making a European area of lifelong learning a reality)”을 통해 교육·훈련을 위한 지침 원리로서의 평생학습을 내세우며, 당시까지 사용되던 유럽연합의 평생학습 정의를 확장시킴으로써 고용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영역까지 포함시켰다.

용어	정의
평생학습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인, 시민, 사회는 물론 고용과 관련된 차원에서 평생 동안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
학습활동	자신의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의도로 조직된 개인의 활동들
단일학습활동	방법과 과목의 통합체로 구성되는 학습 활동
과목 (혹은 분야)	개인이 학습하는 것
방법	학습 또는 교수(다시 말해 사고, 정보, 지식, 기술 능력을 얻거나 전하는 것)에 활용되기 위해 조직화된 구조
과정	단일 제공자가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특정 범위 안에서 계획된 단일학습활동의 집합
프로그램	사전에 결정된 목적이나 특정 교육과업 성취를 위해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조직화된 일련의 교육활동

[표 5] 유럽 성인교육조사의 용어 구분 및 분류 예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5). Task force report on adult education survey.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5년에 발표된 성인교육조사 전담반 보고서는 평생학습을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인, 시민, 사회는 물론 고용과 관련된 차원에서 평생 동안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으로 정의한다. 성인교육조사 전담반 (Task force on adult education survey)은 개인차원의 성인교육에 관한 일치된 보고 체제(harmonized reporting system)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인교육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개념 정의, 분류법 개발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2005).

2) 한국 평생교육의 공급지형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 일반적으로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된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여러 가지 별도의 법령에 의해 등록 관리되거나 다양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할뿐더러 조사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육의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이란 일상적인 행위로서 학력인정교육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관리의 범주 밖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국가의 경우에서 보거나 비형식 교육 혹은 무형식학습에 대한 조사는 표본조사에 의한 대체적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에 머물게 된다.

-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 관리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정서가 있으며, 민간 교육기관의 경우도 교육청 등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사업장과는 차별화된 교육기관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민간 성인교육기관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이런 기관들을 통하여 개인 발달, 고용기회 확대,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목적이 실현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평생교육법에 새로운 종류의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유형을 명시한 것도 이러한 비형식 성인교육 영역에 대한 국가의 관리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 기관, 프로그램, 강사 등의 전문성에 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평생교육통계조사는 이것을 위하여 출발하였다. 단, 기업연수원 교육이나 민간조직의 자체 회원교육은 적어도 평생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공공영역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부분은 아니며, 평생교육통계조사는 주로 공공영역에서 일어나는 개방된 일반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주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개방적 교육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품질과 가격이 공정한지에 관한 사회적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거시적인 차원에서 평생교육정책, 프로그램 공급 관리, 평생교육영역에서의 전문성 제고, 학습자 요구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네 가지 흐름을 통해 이에 관한 현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 평생교육법은 한국의 비형식 교육 및 무형식 학습에 대한 공공지원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 사회에서 교육은 공공재로서 국가나 기타 공공체제의 지원과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재로서 다른 경제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며 그 가치가 재화로서 거래되는 특징을 가진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평생교육법은 학교 밖 교육 서비스에 공적 성격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시스템이 재정적 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그 학습결과에 대해서는 필요시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공적 인증절차를 부여함으로써 동등한 교육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사설학원 등 교육영리기관과의 차별성을 유지한 채 공공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관리할만한 교육기관유형 9개 및 국가평생교육의 근간으로서의 평생학습관에 대한 직접 등록과 운영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 그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이중 학교의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만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는 성인계속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기관명	학력	보고·신고·인가 사항	비고
평생학습관	미인정	교육감 설치/지정	제21조
학교의 평생교육	미인정	-	제29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미인정	관할청 보고	제3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정/ 미인정	교육감 등록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	제3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	제3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정/ 미인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신고	제33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미인정	교육감 신고	제3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미인정	교육감 신고	제3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미인정	교육감 신고	제37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미인정	교육감 신고	제38조

[표 6]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유형

자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2008)

□ 사설학원: 영리기관에 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은 평생교육시설로 보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평생교육통계조사 자료집에 포함되어있다. 여기에서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예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표 7] 사설학원 형태 평생직업교육기관 세부 유형

□ 공공문화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부가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역시 개념적으로는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에 해당된다. 현재 사회복지관련법, 지방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관련된 법, 행안부의 주민자치센터 관련법 등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추후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대상 안에 포함될 것이 기대된다. 단,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현황은 간접조사를 통해 자료집에 포함되고 있다.
-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관련 기관군(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사회복지관의 업무의 한가지로 교육 및 문화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의 목적의 한가지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노인교실을 목적으로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 문화원: 지방문화진흥법 제8조에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정의하면서,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때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도서관: 도서관법 28조 (업무)는 교육센터로서 수행해야할 기능과 함께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를 규정하고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4조 (사업) 1항 2호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수행할 사업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를 규정하고 있다.
- 주민자치센터 및 기타 지자체 주관 교육센터: 시·군·구는 시·군·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기능)을 통해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의 시민교육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 여성 관련 시설: 여성발전기본법 제 33조에 따라 여성 관련 시설의 목적으로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의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여성발전센터의 사업을 여성의 사회교육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리·경제·사회·문화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둘째, 취미·교양교육 및 사회교육, 셋째, 전문문화 및 건전한 생활문화 지도·보급의 사업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청소년 시설: 청소년 기본법 제 2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단체는 학교교육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7조 제 2항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고 있다.

기관유형	내용	비고
문화원	지방문화원의 사업 중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포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도서관	교육센터로서 수행해야할 기능과 함께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를 규정	도서관법 28조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이 수행할 사업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를 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4조 1항 2호
주민 자치 센터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의 시민교육기능을 규정	시·군·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
복지관	사회복지관의 업무의 한 가지로 교육 및 문화 분야를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 1항
노인복지 시설	노인복지관의 목적의 한가지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노인교실의 목적으로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을 규정	노인복지법 36조
여성 관련 시설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해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 33조
청소년 시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7조 제2항

[표 8] 복지관 등 기타 형태 평생교육기관

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assembly.go.kr/law>)

□ 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 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등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해당된다. 이러한 직업훈련시설의 일부 교육 프로그램들은 향후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는 제28조에 의거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근로자의 직업개발훈련(제1항),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제2항)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서는 공단의 사업을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운영 지원(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제4항),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자격
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
게 하는 사업(제11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국내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실제

□ 조사 목적

- 평생교육통계는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평생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국가 통계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 조사 방법

-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 담당자들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통계시스템(<http://lifelong.kedi.re.kr>)에 접속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의 현황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 온라인에 의한 직접조사와 함께 이미 다른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자료(간접조사)를 통계 자료집에 제시한다.

조사유형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조사방법
직접 조사	학교부설	유초중등학교 부설	5월 1일 ※ 프로그램 및 학습자는 2009년 5월 2일~2010년 5월 1일	평생교육통계시스템 http://lifelong.kedi.re.kr 을 활용한 전수조사
		대학원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유통업체부설		
		산업체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간접 조사	평생학습관			
	초중등고등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		4월 1일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학원		5월 1일	
	방송통신고등학교		5월 1일	
	학점은행제		5월 1일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수집
	독학학위제			
	주민자치센터		1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데이터 수집

[표 9]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대상, 기준일, 방법

자료: 2010 평생교육통계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0)

□ 조사 대상

-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크게는 평생교육법령에 등록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평생교육,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6종)과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단, 사내대학은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자료를 활용하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 학교통계 자료를 활용한다. 학교의 평생교육은 기관 형태를 띠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통계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지만 본래의 기능수행과 더불어 조사가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예: 평생학습관)은 직접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한다.

직접조사대상		관할(청)
학교 부설	유·초·중등학교 부설	교육청
	대학(원) 부설	대학
원격형태		교육청
사업장 부설	유통업체 부설	교육청
	산업체 부설	교육청
시민사회단체 부설		교육청
언론기관 부설		교육청
지식·인력개발형태		교육청
평생학습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표 10] 평생교육통계시스템을 통한 평생교육통계 직접 조사대상

자료: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한국교육개발원, 2011: 5)

- 세부적으로는 유·초·중등학교 부설 기관,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이 조사대상이다.
-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당해 연도의 조사대상을 확정하는데, 이를 위해서 관할하는 기관 혹은 해당기관에 연락을 취하여(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등) 기관 및 담당자 정보를 확인한다. 교육청 관할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NEIS에 등록된 시설을 확보하고, 평생학습관의 경우는 시·도 및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를 통해,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경우는 각 고등교육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 그리하여 2007년에는 2,221개 기관, 2008년에는 2,620개 기관, 2009년도에는 2,807개 기관, 2010년에는 3,213개 기관에 대해, 그리고 2011년도에는 3,600여개의 기관들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들은 다른 기관의 DB를 받는 간접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령, 초·중등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 학원,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데이터는 한국교육개발원 DB를 이관하며,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관련 데이터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Text 자료로 수집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데이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 조사 항목

- 이들 기관에 대해서 수집하는 조사 항목은 크게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교강사 및 평생교육사를 포함하는 사무직원 현황이다.
- 기관개황 항목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

하는 부분으로, 기관 작성자, 기관현황, 기관 위치, 설립현황 등을 조사한다. 특히 설립현황과 관련해서는 설립주체(국가/지자체, 법인, 개인, 기타), 운영형태(직영, 위탁),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여부, 평생학습관 지정 여부, 입시관련 시설 여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여부, 건물 소유 형태(공공소유, 법인소유, 개인소유, 임차, 위탁, 기타) 등을 파악한다. 전년도 조사에 참여했던 기관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를 불러와 자동 입력시킬 수 있으나, 설립주체와 건물소유 형태 항목의 경우는 이전 자료 이관이 불가능하다.

● 기관개황

[조사기준일 : 2011년 5월 1일]

조사회차	2011년 1회차	기관명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00-00-0000]	수신자번호 [1500-1234]
	내선번호/가방번호	[00-00-0000-1000]	
	핸드폰번호	[00-00-0000]	
	이메일주소	[@]	
	팩스번호	[00-00-0000]	
기관장명			
기관 설립일	[]		
기관유형대분류	시간사회단체부설		기관유형소분류
승인구분	☒ 국립 ☒ 공립 ☒ 사립		본/분교구분 []
기관위치	우편번호	[]	
	주소	[]	
	대표전화번호	[00-00-0000]	수신자번호 [1500-1234]
	내선번호/가방번호	[00-00-0000-1000]	
	FAX번호	[00-00-0000]	
	홈페이지	[]	
상위기관명	[]		

[그림 2]기관개황 입력 화면

자료: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한국교육개발원, 2011: 20)

- 프로그램 및 학습자 항목에서는 프로그램 총수(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프로그램 분류(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에서 선택), 프로그램명, 주제구분(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득, 직업

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교육기간, 교육시수, 연간 교육 횟수, 총 모집정원, 총 수강인원, 수강료, 재정지원 여부(지원 없음, 국고지원, 교육청지원, 지방자치단체지원, 기업지원, 기타지원), 수요대상(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통합), 학점인정여부, 프로그램개발형태(자체개발, 위탁개발, 외국도입), 프로그램운영형태(자체운영, 위탁운영, 병행운영) 등의 항목을 조사한다. 특히 프로그램 분류는 대, 중, 소 단계별 선택지가 있다. 먼저, 대분류에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이 포함된다. 대분류로서 인문계열 안에서 한국어, 외국어, 인문의 중분류가 있으며, 중분류로서 한국어 안에는 소분류로서 언어, 논술·구술이 포함된다. 기관 개황과 마찬가지로 일부 이전자료에 대해 이관이 가능하며, 이전 자료를 불러온 후 추가 및 삭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제구분, 교육기간, 교육시수, 연간 교육 횟수, 총 모집정원, 수강료, 재정지원 등은 이전자료 이관이 불가능하다.

- 교강사 항목에서는 나이,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입사년월, 담당 강의수, 교강사 총수(1년 미만 근무강사 남/여, 1년 이상 근무강사 남/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교강사 관련 대부분의 항목이 이전 자료를 자동 입력할 수 있으나 최종학력은 자동입력이 불가능한 항목이다.
- 사무직원과 관련해서는 이름, 대표자 여부,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고용형태, 입사년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급별 입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팀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항목 등 추가 조사항목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지만, 예산 등의 한계로 이러한 수요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구분		항목
기관 개황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내선번호/기타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기관현황	기관장명, 기관설립일, 기관유형 대(소)분류, 설립구분, 본/분교구분, 법인명
	기관위치	우편번호, 주소, 대표전화번호, 내선번호/기타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상위기관명
	설립현황	국적, 설립주체, 운영형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지정여 부, 평생학습관지정여부, 입시관련시설여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지정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여부, 건물소유 형태, 학점은행제운영기관
프로그램 및 학습자		프로그램 총수(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명, 주제구분, 교육기간, 교육시수, 연간교육횟 수, 총수강정원, 총수강인원(남/여), 수강료(유료/무료, 최고/최저), 재정지원여부, 수요대상, 학점인정여부, 프 로그램개발형태, 프로그램운영형태
교강사		교강사총수(1년미만 근무강사 남/여, 1년이상 근무강사 남/여), 교강사명,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입사년월, 담당강의수
사무직원		사무직원명, 대표자여부,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평생 교육사자격증, 고용형태, 입사년월

[표 11] 평생교육통계 공통 조사항목

자료: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한국교육개발원, 2011: 11)

□ 조사 체계

-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크게 교육청 체계, 지자체 관리 체계(평생
학습관), 대학 체계로 분류되어 실시된다.



[그림 3] 교육청 체계, 지자체 체계, 대학 체계의 평생교육통계조사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자율성이 많음

○ 교육청 체계 평생교육통계조사 흐름



[그림 4] 교육청 체계 평생교육통계조사 흐름

- 교육청 체계 평생교육시설의 경우는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 통계팀에서 평생교육통계 조사공지를 하면,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거쳐 평생교육시설에 조사 공문을 보낸다. 평생교육시설이 시스템 상에서 데이터 제출을 완료하면,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이 차례로 자료에 대한 취합 및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시도교육청에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최종 자료를 제출한다.
- 각 상위기관에는 관할 하위기관의 조사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이 주어져며, 하위기관의 조사내용에 대해 평생교육통계시스템 상에서 검증을 완료한 후 다음 상위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상위기관이 검증처리를 한 후에는 하위기관이 입력했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으며, 상위기관이 검증취소 버튼을 클릭해야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의 위계상 시·도 및 지역교육청이 공문 발송과 데이터 수합 및 검증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른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중간관리자 역할까지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평생교육시설들에 직접 연락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모니터링 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 지자체(평생학습관) 체계 평생교육통계조사 흐름



[그림 5] 평생학습관 체계 평생교육통계조사 흐름

- 평생학습관 체계 기관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 공지 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시·도 대표)를 거쳐 각 평생학습관으로 조사 공지가 전달된다. 평생학습관 담당자가 데이터를 입력 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자료를 제출하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역할 하도록 시도별로 설치되었는데, 대개 시·도립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지정되어왔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기대되었던 역할 중에는 지역평생교육에 관한 기초 조사·연구, 각종 DB자료 수집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역할이 원활히 진행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 현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향후 기초 지자체의 평생학습 실천에 관한 실질적인 기획, 지원, 평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평생교육기관 중 통계조사에 포함된 기관은 평생학습관(직접조사) 및 주민자치센터(간접조사) 정도이지만 실제로 향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평생교육기관들 대부분이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들이며, 따라서 평생교육통계조사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책무성이 요청된다.

○ 대학(원) 부설 체계 평생교육통계조사



[그림 6] 대학(원) 부설 체계 평생교육통계조사 흐름

- 대학 부설 체계의 경우는 대학본부를 통해 평생교육원으로 공지가 전달된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통계 공통 조사항목 및 대학부설 추가조사 항목들(기관정보, 위탁교육비현황, 재정현황, 시설현황, 행정담당인력현황, 강사현황 등)을 입력하여 대학본부로 자료를 제출한다.
- 대학본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자료 제출시 평생교육원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도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사 양성현황(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현황)을 조사한 데이터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평생교육원 담당자와 대학본부 담당자가 동일하다면, 두 개의 ID로 시스템 상에서 위의 검증과 제출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 평생교육원을 조사하는데 있어 기대하는 조사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위의 교육청 체계와 마찬가지로이다. 교육청에서 평생교육통계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본부는 평생교육통계조사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조사 기간

- 조사기간은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시·도 대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대학본부에서 관할 평생교육기관의 조사와 검

증,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다. 평생학습관과 대학(원) 부설 체계의 경우 입력 기관의 제출 완료는 대략 5월 24일경,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대학본부와 같은 중간관리기관의 검증기간은 5월 24일부터 5월 31일 사이 정도로 일정을 잡고 진행된다.

- 많은 조사 담당자들이 조사기간 종료일에 임박하여 데이터 입력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청 체계 평생교육시설들을 나누어서 데이터 입력 기간을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검증 기간, 시도교육청으로의 제출 기한 등도 분산시켜서 임시적으로나마 시스템 과부하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조사 기준일

- 평생교육통계조사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가령, 조사기준일에 휴원, 폐원, 연락두절인 평생교육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로그램의 경우 조사기준일에 운영이 종료된 프로그램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 조사기준일 이후(5월 2일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으나, 조사 연도의 조사기준일(5월 1일)에 종료가 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령, 2010년 조사 시 교강사의 경우 1년 미만 근무강사는 해당 기관에 최초입사일이 2009년 5월 2일 이후인 교·강사이다.
- 단,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양성현황의 조사기준일은 해당 연도(예: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이다.

□ 입력 데이터의 검증

- 통계조사가 완료되면 6월 초부터 입력 데이터에 대해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올바른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하였는지를 시스템 상에서 바로 확인하는 형식검증, 검증기준에 의해서 자료의 논리적 오류를 추출하는 내용검증, 다른 기관의 통계 혹은 작년 자료와 비교하여 오류를 추출하는 비교검증 등 다양한 검증방법으로 입력 데이터의 오류들을 추출한다.
- 형식검증은 시스템에서 입력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데이터 형식 오류, 필수항목 누락 등을 확인하게 된다. 가령, 수강료의 단위 등 단위 자체가 틀린 것들을 걸러준다. 또한 시스템 상에서 미입력 항목수를 보여주며 미입력된 항목이 있으면 자료입력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입력한 후 검증 및 제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 내용검증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한 검증기준에 의하여 자료의 논리적 오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오류가 확인되면 각 기관과 전화 연락을 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한다.
- 비교 검증은 외부의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통계에서 조사된 비슷한 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는 작업이다. 평생교육통계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자료,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능력훈련기관 자료와의 비교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작년 자료와 비교하여 내용이 달라지거나 변동의 폭이 큰 자료에 대해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한다.

□ 조사 결과의 활용 방식

- 2006년 평생교육통계 시범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회에 걸친 정기조사를 시행했다.

- 이상의 작업을 통해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서는 매년 9월경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평생교육통계자료집”의 형태로 발간한다.
- 평생교육통계가 기획될 때 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통해 한국평생교육의 전반적 흐름과 패턴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 및 정책 통계의 필요 이외에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자나 평생교육실천가, 학습자들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 기관 담당자 연수

- 4월경 평생교육통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그런데 현재 조사되고 있는 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청 관할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에는 예산의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 (2010년 평생교육통계 조사시 전체 3,213개 기관 중 교육청 체계 시설은 2,441개, 대학 체계 평생교육원은 388개, 평생학습관은 384개였다.) 그래서 교육청 관할 평생교육시설 담당자는 제외하고 극히 일부인 시·도 및 지역교육청,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대학본부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내용은 조사계획 소개, 지침 및 매뉴얼 교육, 평생교육통계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에 대한 것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팀의 인력 및 예산

-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는 통계기획분석팀, 유·초·중등통계팀, 고등교육통계팀, 취업통계팀, 국제교육통계팀, 평생교육통계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

육통계에 대한 중장기 발전 안은 통계본부의 기획팀을 중심으로 구상되고 있다. 평생교육통계 서버는 별도의 전산부서에 담당자가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통계팀의 정규 인력은 팀장 1명을 포함해서 3명이며, 조사 기간에 한시적으로 콜센터 인력 4명 정도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콜센터는 각 평생교육시설 담당자 및 관리 기관 담당자들의 문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전후로 운영한다.
- 현재 평생교육통계 예산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통계와 달리 평생교육통계는 현재 목적과 형태, 조사항목과 방법, 대상 등이 진화단계에 있으며, 2006년 시범 프로그램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평생교육통계의 기초틀을 만들 때 조사방법과 예산의 한계 때문에 주로 교육청이 직접 관할하는 기관만을 중심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시스템의 진화와 확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 또한 예산의 한계로 2007년 이후로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지 못했다. 가령, 엑셀파일을 시스템 상에 바로 업로드 시킬 수 있는 모듈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항목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그리고 데이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작업은 기관 담당자들의 평생교육통계 관련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인데, 현재 예산 안에서는 전 조사 대상 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종합적으로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향후 5년간 지속적인 표준화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정착화 및 안정화 단계로 이

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재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 역시(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한다) 표준화 및 안정화에 도달하기에 10년 이상 걸렸으며, 현재도 재설계가 진행 중이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교육개발원의 종합적인 안목과 비전, 의지가 기대된다.

□ 조사의 법적 근거

-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수행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승인한 통계이다.
- 평생교육법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는 평생교육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에게는 평생교육기초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표 12] 평생교육통계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자료: 평생교육법(2011.7.25., 법률 제10915호) 제18조

-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에 대하여 평생교육통계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언급하는 정도로 간략히 언급했으나, 통계법에서는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와 관련해서 더 많은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 통계법 제25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 작성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5조(자료제출명령)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3]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명령에 관한 통계법

자료: 통계청(2010.3.31., 법률 제10196호)

- 또한 통계법 제23조와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2조는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자료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표 14] 관련 통계작성기관의 의무에 관한 통계법

자료: 통계청(2010.3.31., 법률 제10196호)

제26조(실지조사) ①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표 15] 관련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응답자의 의무에 관한 통계법

자료: 통계청(2010.3.31., 법률 제10196호)

- 통계자료 작성 요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 이외에도 자료에 대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통계법 제31조).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6]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한 통계법

자료: 통계청(2010.3.31., 법률 제10196호)

- 그 밖에도 통계법에 근거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책임을 지우며,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책임을 통계청장에게 지우고 있다.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표 17]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통계법
 자료: 통계청(2010.3.31., 법률 제10196호)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①통계청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18] 통계종사자를 위한 통계교육에 관한 통계법
 자료: 통계청(2010.3.31., 법률 제10196호)

2절. 개선과제

1) 개선과제명 1: 프로그램 영역 데이터 오류의 문제

(1) 현황

- 2007년부터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실시되면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조사방식은 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웹기반 통계조사로서 기관별로 구체적인 조사항목에 대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취한다.

(2) 문제점

- 지난 4년간(2007~2010년)의 자료가 축적되었지만 부문별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통계자료의 검증에 대한 체계적인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 현황 자료에 비해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주로 분류 체계의 불확실성 및 다중성에서 오는 개념적 오류 때문에 나타나는 입력 오류의 문제로 판단된다. 또한 이 문제는 프로그램적인 차원에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기술적인 해결보다는 개념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실제 집계된 자료가 원래 의도된 분류체계와 맞지 않는 다수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 먼저 프로그램 입력 오류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입력 데이터를 보면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간 개념적 불명확성이 가장 빈번한 영역으로서 두 영역 간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오류 데이터가 많아 제외하겠다.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득, 시민참여 등의 경우 비교적 영역 간의 개념적 경계가 분명하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입력된 데이터를 보면 세 영역

간에도 그 구분이 무의미할 만큼 동질적 자료가 제시된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2008년 데이터는 상당한 분량의 데이터 오류가 나타나고 있고(수정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후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류는 반복해서 발견되고 있다.

- 예컨대 학력보완 프로그램의 경우 2008년 자료를 보면, 조사기관에서 내려준 조사지침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및 학력보완 프로그램으로서 하위분류체계에는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이 학력보완 프로그램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입력된 데이터를 보면 이와는 상관없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 학력보완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다.

20081	레고5세	학력보완	3개월	4	48	32	16	70,000
20081	레고6세	학력보완	3개월	4	48	28	20	70,000
20081	레고7세	학력보완	3개월	4	48	16	8	70,000
20081	레고닥터(1-2학년)	학력보완	3개월	4	48	20	12	70,000
20081	베이비레고닥터(24-32)	학력보완	3개월	4	80	20	52	35,000
20081	레고베이비집(16-24개월)	학력보완	3개월	4	80	16	48	35,000
20081	동화구연(6-7세)	학력보완	3개월	4	48	12	12	60,000
20081	동화구연(초등)	학력보완	3개월	4	48	12	12	60,000
20081	유아난타	학력보완	3개월	4	48	32	16	60,000
20081	초등드럼	학력보완	3개월	4	48	24	8	70,000
20081	종이접기(유아)	학력보완	3개월	4	48	8	24	60,000
20081	종이접기(초등)	학력보완	3개월	4	48	4	8	60,000
20081	엄마랑놀이체육	학력보완	3개월	4	80	20	52	30,000
20081	초등수학5학년	학력보완	6개월	2	50	30	15	96,000
20081	초등6학년수학	학력보완	6개월	2	50	30	20	96,000
20081	유아가베	학력보완	3개월	4	40	26	12	70,000
20081	초등가베	학력보완	3개월	4	40	27	12	70,000
20081	롤루탈라플레이스쿨(6-12개월)화	학력보완	3개월	4	48	24	24	90,000
20081	레고닥터	학력보완	1개월	12	240	72	144	20,000
20081	방과후교실-글쓰기A	학력보완	1개월	12	270	120	144	30,000
20081	롤루탈라플레이스쿨(20~29화)A	학력보완	3개월	4	48	24	24	90,000
20081	롤루탈라플레이스쿨(30~40화)A	학력보완	3개월	4	48	28	20	90,000
20081	롤루탈라플레이스쿨(30~40화)B	학력보완	3개월	4	48	8	16	90,000
20081	감성창출놀이	학력보완	3개월	4	60	20	28	45,000
20081	지도로펼쳐라	학력보완	3개월	4	60	28	12	45,000
20081	뮤직가든	학력보완	3개월	4	60	12	40	79,000
20081	롤루탈라	학력보완	3개월	4	60	32	16	100,000
20081	영어동화구연	학력보완	3개월	4	60	20	24	45,000
20081	자석블럭교실	학력보완	3개월	4	60	32	12	59,000
20081	리넵아이	학력보완	3개월	4	60	20	32	90,000
20081	유아재즈댄스	학력보완	3개월	4	60	12	20	45,000
20081	영재율판	학력보완	3개월	4	60	28	16	55,000
20081	동요교실	학력보완	3개월	4	60	20	20	45,000
20081	표현미술	학력보완	3개월	4	60	20	40	45,000

[그림 7] 2008년 학력보완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그램 자료

-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의 경우도 조사지침을 보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문자해득 프로그램, 기초생활 기술프로그램, 문해 학습계좌 프로그램”이 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제시된 학력보완 자료와 거의 구분이 불명확할 정도로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과 무관한 유형과 대상의 프로그램(영유아, 유아 프로그램부터 문화예술활동, 외국어 교육 등)이 분류되어 있었다.
- 이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 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각종 외국어 강좌를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으로 입력함으로써 기초적인 분류체계에 대한 입력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조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2008년 자료뿐 아니라 2009년, 2010년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20081	톨루랄라해피스쿨(31-40개월)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48	28	20	90,000
20081	기초한자교실	성인기초/문자해득	1개월 미만	2	40	41	27	-
20081	동화놀이세상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8	150	50	100	80,000
20081	영어유치원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8	250	100	150	150,000
20081	동화구연A(6,7)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60	20	40	55,000
20081	동화구연B(5,6)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60	24	36	55,000
20081	동화구연중급(6,7)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60	28	32	59,000
20081	글짓기논술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8	200	100	100	80,000
20081	대교차이홍중국어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11	9	60,000
20081	리틀몬테소리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0	20	80,000
20081	베이비몬테소리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0	20	80,000
20081	프뢰벨가베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0	20	80,000
20081	비츠영재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10	10	80,000
20081	영재아이집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10	10	90,000
20081	베이비레고닥터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10	10	80,000
20081	빅차일드영재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10	10	80,000
20081	야호!하바야놀자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20	10	80,000
20081	신나는톨루랄라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100	80	20	90,000
20081	하바할동놀이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10	10	80,000
20081	엄마랑열린미술놀이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0	20	80,000
20081	플레이팝콘아이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10	20	90,000
20081	뽕이의점프점프음악&신체활동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10	20	80,000
20081	지그재그신체활동놀이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50	30	20	80,000
20081	트니트니신체놀이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10	10	90,000
20081	트윙클토틀러영어발레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100	50	50	90,000
20081	뮤직가튼음악놀이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100	50	50	90,000
20081	아마데우스클래스영재음악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100	50	50	90,000
20081	옥스포드리딩트리유아영어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10	10	90,000
20081	뮤지컬잉글리쉬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10	10	60,000
20081	스피지게임&리더쉽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50	20	30	80,000
20081	일요일표력향상동화구연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10	10	60,000
20081	신나는꼬마요리사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10	10	60,000
20081	레고구성놀이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50	25	25	70,000

[그림 8] 2008년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그램 자료

20091	순창여성한글학교	성인기초/문자해득	10개월	1	50	0	46	-
20091	이주여성한글교육(한글)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1	10	0	10	-
20091	문해교육초등중급과정	성인기초/문자해득	12개월	1	20	0	20	-
20091	기초한글교실	성인기초/문자해득	6개월	2	120	8	12	-
20091	동화로배우는한국어	성인기초/문자해득	2개월	1	40	0	10	-
20091	비문해자어르신(ABC영어)	성인기초/문자해득	12개월	1	20	10	10	-
20091	비문해자어르신(한글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	12개월	1	20	10	10	-
20091	문해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	12개월	1	120	15	105	-
20091	한국어를배우자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53	21	32	-
20101	성인문해한글기초반	성인기초/문자해득	10개월	1	10	0	10	-
20101	성인문해한글중급반	성인기초/문자해득	10개월	1	10	0	8	-
20101	성인문해영어기초반	성인기초/문자해득	12개월	1	20	3	17	-
20101	성인문해한자반	성인기초/문자해득	10개월	1	10	3	11	-
20101	8회아기곰의재테크고수만들기기초반	성인기초/문자해득	2개월	4	30	0	20	180,000
20101	김세원의생활영어학중급10회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0	7	120,000
20101	수요해외여행영어(중급)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0	5	90,000
20101	수요해외여행영어(초급)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0	5	90,000
20101	금요해외여행영어(고급)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0	9	90,000
20101	금요해외여행영어(중급)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0	7	90,000
20101	행운을부르는인상학인생을알면인생이줄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0	14	100,000
20101	제이슨의왕초보잉글리쉬10회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0	7	100,000
20101	8회아기곰의재테크고수만들기심화반	성인기초/문자해득	2개월	4	30	0	13	180,000
20101	츄스키영어유치원(5~7세)12회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0	16	120,000
20101	엄!트윈클영어발레(3~4세)12회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0	13	80,000
20101	유!트윈클영어발레(5~7세)12회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0	11	100,000
20101	임현영의생활글수필창작12회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40	2	35	120,000
20101	이복재의일본어(쉬운소설반)12회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20	0	15	80,000
20101	일본어프리토크반(강사나시무라노리코)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0	10	90,000
20101	임현영과함께하는문학산책12회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1	28	120,000
20101	영시(英詩)의향기3개월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2	8	100,000
20101	이복재의일본어(소설반)12회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4	30	0	7	80,000
20101	저자특강투자의맥을잡는부동산강의노트	성인기초/문자해득	2개월	4	30	6	12	200,000
20101	Native와함께하는생활영어2단계(3개월)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8	60	0	42	170,000
20101	Native와함께하는생활영어1단계(3개월)	성인기초/문자해득	3개월	8	60	0	30	170,000

[그림 9] 2009-2010년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그램 자료

20081	차이홍중국어	시민참여	3개월	48	10	0	5	60,000
20081	팡팡ABC&MUSIC	시민참여	3개월	48	30	4	26	80,000
20081	엄마와함께하는동화교실(방학특강)	시민참여	1개월 미만	1	40	10	30	-
20081	독서토론포럼	시민참여	4개월	1	60	30	23	-
20081	엄마랑함께하는동화교실	시민참여	4개월	1	40	20	20	-
20081	재밌고신나는동화교실	시민참여	3개월	2	50	25	25	-
20081	멀티미디어창작교실	시민참여	3개월	2	50	25	25	-
20081	교과서와친해지는신활용교육	시민참여	3개월	1	30	15	15	-
20081	생각을그리는동화교실	시민참여	3개월	1	20	10	10	-
20081	달크로즈뮤직	시민참여	3개월	4	120	0	111	90,000
20081	이야기가있는점프아이동작놀이세상(35~45기)	시민참여	3개월	4	60	5	10	100,000
20081	아마데우스	시민참여	3개월	4	400	0	321	90,000
20081	뮤지가든영어	시민참여	3개월	4	200	0	183	90,000
20081	고마동네퍼포먼스미술여행(3~4세)	시민참여	3개월	4	200	0	173	70,000
20081	레고닥터	시민참여	3개월	4	200	0	200	80,000
20081	신나는롤러달라	시민참여	3개월	4	800	0	686	80,000
20081	영재아이집	시민참여	3개월	4	160	147	0	80,000
20081	베이비맞사지	시민참여	3개월	4	160	0	129	30,000
20081	트니트니키즈캠프	시민참여	3개월	4	600	0	460	90,000
20081	맘&베이비요가	시민참여	3개월	4	60	0	54	60,000
20081	유아발레	시민참여	3개월	4	240	0	212	80,000
20081	바둑교실	시민참여	3개월	4	200	0	155	50,000
20081	웅변스피치리더십	시민참여	3개월	4	160	0	139	70,000
20081	뮤지컬잉글리쉬	시민참여	3개월	4	120	0	118	70,000
20081	노래부르는영어동화	시민참여	3개월	4	60	0	45	70,000
20081	유아미술	시민참여	3개월	4	120	0	109	70,000
20081	이솝글쓰기	시민참여	3개월	4	80	0	61	50,000
20081	초등NIE교실	시민참여	3개월	4	60	0	43	60,000
20081	스트레칭	시민참여	3개월	4	80	0	78	50,000
20081	방송댄스	시민참여	3개월	4	60	0	53	50,000
20081	엄마와함께하는유아체조	시민참여	연간	1	27	17	10	60,000
20081	엄마와함께하는유아체조	시민참여	연간	1	46	30	16	60,000
20081	뮤지컬잉글리쉬	시민참여	4개월	3	60	9	12	70,000

[그림 10]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그램 자료

-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경우도 제시된 개념은 “현대 민주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정신 증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역시 위에서 제시한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과 동일한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데이터 오류의 문제는 프로그램 6대 영역 전반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인문교양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간에는 분류체계의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상호 중첩되는 데이터들이 많았다. 현장에서 최초 입력하는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분류체계가 제시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지점이 가장 애매모호한 대표적인 영역이다.

(3) 개선방안 개요

- 첫째, 개념적으로 불분명한 분류체계에 대한(특히, 프로그램)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실무적인 차원에서 입력 담당자들의 이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기적인 연수가 기획·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조사기관이 데이터 오류를 구조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장치 마련이 요청된다.
- 넷째, 지난 4년간 누적된 데이터들의 오류부분을 분류체계에 근거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개선과제명 2: 불필요한 데이터 입력의 간소화 문제

(1) 현황

- 현재 통계데이터 입력방식은 평생교육기관별 담당자 개인 아이디로 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 기관개황, (2) 프로그램 및 학습자, (3) 교강사, (4) 사무직원에 관한 세부항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때 프로그램 및 교강사, 사무직원은 개별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데이터의 수만큼 새로운 창을 띄워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예컨대, 프로그램이 200개인 기관은 프로그램 입력을 위해 총 200번의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전자료의 저장기능을 통해 이전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이 있지만 대부분 학기별 신규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고, 이전과 동일한 프로그램일지라도 강의시간이나 대상 등의 변경이 빈번해서 전체적으로 신규로 입력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 교강사 및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개인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인하여 데이터 공개에 한계가 있어보인다. 특히 교강사 자료의 경우 자료의 신뢰성 및 포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다.

(2) 문제점

□ 문제 1: 시스템 문제(데이터 포맷 자동전환 지원의 부재)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메이저 공급기관인 사업장 부설 기관 혹은 대학(원) 부설 기관의 경우 한 학기당 수백 개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사업장 부설 기관의 경우 한 학기에 총 400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기관에 출강하는 강사가 100명이라면 총 500번의 창을 새롭게 띄워 입력을 갱신해

야 한다. 만약 연간 4학기제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여기에 대략 2~4배수의 작업이 필요하다(연간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므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기관일수록 관련 담당자들은 정해진 조사기간 기간 내에 수백, 수천 단위를 넘어서는 데이터를 성실하게 입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조사기간 동안에 일상 업무와 겹쳐 업무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입력단계에서 발생한다.

나. 프로그램 및 학습자

<입력창>

조사회차	기관명		이전자료저장	
프로그램유무	☐ 있음 ☐ 없음			
프로그램총수	1개월미만	1개월이상	계	

1개월 미만 프로그램 총수 :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인 프로그램 중 교육시수가 8시간 미만인 프로그램의 수
 교육기간이 1개월 이상인 프로그램과 1개월 미만 프로그램 중 교육시수가 8시간 이상인 프로그램만 입력합니다.

프로그램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프로그램선택
프로그램명				
주제구분	1. 학력보완 2. 성인기초/문자해독 3. 직업능력향상 4. 인문교양 5. 문화예술 6. 시민참여			
교육기간	1개월미만, 1개월~24개월, 25개월이상, 연간	교육시수	시간	교육시수 계산
연간교육횟수	회	총모집정원	명	
총수강인원	남 명	여 명		
수강료	☐ 유료 ☐ 무료 최고 원 최저 원 최고금액과 동일			
재정지원	1. 지원없음 2. 국고지원 3. 교육청지원 4. 지방자치단체지원 5. 기업지원 6. 기타지원	수요대상	1. 어린이 2. 청소년 3. 성 인 4. 노 인 5. 통 합	
학점인정여부	☐ Yes ☐ No			
프로그램개발형태	1. 자체개발 2. 위탁개발 3. 외국도입	프로그램운영형태	1. 자체운영 2. 위탁운영 3. 병행운영	

[그림 11]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그램 및 학습자 입력창

자료: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한국교육개발원, 2011: 36)

□ 문제 2: 교강사 개별 데이터 입력 문제

- 현재 교강사 자료 입력 방식은 학교통계에서 교원 입력 방식과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학교 교원과는 달리 비형식교육의 교강사들은 이퇴직이 심하며, 따라서 자료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교강사 인적 자료를 지금처럼 신상정보를 포함한 개별형태로 입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강사 자료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그 활용도 역시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체 현황표 형태로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만일, 교강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 교강사

<입력창>

조사회차				기관명				
구분		합계	만20세이하	만21-30세	만31-40세	만41-50세	만51-60세	만61세이상
1년미만 근무강사	계							
	남							
	여							
1년이상 근무강사	계							
	남							
	여							
총합계	계							
	남							
	여							
교강사유무		☒ 있음 ☒ 없음						

조사기준일(2011년 5월 1일) 당시, 1년이상 현 기관에 근무한 강사만 입력합니다.

교강사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최종학력	1. 고졸이하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이상	입사년월	
담당강의수	개		

[그림 12] 평생교육통계조사 교강사 입력창

자료: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한국교육개발원, 2011: 52)

- 평생교육통계입력 항목에 보면 교강사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등에 대한 개별 신상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기관에 출강하는 강사들 대부분은 주 1~2회 교육시간 동안 잠시 출강하는 강사로서 기관 전임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데이터 오류의 문제라기보다는 교강사 데이터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런 경우 동일 강사가 여러 교육기관에 중복 출강하는 경우도 잦고 기관 차원에서는 프로그램 개설 및 폐강상황에 따라 수시로 강사의 이동 및 교체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강사 항목에서 요구되는 세부자료를 개인별로 성실하게 입력하는 것이 쉽지 않다.

□ 문제 3: 프로그램 입력의 간소화 문제(분류체계 적용의 문제)

- 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문제는 여러 곳에서 지적되었다. 프로그램 분류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프로그램별 학적분류체계에 따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확인해 찾아들어가야 하며, 다시 주제에 따른 분류체계를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학적분류체계에 따른 구분이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매칭되지 않는 간극이 존재하고, 단위 프로그램별로 적합한 판단을 내리기에 모호한 지점들이 상당수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당면하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 예컨대, 다수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사업장 부설 기관의 경우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있는데(전체 프로그램 중 평균 50% 가까이 차지하는 영역이다), 분류체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입력자에 따라 분류체계가 달라지는 사례이다.
- 가령, ‘엄마와 함께하는 영어발레의 경우’, (1) 교육계열>교육>아동발달 또는 (2)예체능>무용체육>전통무용 또는 (3) 인문>외국어>영어로도 분류될 수 있어 정확한 분류가 어렵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언어·문예	한국어	한국어	사회·문화	정치·문화	정치학	예체능	디자인	디자인예론·교양
		논술·글쓰기			사회학			글씨디자인
		독서			행정학			의상디자인
		한글자도(문법)			사회복지			실내·인테리어
		수필(소설·시)			결혼·가족·가정			전통공예
	외국어	영어		신문·방송·출판	응용예술		생활공예	
		일본어		소방·경찰·경호			꽃예술	
		중국어		교육학			사진·단류	
		한문		여중지도			영상예술	
		기타외국어		여중발달			무용이론·교양	
	문학	문학이론·문학창작		과학	과학이론·교양		무용·체육	전통무용
		한국문학			생물·화학·물리·천문			생활무용
		동·서양문학			수학			체육이론·교양
		인문교양			통계			건강·예방
		역사			환경·지리			레저·스포츠
	인문	철학	농림·임업	예체능	미술·조형		레크리에이션	
		종교	건설·건축·도목				미술이론·교양	
		문화	교정·문증				그림·회화	
		통수·사주	기계·금속				일러스트레이션	
		성리·상당	전기·전자				조형	
경영·경제		윤리	재료·정밀		공연예술	서예·서화		
		여성	컴퓨터기초			연극		
		컴퓨터이론	응용체제			미술		
		경영정보	OA			음악이론·교양		
		마케팅	인터넷			대중음악		
	사회·과학	전략·국제경영	컴퓨터·통신	멀티미디어	음악	중고음악		
		조직관리		통신		국악·민요		
		생산관리		프로그래밍		성악		
		금융채무		데이터베이스		전통악기		
		회계·세무		영양		서양악기		
		법학	부동산	의료·보건	보건	생활교양	다도	
			관광·호텔		한방		게임	
			취업·창업		간호		체과체험	
			경제		응급처치요		생활요리	
			법학				식생활	

[그림 13] 평생교육통계조사 일반프로그램 분류(한국교육개발원, 2011: 40)

□ 문제 4: 홈페이지 접속 및 아이디 관리에 대한 연수의 문제

-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들은 예컨대, 점포가 다수인 사업장 부설 기관의 경우(100개 점포가 넘는 기관도 있다) 담당자 간 지점이동이 잦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평생교육통계조사가 1년에 한번 동시에 실시되는데, (물론 평생교육담당자 평균 근무 연수를 따져봐야겠지만) 기관의 담당자들이 십년 이상 한 곳에 계속 근무하는 일은 드문 경우이다. 그런데 평생교육통계조사는 담당자가 평생교육통계시스템에 접속하여 한국개발교육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기관별 아이디와 담당자의 개인메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다. 물론, 평생교육통계 입력 담당자가 바뀐 경우에 비밀번호는 새로운 담당자의 개인메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새로운 담당자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요청하여 변경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가 인터뷰한 여러 담당자들이 그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전 자료 입력자가 퇴사했을 경우 새로운 담당자는 여전히 모든 자료를 새로 입력하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문제 5: 데이터 조사단위의 문제(교육시수)

- 프로그램별 시수 계산시 단위가 ‘시 단위’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교육시간이 1시간미만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많이 있다. 예컨대, 영유아 강좌의 경우 많은 경우 회당 40분 강의, 유아 및 어린이 강좌의 경우는 대개 50분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 “교육시수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

1) 교육시수 계산 버튼을 누른다.

교육시수 계산기

해당 프로그램의 1번 모집할때의 교육시수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십시오.
주수 :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안의 주수를 입력합니다.
주당수업횟수 : 한 주당 수업횟수를 입력합니다.
수업시간 : 한번 수업할 때의 수업시간을 입력합니다.

주 수	
주당수업횟수	
수업시간	
총수업시수	

→

교육시수 계산기

해당 프로그램의 1번 모집할때의 교육시수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십시오.
주수 :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안의 주수를 입력합니다.
주당수업횟수 : 한 주당 수업횟수를 입력합니다.
수업시간 : 한번 수업할 때의 수업시간을 입력합니다.

주 수	5
주당수업횟수	3
수업시간	3
총수업시수	45

2) 팝업 되는 교육시수계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한다.

3) 주수: 프로그램이 진행된 주의 횟수를 입력한다.
(예) 3월 1일 개강-3월 31일 종강인 프로그램이라면 총 5주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이므로 5를 입력

4) 주당 수업횟수: 1주를 기준으로 수업이 진행된 횟수를 입력한다.
(예) 1주 동안 월, 수, 금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3을 입력

5) 수업시간: 한번 수업할 때의 수업시간을 입력한다.
(예) 하루에 3시간 진행되는 수업이라면 3을 입력

6) 내용을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총 수업시수가 계산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교육시수가 입력된다.

7) 유의사항 : 주당 수업횟수가 항상 같은 수는 없으므로 계산된 교육시수를 참고로 가감하여야 함.

[그림 14] 평생교육통계조사 교육시수계산 방법

자료: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한국교육개발원, 2011: 45)

(3) 개선방안 개요

- 첫째,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엑셀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었다가 조사기간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엑셀 포맷을 미리 공급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교강사 개인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보다는 기관별 교강사 조사항목에 대한 전체 현황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셋째, 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따른 입력문제는 학적 분류체계 데이터의 활용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항목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넷째, 홈페이지 접속 및 관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다섯째, 교육시수 단위문제는 회당 수업시간을 '분 단위'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개선과제명 3: 활용가치에 따른 조사항목 조정의 필요성

(1) 현황

- 현재 평생교육통계조사항목은 1. 기관개황, 2. 프로그램 및 학습자, 3. 교강사, 4. 사무직원의 네 가지 범주에 대한 세부항목들을 선정해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 문제점

- 2006년 평생교육통계조사 실시 이후 구체적인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큰 변동 없이 전체구조를 유지해왔다.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고, 데이터 오류 및 불필요한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드러난 현재 문제(프로그램 분류체계, 교강사 개별데이터 입력 등)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의 항목조정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3장 3절 세부 개선방안 및 [표 24] (pp.89-111) 참조

(3) 개선방안 개요

- 기관개황 조사항목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하며, 일부 항목에 대한 삭제 및 추가가 필요하다.
- 프로그램 및 학습자 조사항목에 있어서는 학력보완 영역의 세부 구별, 교육시수의 조정, 수강료 선택지의 세분화, 수요 대상의 재분류 등이 필요하다.
- 교강사 및 사무직원 현황 조사 항목에 있어서는 개인 신상을 기재하는 개별 데이터의 입력방식은 여러모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기관별 조사항목에 대한 전체현황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 개선과제명 4: 조사내용의 장표 및 자료집에 대한 개선

(1) 현황

- 현재 평생교육통계와 관련한 대략적인 일정은 매해 5월 조사 실시 후, 10월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11월 평생교육통계자료집을 발간하는 수순을 따른다. 평생교육통계자료집에는 평생교육법 등록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자료와 함께 유관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간접조사자료(초·중등·고등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 학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하여 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목차를 보면 I. 총괄(Summary) 부문(14pp분량), II.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부문(285pp 분량), III.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부문(143pp 분량), IV. 평생교육제도 부문(27pp 분량), V. 평생교육 주요업무 통계(13pp 분량) 부문 등으로 그 분량이 총 500pp 가까이 된다.

(2) 문제점

- 현재 통계 자료집이 초기에 디자인된 의도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개념적 범주를 총체적으로 담아내려는 것이었다. 예컨대, 성인계속교육에 해당되는 형식(초중등 및 고등), 비형식 기관들 및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려고 하였다. 그에 따라 각종 방계학교 데이터 및 고등교육 기관(예컨대, 특수대학원, 기술대학 등) 등이 준형식 기관이라는 범주로 담기게 되었다. 여기에서 준형식이라는 개념은 정식 학교교육기관과 구별되지만 주로 성인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교육기관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부여된 개념이며, 실제적 활용도가 높지 않은

만큼 다른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 통계자료집의 목적이 현재 직·간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비형식 성인교육의 자료를 장표형태로 보여주는 것에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준형식 기관의 자료는 통계집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분량으로 볼 때에도 통계자료집의 분량이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중간부문 유형별 기관에 대한 자료가 너무 세세하고 방대한데(428p 분량), 교육통계와 중복되는 기관(준형식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자료의 제시방식이 기관 중심이며 전체 프로그램의 동향을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모든 데이터가 기관 유형별로 개별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 평생교육통계자료집은 조사된 원자료의 패턴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한 각종 지표 및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일 때 활용도가 높아진다. 예컨대 학교통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교육통계연보뿐만 아니라 자료를 가공한 형태의 교육 관련 지표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역시 기초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현황과 경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의 제시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지표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이 동반되어야 한다.

(3) 개선방안 개요

- 조사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라 평생교육공급체계를 대표하는 핵심지표 중심으로 내용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생교육통계자료는 우리나라 평생교육공급체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개발, 발전시키는 매개적 역할에 중

심을 두어야 하며, 쟁점이 될 만한 개념들이 표준화되고 정착됨으로써 평생교육의 각종 지표와 지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 평생교육통계 원자료를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공개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조합과 매트릭스는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조사에 필요한 핵심개념과 이론적 개념체계가 빈약한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 다양한 자료와 지표를 생산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개선과제명 5: 조사기관 범위의 재설정

(1) 현황

☐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6종 평생교육기관 대상의 전수조사

- 현재 평생교육통계조사는 각 시도지역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DB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 이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다수 존재(p.23, [표 8] 참조)

- 하지만, 평생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 평생교육기관들이 외에도 각종 복지시설,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군부대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시설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 이외의 교육시설을 포함한 지역자치단체의 자체조사 실시

- 현재 각 지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사하고 있는 지역 평생교육 실태조사는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을 넘어서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처럼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의거한 시설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기관명		프로그램수	기관수
평생교육법 등록기관 (1유형)	대학(원)부설	8,096	71
	사업장부설	5,744	52
	시민단체부설	478	63
	언론기관부설	486	69
	지식·인력개발형태	4,393	320
	원격형태	42,295	562
	평생학습관	2,224	37
	소계	63,716	1,174
기타법령 등록기관 (2유형)	도서관	2,860	77
	박물관/미술관	201	13
	청소년시설	3,704	51
	여성관련시설	4,660	32
	복지관	5,700	191
	문화원	1,591	23
	직업훈련시설	1,691	34
	기타시설	14,134	568
	소계	32,317	952
총계		98,257	2,163

[표 19]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대상기관 현황

자료: 서울시 2010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시				교육청				평생교육 운영학교
소계	본청	구/군	주민센터	소계	본청	교육 지원청	직속기관	
231	1	16	214	13	1	5	7	458
학교부설	학교형태			원격 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관련
	소계	중학교	고등 학교					
23	11	4	7	28	26	35	9	15
평생 학습관	도서관	박물관/미 술관	청소년시 설	여성 관련 시설	복지관	문화원	직업훈련 시설	기타시설
11	31	8	32	17	206	13	32	51
계	1,250							

[표 20] 부산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대상기관 현황

자료: 서울시 2010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 문제점

□ 평생교육의 실제 현황을 포괄하지 못하는 조사기관 범위

- 조사 대상이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으로 한정되는 것은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이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전수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실재를 감안할 때,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실제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평생교육통계가 평생교육의 구체적인 실천양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통계 자체에 대한 전문가 및 실천가들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며, 활용도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다.

(3) 개선방안 개요

□ 평생교육통계 조사 대상의 확장

- 평생교육통계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통계의 조사 기관의 범주를 확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새롭게 조사에 포함될 기관들의 범위와 영역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 평생교육기관의 범주와 유형의 개념적 재설정

-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적 범주와 유형을 재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과 성격의 교육시설을 통계의 조사 대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범주화는 크게 4가지 유형과 비등록기관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구분	시설분류	정의	시설 유형	
조사 대상	전담 평생교육 기능시설 (1유형)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평생교육실천을 주기능으로 하는 시설	평생학습관	
			학교의 평생교육 (※현재 조사하지 않음)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재 간접조사하고 있음)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복합 평생교육 기능시설 (2유형)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수행에 덧붙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방계학교, 기능대학 등 (간접조사)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간접조사)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청소년 수련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노동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각종 직업훈련시설
	학원 (3유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 실시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개방된 다수 학습자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기관	기술계 평생교육직업학원	
	직능단체의 특별 연수기관 (4유형)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서 제한된 교육대상 범위를 가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1~3유형 기관유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 기업체 연수원, 금융연수원, 공무원연수원, 교육연수원 등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만을 대상으로 조사	
비조사 대상	비등록기관		종교단체 부설 등	

[표 21] 평생교육시설 분류 및 조사대상 범위 예시

- 위와 같은 평생교육시설 분류를 할 경우, 현행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타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들로서 평생교육통계에 포함될 수 있는 기관의 수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기관유형	현황 (단위: 개소)	조사 시점
주민자치센터	2,681	2011.1 현재
청소년 수련원	707	2009 현재
박물관	630	2009 현재
노인복지관	259	2011.6 현재
장애인복지관	186	2011.4 현재
문예회관	182	2009 현재
농업기술센터	160	2009 현재
미술관	131	2009 현재
여성회관	126	2007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90	2011.6 현재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29	2011.6 현재
시·도 교육연수원	16	2011.3 현재

(현황 단위: 개소)

[표 22] 평생교육통계에 포함될 수 있는 타법령에 따른 기관 수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로 분리되었음

- 각 관련 부처 홈페이지 자료 게시판에 탑재된 현황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통계의 조사대상을 확장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대상기관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 점을 감안할 때, 현행의 통계조사 역량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 개선과제명 6: 자료수집 방식의 개선

(1) 현황

□ 기관 종사자들의 온라인 시스템에 기관 종사자들이 직접 자료입력

- 현재 평생교육통계의 조사는 각 시도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방식은 기관 종사자들이 평생교육통계시스템(<http://lifelong.ke.re.kr>)에 접속하여 소속 기관의 교육실천 현황을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평생교육시설 담당자들의 자료 입력과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자료입력에 관한 사전 매뉴얼을 보급하는 동시에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의에 대한 응대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한다.

(2) 문제점

□ 공급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자료 수집 방식 필요

- 1유형뿐만 아니라 2유형까지 평생교육기관조사를 확대할 경우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 중 하나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과 학습자 중심의 시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 예컨대 공급자 중심에서 볼 때, 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국립도서관, 시도 설립 도서관, 기초지자체 설립 도서관, 민간 도서관 등 다양하며 이들을 공급자 중심에서 조사한다고 할 때, 조사 경로와 방식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들이 모두 동일한 “도서관”이며,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
- 현재 전체 도서관을 한꺼번에 총괄할 수 있는 행정라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조사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들

에 대한 현재의 온라인 시스템 조사는 그 강제력에서 부족함이 있다. 하나의 현실적 대안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평생교육 담당자가 일괄 조사하는 것이다.

□ 기관차원의 자료입력 부담가중으로 인한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 수집의 문제점

- 기관 종사자들이 조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들의 기관 현황에 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이들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많은 현장 종사자들은 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 평생교육통계조사에 응하는 것이 기존의 업무에 추가되는 업무로 인식됨에 따라서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입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전수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평생교육통계의 취약성

- 각 시도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관리되지 않을 경우, 통계조사 자체가 전수조사로서 의미를 잃게 된다.
- 현장 담당자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요청하여야 하는데, 향후 2유형의 기관, 즉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법령 이외의 타 법령에 의거한 시설 담당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주무기관의 행정적 역량이 요청된다.

(3) 개선방안 개요

□ 2유형의 경우, 기관 종류별로 통일된 조사형식 및 방식 필요

- 현재 2유형 기관들의 경우 주무부처에 따라 기관이 관리되고

자료가 확보되는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간접적인 2차 자료를 통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시행하기 어렵다.

-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포맷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 실제 조사에서 통일된 포맷을 활용하되, 중앙부처를 통한 **top-down** 조사방식보다는 기초지자체를 통한 **bottom-up** 조사방식이 효과적이다.

□ 조사대상의 중복성 제거를 위한 노력 필요

- 중앙부처를 통한 **top-down** 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중복조사가 불가피해진다. 예컨대, 많은 수의 도서관들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써 도서관을 평생학습과 분리하여 조사할 경우,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중복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
- 결국 지자체에서의 수요자적 시각에 맞춘 **bottom-up** 방식의 조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통계조사에 기초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 평생교육통계의 전수 범위(parameter)를 규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기간 설정

- 평생교육통계조사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평생교육 실천에 관한 전수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관의 전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를 위해서 기초조사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특별회계와 특별인력을 투입하여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의 존재여부를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조사한다.

□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직접조사 방식 적용

- 조사대상 전수를 포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앙의 각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들이나, 지자체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기관들을 막론하고 지자체가 주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 최근 평생학습도시¹⁾의 확대 및 모든 지자체에서의 평생학습 정책의 중요성 제고로 인하여, 거의 모든 기초 지자체가 평생학습 통계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조사 주무기관과 지자체의 협력망은 서로간의 윈-윈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 각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의 등록기관 정보유지관리 책무 강조

- 전수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관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교육청 및 지자체로 나뉘어있는 평생교육기관 정보관리 체제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설립되고 있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정책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01년 평생학습도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최초로 경기도 광명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라북도 진안군의 3개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그 후 거의 매년 꾸준히 선정하여 2011년 현재는 총 84개 시군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있다.

7) 개선과제명 7: 조사주체의 전문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

(1) 현황

□ 조사주체의 인력 현황

- 평생교육통계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구센터가 매년 조사기획 및 조사실무, 그리고 결과분석 및 공표를 담당하고 있다.
- 구체적인 평생교육통계 조사실무 및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내 담당부서 가운데 팀장 포함 총 4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평생교육통계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 조사주체의 행정적 위상

- 평생교육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의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청 관할을 받지 않는 교육시설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2) 문제점

□ 내용 전문성의 확보

- 2008년 국가통계품질진단을 통해서도 보고된 것처럼 실질적인 조사주체인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통계팀에서 평생교육통계 작성을 위하여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매우 전문적이며 세련된 조사가 이루어져왔다.
- 그러나 평생교육통계조사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몇 단계의 진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용 전문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현재 팀 내에 평생교육 내용 전공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또한 다른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성에도 일정한 한계가 발견되고 있는 점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조사요원의 확보와 교육이 필요한데, 전국의 평생교육시설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는 비용, 그리고 이들의 조사활동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 향후 평생교육 행정 체계와 연계된 조사체계 필요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평생교육체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 평생교육체계의 진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체계 구축, 대학 평생교육의 활성화, 평생학습도시의 비약적 발전, 직업 역량 향상 교육에서의 평생학습의 역할 증진, 학점 은행제 및 학습계좌제의 등장 등 평생교육체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통계조사 시스템이 필요한 단계에 와있다. 말하자면, 향후 평생교육통계조사는 단순한 기관 조사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 평생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통계조사 주무기관은 이러한 비전과 경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함께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현재와 같은 온라인 기반 직접조사 방식 즉, 시도 및 시군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은 앞으로 그 적합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각 지자체의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들과의 연계,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체제를 기반으로 평생교육통계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개선방안 개요

: 세 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개선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중심 : 현재의 조사범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 현재의 인력구조와 조사방식을 통해서는 2유형 기관들에 대한 직접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현재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오류 수정 전략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통계조사 개선이 마무리될 수 있다.
 - 평생교육통계팀 내 전공자 배치 및 관련 학계 협력연구진의 지속적 활용
 - 통계작성과정에서의 오류 생산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개선
 - 평생교육통계를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전격적 고려

□ 평생교육진흥원 중심: 조사범위를 2유형까지 확대하는 시나리오

- 2유형 기관들을 조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청 중심의 조사방식에서 지자체 중심 조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통한 직접조사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주체를 평생교육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단, 조사주체와 기초지자체를 연결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계조사 주체의 이관
 - 평생교육진흥원 내의 통계조사팀 구
 - 통계조사는 평생교육법이 정한 평생교육진흥원의 핵심 기능

-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그 업무가 고립되지 않고 진흥원의 기획 및 집행 기능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 필요
- 통계조사 주체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체제 구축 및 예산이 필요하며, 조사비용은 지자체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현재까지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자체 평생교육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통계조사에 대한 내용도 연수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음.
 - 현재 전체 학습도시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음. 반면, 경험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컨설팅 지원팀의 신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포괄적 지원을 위하여 시도단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통계조사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관련 정책을 기획·집행·시행해야 할 시도 및 시군구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은 전문적 컨설팅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중심

: 조사의 효율성 개선 및 통계조사의 지역특성화를 위한 시나리오

(향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적극적 검토, 그 이전까지는 평생교육진흥원 중심으로 진행한 후 점차적 이관검토 -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지역 형편에 맞는 조사 범위를 확정하고, 그 안에 국가 통계의 공통분모를 수용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자료조사의 실질적 책임을 담당하며, 중앙 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적인 프레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 중앙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간의 협력관계 구축
- 각 지자체의 통계조사 지원에 관한 책무성 강조

8) 개선과제명 8: 분류체계 항목 선택의 구조적 오류

(1) 현황

- 현 조사체제는 기본적으로 각 기관이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한다. 매년 12만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들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본 조사는 그 12만개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데이터를 수집한다. 학교교육과 달리 평생학습 차원에서는 기관현황보다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본 조사의 핵심은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데이터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조사와 관련하여 대개 다음 여섯 가지 차원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1) 프로그램 수준, (2) 프로그램 내용, (3) 프로그램 방법(원격-집합 여부 포함), (4) 학습시수(교육기간 및 총 시수) (5) 학습결과 평가 및 인증 여부, (6) 프로그램 개발방식 및 재정지원 여부 등.
- 현재 프로그램 수준과 관련해서는 대상층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방법에 관해서는 원격-집합 교육여부를 묻는다. 학습결과 평가 및 인증과 관련해서는 학점은행제 적용 여부에 관해 묻고 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프로그램 내용을 묻는 방식인데, 현재는 평생교육법에 예시되어 있는 6대 영역, 즉 문해교육, 성인기초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을 내용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하위 3단계씩으로 나누어 총 18개 영역으로 내용영역을 분류하고 있다.

(2) 문제점

- 프로그램 데이터 입력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프로그램 분류방식을 단말 입력자로 하여금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그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이 6대 내용 분류가 논리적 구분이라기 보다는 관습적 구분일 뿐더러, 법적으로도 일종의 예시로 등장했을 뿐 그 각각이 어떤 지식 영역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각각 어떤 지식 영역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인문교양교육은 직업능력향상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내용 영역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을 다룰 수 있다. 또한 직업능력향상교육의 경우에도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을 다루는 직업전문성향상 교육일 수 있다. 현재 직업능력향상교육의 경우 주로 직업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대부분의 교육이 이 범주로 분류될 뿐 실제로 그 내용영역을 반영하여 자료가 입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인문교양교육의 경우 내용에 따라서는 시민참여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 유형들이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그리고 학력인정교육에 몰려 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해교육과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은 절대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 또한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스포츠 및 교양체육 부분 등 몇 가지 영역을 어느 분류체계 안에 넣어야 할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 6대 영역에 대해 그 하위에 3개씩의 하위 영역을 추가로 설정할 경우 데이터 입력의 어려움은 조금 더 가중된다. 각각의 영역이 논리적 분류체계가 아닌 임의적 영역 구분임을 감안한다면 프로그램 분류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화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개선방안 개요

- 프로그램 내용구분이 일관되게 입력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 첫째, 각급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전문가들에게 현재 통용되는 현실적 분류기준을 통계 분류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둘째, 현재의 6대 분류체계를 폐지하고 새롭게 구분할 수 있는 논리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만일 정책적 차원에서 현재 6대 영역 분류를 유지해야 할 경우, 부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높인다.
- 이 가운데 세 번째 선택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9) 개선과제명 9: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1) 현황

- 현재 평생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통계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들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표 23]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 통계조사 관련 조항

자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2008)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도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국가통계의 경우 1유형기관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2유형 기관들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절반이 안되는 숫자가 포함되기도 한다.

(2) 문제점

- 현재 평생교육통계조사는 법정통계로서 나름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에 대한 강제력은 거의 없는 형편이며, 조사를 주관하는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의 네트워크 능력에 따라 조사의 성실성이 결정되는

형편이다. 매년 보고되는 기관 가운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름뿐인 기관들이 상당수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만일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를 2유형 기관(기타법령 등록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제도적 강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2유형기관들이 그 규모면에서 1유형의 기관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은 개별 법령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국가통계의 원자료와 지자체 조사 원자료 간의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혹은 두 층위의 기관 사이에 자료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함으로써, 조사된 통계자료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조사의 실시 주체에 있어서 시도의 경우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혹은 지자체의 평생학습담당자들이 조사를 하는 반면, 국가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담당하고 있음으로서 의사소통 및 행정적 협조체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3) 개선방안 개요

- 2유형 기관들을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조사의 주관기관 및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 평생교육법을 통해 기관유형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유형에 관한 명확한 범주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계조사는 이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과 품질 관리를 위한 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2유형 기관들에 대

한 통계조사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 이런 전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평생교육통계조사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로 하여금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조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재 평생교육법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대한 등록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맡도록 하거나 아직 설립중일 경우 해당 지자체의 평생교육 담당부서가 맡아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3장. 개선과제별 세부 개선방안

1절. 개선과제명: 프로그램 영역 데이터 오류의 문제

- 프로그램 데이터 오류와 관련하여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간 개념적 불명확성이 가장 빈번하여 오류 데이터가 많았다.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득, 시민참여 등의 경우 비교적 영역 간의 개념적 경계가 분명하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입력된 데이터를 보면 세 영역 간에도 동질적 자료가 제시된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2008년 학력보완 프로그램의 자료를 보면, 실제 입력된 데이터가 학력보완 프로그램과는 상관없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 학력보완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다.

20081	레고5세	학력보완	3개월	4	48	32	16	70,000
20081	레고6세	학력보완	3개월	4	48	28	20	70,000
20081	레고7세	학력보완	3개월	4	48	16	8	70,000
20081	레고탁타(1-2학년)	학력보완	3개월	4	48	20	12	70,000
20081	베이비레고탁타(24-32)	학력보완	3개월	4	80	20	52	35,000
20081	레고베이비탁타(16-24개월)	학력보완	3개월	4	80	16	48	35,000
20081	동화구연(6-7세)	학력보완	3개월	4	48	12	12	60,000
20081	동화구연(초등)	학력보완	3개월	4	48	12	12	60,000
20081	유아난타	학력보완	3개월	4	48	32	16	60,000
20081	소풍드림	학력보완	3개월	4	48	24	8	70,000
20081	중이합기(유아)	학력보완	3개월	4	48	8	24	60,000
20081	중이합기(초등)	학력보완	3개월	4	48	4	8	60,000
20081	영아랑놀이체육	학력보완	3개월	4	80	20	52	30,000
20081	초등수학5학년	학력보완	6개월	2	50	30	15	96,000
20081	초등수학6학년	학력보완	6개월	2	50	30	20	96,000
20081	유아가배	학력보완	3개월	4	40	26	12	70,000
20081	초등가배	학력보완	3개월	4	40	27	12	70,000
20081	풍류탈라플레임스쿨(6-12개월)화	학력보완	3개월	4	48	24	24	90,000
20081	레고탁타	학력보완	1개월	12	240	72	144	20,000
20081	방과후교실-글쓰기A	학력보완	1개월	12	270	120	144	30,000
20081	풍류탈라플레임스쿨(20-29회)A	학력보완	3개월	4	48	24	24	90,000
20081	풍류탈라플레임스쿨(30-40회)A	학력보완	3개월	4	48	28	20	90,000
20081	풍류탈라플레임스쿨(30-40회)B	학력보완	3개월	4	48	8	16	90,000
20081	김성삼놀이	학력보완	3개월	4	60	20	28	45,000
20081	지도탐색놀이	학력보완	3개월	4	60	28	12	45,000
20081	유익가든	학력보완	3개월	4	60	12	40	79,000
20081	풍류탈라	학력보완	3개월	4	60	32	16	100,000
20081	영어동화구연	학력보완	3개월	4	60	20	24	45,000
20081	자식불러교실	학력보완	3개월	4	60	32	12	59,000
20081	리닝아이	학력보완	3개월	4	60	20	32	90,000
20081	유아재즈댄스	학력보완	3개월	4	60	12	20	45,000
20081	영재물린	학력보완	3개월	4	60	28	16	55,000
20081	동요교실	학력보완	3개월	4	60	20	20	45,000
20081	표현미술	학력보완	3개월	4	60	20	40	45,000

[그림 15] 2008년 학력보완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그램 자료

-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의 경우도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유형과 대상의 프로그램(영유아, 유아 프로그램부터 문화예술활동, 외국어 교육 등)이 분류되어 있었다.
- 또한 외국어 강좌를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그램으로 입력하

는 등 기초적인 분류체계에 대한 입력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조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2009년, 2010년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20081	룰루랄라해피스쿨(31-40개월)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48	28	20	90,000
20081	기초한자교실	성인기초/문자해독	1개월 미만	2	40	41	27	-
20081	동화놀이세상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8	150	50	100	80,000
20081	영어유치원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8	250	100	150	150,000
20081	동화구연A(6.7)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60	20	40	55,000
20081	동화구연B(5.6)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60	24	36	55,000
20081	동화구연중급(6.7)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60	28	32	59,000
20081	글짓기는술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8	200	100	100	80,000
20081	대교차이동중국어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11	9	60,000
20081	리틀몬테소리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0	20	80,000
20081	베이비몬테소리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0	20	80,000
20081	프뢰벨가뱃고육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0	20	80,000
20081	비즈영재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10	10	80,000
20081	영재아이집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10	10	90,000
20081	베이비레고닥터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10	10	80,000
20081	빅자일드영재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10	10	80,000
20081	아호!하바야놀이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20	10	80,000
20081	신나는룰루랄라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100	80	20	90,000
20081	하바라동놀이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10	10	80,000
20081	영재왕열린마술놀이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0	20	80,000
20081	플레이미집놀이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10	20	90,000
20081	훈이의집프랑스음악&신체활동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10	20	80,000
20081	지그재그신체활동놀이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50	30	20	80,000
20081	트니트니신체놀이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10	10	90,000
20081	트윙클로돌러영어발레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100	50	50	90,000
20081	유지가튼음악놀이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100	50	50	90,000
20081	마태우스클래스영재음악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100	50	50	90,000
20081	옥스포드리틀리리아영어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10	10	90,000
20081	유지컬영리쉬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10	10	60,000
20081	스피지게임&리더십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50	20	30	80,000
20081	일요일표행상동화구연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10	10	60,000
20081	신나는포마요리사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10	10	60,000
20081	레고구성놀이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50	25	25	70,000

[그림 16] 2008년 성인기초/문자해독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그램 자료

20091	순찰여성한글학교	성인기초/문자해독	10개월	1	50	0	46	-
20091	이주여성한글학교(한글)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1	10	0	10	-
20091	문해교육초등중급과정	성인기초/문자해독	12개월	1	20	0	20	-
20091	기초한글교실	성인기초/문자해독	6개월	2	120	8	12	-
20091	동화로배우는한국어	성인기초/문자해독	2개월	1	40	0	10	-
20091	비문해자어트신(ABC영어)	성인기초/문자해독	12개월	1	20	10	10	-
20091	비문해자어트신(한글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	12개월	1	20	10	10	-
20091	문해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	12개월	1	120	15	105	-
20091	한국어를배우자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53	21	32	-
20101	성인문해한글기초반	성인기초/문자해독	10개월	1	10	0	10	-
20101	성인문해한글중급반	성인기초/문자해독	10개월	1	10	0	8	-
20101	성인문해영어기초반	성인기초/문자해독	12개월	1	20	3	17	-
20101	성인문해한자반	성인기초/문자해독	10개월	1	10	3	11	-
20101	8회아가공의재테크고수만들기기초반	성인기초/문자해독	2개월	4	30	0	20	180,000
20101	김세원의생활영어(중급)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0	7	120,000
20101	수요해외여행영어(중급)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0	5	90,000
20101	수요해외여행영어(초급)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0	5	90,000
20101	금요해외여행영어(고급)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0	9	90,000
20101	금요해외여행영어(중급)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0	7	90,000
20101	생운을부르는인상학인생을알면인생이줄다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0	14	100,000
20101	제이슨의강초보영글리쉬10회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0	7	100,000
20101	8회아가공의재테크고수만들기심화반	성인기초/문자해독	2개월	4	30	0	13	180,000
20101	홍스키영어유치원(5~7세)12회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0	16	120,000
20101	영)트윈클영어발레(3~4세)12회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0	13	80,000
20101	유)트윈클영어발레(5~7세)12회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0	11	100,000
20101	임현영의생활글수필창작12회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40	2	35	120,000
20101	이복재의일본어(위문소설반)112회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20	0	15	80,000
20101	일본어프리토크반(감사나시무라노리코)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0	10	90,000
20101	임현영과함께하는문학산책12회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1	28	120,000
20101	영시(英詩)의향기3개월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2	8	100,000
20101	이복재의일본어(소설반)12회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4	30	0	7	80,000
20101	저자특강두자의먹을집는부동산강의노트	성인기초/문자해독	2개월	4	30	6	12	200,000
20101	Native와함께하는생활영어2단계(3개월)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8	60	0	42	170,000
20101	Native와함께하는생활영어1단계(3개월)	성인기초/문자해독	3개월	8	60	0	30	170,000

[그림 17] 2009-2010년 성인기초/문자해독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그램 자료

- 시민참여 프로그램 역시 위에서 제시한 학력보완, 성인기초/문
자해득 프로그램과 동일한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20081	차이동중국어	시민참여	3개월	48	10	0	5	60,000
20081	광명ABC&MUSIC	시민참여	3개월	48	30	4	26	80,000
20081	얼마와함께하는동화교실(방학특강)	시민참여	1개월 미만	1	40	10	30	-
20081	독서토론편	시민참여	4개월	1	60	30	23	-
20081	얼마와함께하는동화교실	시민참여	4개월	1	40	20	20	-
20081	재밋고신나는동화교실	시민참여	3개월	2	50	25	25	-
20081	멀티미디어창작교실	시민참여	3개월	2	50	25	25	-
20081	교과서와친해지는신문활용교육	시민참여	3개월	1	30	15	15	-
20081	생각을그리는동화교실	시민참여	3개월	1	20	10	10	-
20081	달크로즈유적	시민참여	3개월	4	120	0	111	90,000
20081	이야기가있는점프아이동작놀이세상(35~45세)	시민참여	3개월	4	60	5	10	100,000
20081	아마데우스	시민참여	3개월	4	400	0	321	90,000
20081	유지가든얼마	시민참여	3개월	4	200	0	183	90,000
20081	꼬마동네퍼포먼스미술여행(3-4세)	시민참여	3개월	4	200	0	173	70,000
20081	레고덕타	시민참여	3개월	4	200	0	200	80,000
20081	신나는물루랄라	시민참여	3개월	4	800	0	686	80,000
20081	영재아이집	시민참여	3개월	4	160	147	0	80,000
20081	베이비밋사지	시민참여	3개월	4	160	0	129	30,000
20081	트니트니키즈캠프	시민참여	3개월	4	600	0	460	90,000
20081	말&베이비요가	시민참여	3개월	4	60	0	54	60,000
20081	유아발레	시민참여	3개월	4	240	0	212	80,000
20081	바둑교실	시민참여	3개월	4	200	0	155	50,000
20081	올벤스피치리더십	시민참여	3개월	4	160	0	139	70,000
20081	유지열왕글리쉬	시민참여	3개월	4	120	0	118	70,000
20081	노래부르는영어동화	시민참여	3개월	4	60	0	45	70,000
20081	유아미술	시민참여	3개월	4	120	0	109	70,000
20081	이솝글쓰기	시민참여	3개월	4	80	0	61	50,000
20081	초등NIE교실	시민참여	3개월	4	60	0	43	60,000
20081	스트레칭	시민참여	3개월	4	80	0	78	50,000
20081	방송댄스	시민참여	3개월	4	60	0	53	50,000
20081	얼마와함께하는유아체조	시민참여	연간	1	27	17	10	60,000
20081	얼마와함께하는유아체조	시민참여	연간	1	46	30	16	60,000
20081	유지열왕글리쉬	시민참여	4개월	3	60	9	12	70,000

[그림 18]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그램 자료

- 데이터 오류 문제는 일차적으로 구조적 차원의 문제이고 이와
관련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만큼 여러 차원에서
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의 의견
을 들어보면 평생교육통계 전반에 대한 인식부족과 세부내용
에 대한 공유 미흡,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방식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 담당자들의 책임 있는 참여
가 도출되어 최초 입력단계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현재의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입력단계에서
설사 오류가 발생되더라도 중간단계에서 데이터 오류를 검증
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체계화된다면 현재의 문제를 최소
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 첫째, 개념적으로 불분명한 분류체계에 대한(특히, 프로그램)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조사대상 기관이 확대될 경우 기관 분류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분류에 대한 전문가적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 분류체계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학문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통계 자료 활용의 연속성을 위하여 급격한 프로그램 재분류의 적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분류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화를 탐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세부 개선방안 8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므로 P.116 참조
- 둘째, 실무적인 차원에서 입력 담당자들의 이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기적인 연수가 기획·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까지 연수에 참여하는 대상은 전체 중에 일부에 불과하며, 사업장 부설 등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협조 관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동영상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되,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프로그램 입력의 조건으로 연결함으로써 매년 변경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에 대해 입력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 조사방법이 바뀌어 온라인 직접 입력 중심에서 지자체 담당자의 조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을 경우 이들의 조사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예산, 업무, 시간 등)이 뒤따르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조사과정에서 입력자들의 입력을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장치 (온라인 게시판, 옴부즈 이메일, 헬프 데스크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셋째, 조사기관이 데이터 오류를 구조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전문가 개입, 인원, 시스템 등) 방법과 관련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 프로그램 등 아직까지 데이터 검증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오류 방지 대책을 세운다.
 - 매년 조사가 끝난 후 10인 내외의 관련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그 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검증·검토를 의뢰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 매년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일정 부분 자료를 공개하고 통계 분석 보고서 공모를 실시하고, 그것을 통하여 통계조사 자료의 신뢰성 및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청취한다.
- 넷째, 지난 4년간 누적된 데이터들은 자료의 빈곤이라는 상황에서 볼 때 매우 소중한 자료들이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여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절. 개선과제명: 불필요한 데이터 입력의 간소화 문제

□ 시스템 문제 개선

- 시스템 문제(효율성을 위한 기술지원의 부재)는 조사기관에서 조사양식을 엑셀형태로 미리 배포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학기별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었다가 조사기간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많은 기관일수록 1년 동안의 누적된 자료를 제한된 조사기간에 쫓겨 개별 입력하는 방식은 여러모로 큰 부담을 주며 이는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조사 자료를 누적하여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시스템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나. 프로그램 및 학습자

<입력창>

조사회차			기관명			이전자료저장	
프로그램유무	☒ 있음 ☒ 없음						
프로그램총수	1개월미만		1개월이상		계		
1개월 미만 프로그램 총수 :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인 프로그램 중 교육시수가 8시간 미만인 프로그램의 수 교육기간이 1개월 이상인 프로그램과 1개월 미만 프로그램 중 교육시수가 8시간 이상인 프로그램만 입력합니다.							
프로그램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프로그램선택
프로그램명							
주제구분	1. 학력보완		2. 성인기초/문자해독		3. 직업능력향상		
	4. 인문교양		5. 문화예술		6. 시민참여		
교육기간	1개월미만, 1개월~24개월, 25개월이상, 연간		교육시수		시간	교육시수 계산	
연간교육횟수	회		총모집정원	명			
총수강인원	남	명	여	명			
수강료	☒ 유료 ☒ 무료						
	최고 원		최저 원		최고금액과 동일		
재정지원	1. 지원없음 2. 국고지원 3. 교육청지원 4. 지방자치단체지원 5. 기업지원 6. 기타지원		수요대상	1. 어린이 2. 청소년 3. 성 인 4. 노 인 5. 통 합			
학점인정여부	☒ Yes ☒ No						
프로그램개발형태	1. 자체개발 2. 위탁개발 3. 외국도입		프로그램운영형태	1. 자체운영 2. 위탁운영 3. 병행운영			

[그림 19]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그램 및 학습자 입력창

자료: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한국교육개발원, 2011: 36)

□ 조사 항목의 개선

- 교강사 입력창에서 개인별로 강사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은 이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에 비해 자료의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입력 데이터의 지속기간이 짧고 즉, 수시로 바뀔 만큼 변동이 잦고, 강사의 신상자료가 어느 곳에 활용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필요하다면 교강사에 관한 자료는 기관별로 현재 조사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 전체 통계자료만 제시해도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다. 교강사

<입력창>

조사회차				기관명				
구분		합계	만20세이하	만21~30세	만31~40세	만41~50세	만51~60세	만61세이상
1년미만 근무강사	계							
	남							
	여							
1년이상 근무강사	계							
	남							
	여							
총합계	계							
	남							
	여							
교강사유무		☐ 있음 ☐ 없음						

조사기준일(2011년 5월 1일) 당시, 1년이상 현 기관에 근무한 강사만 입력합니다.

교강사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최종학력	1. 고졸이하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이상	입사년월	
담당강의수	개		

[그림 20] 평생교육통계조사 교강사 입력창

자료: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한국교육개발원, 2011: 52)

□ 프로그램 분류 체계 재검토

- 현재 프로그램 분류가 두 가지 다른 방식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학문적 분류체계 및 법적 분류체계), 이 중

학문적 분류체계에 대한 선택을 계속 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하여 간단한 델파이 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언문 계열	한국어	한국어	사회 계열	사회·문화	정치학	예술 계열	디자인	디자인이론·교양
		논술·글쓰기			사회학			글씨디자인
		독서			행정학			의상디자인
		한글지도(문화)			사회복지			상대 인터넷
		수필(초·중·고)			결혼·가족·가정		응용예술	전통공예
	외국어	영어	교양 계열	교양	신문·방송·출판			생활공예
		일본어			소방·경찰·경호			꽃예술
		중국어			교육학			사진·영상
		한문			매체지도			영상예술
		기타외국어			아동발달			무용이론·교양
	문학	문학이론·문학창작	과학 계열	과학	전통교육		무용·체육	전통무용
		한국문학			과학이론·교양			현대무용
		동·서양문학			생물·화학·물리·천문			생활무용
		인문교양			수학			체육이론·교양
		역사			통계			건강·예방
사회 계열	인문	철학			환경·지리	예술 계열	미술·조형	레저·스포츠
		종교			농업·원예			레크리에이션
		문화	공학 계열	건설·건축·토목	건설·건축·토목			미술이론·교양
		통수·사주			교중·토중			그림·회화
		행정·상당			기계·금속			일러스트레이션
	경영·경제	관리			전기·전자		공연예술	조형
		여성			재료·철강			서예·서화
		컴퓨터이론			컴퓨터기초			연극
		경영정보	컴퓨터·통신 계열	컴퓨터·통신	운영체제			미술
		마케팅			OA		음악	음악이론·교양
		전략·국제경영			인터넷			대중음악
		조직관리			멀티미디어			종교음악
		생산관리			통신			국악·민요
	법률	금융채무			프로그래밍			철학
		회계·세무	의료·보건 계열	의료·보건	데이터베이스		생활교양	전통악기
		부동산			의료			서양악기
		관광·호텔			보건			다도
		취업·창업			원형			게임
		경제			간호			재미채널
법률 계열	법률	법학			평생치료			생활요리
		법학			평생치료			식생활

[그림 21] 평생교육통계조사 일반프로그램 분류(한국교육개발원, 2011: 40)

□ 홈페이지 접속 및 아이디 관리에 대한 연수의 문제

- 자료 입력 기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년 동일한 자료를 다시 반복 입력하는 수고를 덜기위하여 상시적인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상시 개방하고 주기적으로 통계조사와 관련된 안내를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조사 자료를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입력 담당자와의 컨택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교육시수 단위 개선

- 교육시수 단위문제는 자동계산기 입력 창에서 회당 수업시간을 '분 단위'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육시수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

1) **교육시수 계산** 버튼이나 **계산** 을 누른다.

교육시수 계산기

해당 프로그램의 1번 모집할때의 교육시수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십시오.
주수 :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안의 주수를 입력합니다.
주당수업횟수 : 한 주당 수업횟수를 입력합니다.
수업시간 : 한번 수업할 때의 수업시간을 입력합니다.

주 수	
주당수업횟수	
수업 시간	
총수업시수	

계산
확인

→

교육시수 계산기

해당 프로그램의 1번 모집할때의 교육시수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십시오.
주수 :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안의 주수를 입력합니다.
주당수업횟수 : 한 주당 수업횟수를 입력합니다.
수업시간 : 한번 수업할 때의 수업시간을 입력합니다.

주 수	5
주당수업횟수	3
수업 시간	3
총수업시수	45

계산
확인

2) 팝업 되는 교육시수계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한다.

3) 주수: 프로그램이 진행된 주의 횟수를 입력한다.
(예) 3월 1일 개강~3월 31일 종강인 프로그램이라면 총 5주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이므로 5를 입력

4) 주당 수업횟수: 1주를 기준으로 수업이 진행된 횟수를 입력한다.
(예) 1주 동안 월, 수, 금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3을 입력

5) 수업시간: 한번 수업할 때의 수업시간을 입력한다.
(예) 하루에 3시간 진행되는 수업이라면 3을 입력

6) 내용을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총 수업시수가 계산되고, 확인버튼을 부르면 자동으로 교육시수가 입력된다.

7) 유의사항 : 주당 수업횟수가 항상 같은 수는 없으므로 계산된 교육시수를 참고로 가감하여야 함.

[그림 22] 평생교육통계조사 교육시수계산 방법

자료: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한국교육개발원, 2011: 45)

3절. 개선과제명: 활용가치에 따른 조사항목 조정의 필요성

- 구체적인 조사항목에 대한 조정은(항목의 삽입과 삭제, 수정) 현재 조사되고 있는 양식에 더해 추가로 각 지역에서 자체 수집하고 있는 자료양식과 항목을 참조해서 작성되었다. 추가 조사항목을 참고한 지역 및 기관은 서울시청, 경기도청, 제주시청, 부산시 평생교육진흥원, 강원발전연구원 강원RHRD센터, 충북 평생교육진흥원, 대구경북연구원, 울산인적자원개발센터 총 8곳이다.
- 구체적으로 항목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범주별로 언급하면 부록의 표로 제시하였다. ([표 24], pp.89-111 참조)

□ 기관개황 조사항목

- 첫째, 기관분류체계에서 향후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으로도 조사범위가 확장될 경우 평생교육관련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하며,
- 둘째, 본교/분교/캠퍼스 간의 구분은 통계자료의 활용적 가치가 높지 않고, 굳이 필요하다면 지역분류를 통해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 셋째, 기관 교육시설현황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로서 강의실 수 및 부대시설(실습실, 도서관/자료실, 상담실 등) 구비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 프로그램 및 학습자 조사항목

- 첫째, 앞에서 제시했듯이 학적 분류체계(대분류/중분류/소분류)를 분별하는 세부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프로그램 주제구분에서 학력보완 영역은 1. 학력보완

(초·중등)과 2. 학점인정(고등) 간의 구별이 필요하다.

- 셋째, 교육시수는 단위시수를 조정하여 ()분 × ()총회수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넷째, 수강료 선택에서는 수강료 지원으로 항목명을 조정하고 관련 선택지를 1. 자비, 2. 자비+부분지원, 3. 전액지원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섯째, 수요대상은 실제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는 대상층과 운영방식을 반영해서 1. 영유아, 2. 어린이(초등학생), 3. 청소년(중학생~대학생), 4. 성인, 5. 노인, 6. 통합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섯째, 프로그램 개발형태 및 운영형태 조사는 항목 간 영역이 중첩되고 통계자료의 활용측면에서 볼 때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항목이다.

□ 교강사 및 사무직원 현황

- 개별 데이터 입력방식은 여러모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기관별 조사항목에 대한 전체현황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표 24] 평생교육통계 조사항목 조정안

평생교육통계 조사항목 조정안

노란색: 수정

파란색:
포함 혹은 추가

주황색: 삭제
혹은 추가하지 않음

(2011.11.10현재)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항목								지역 추가 조사항목		
항목구분	항목구분	세부항목	기입방식 (직접기입/ 자동입력/ 선택/검색)	선택지1 (대분류)	선택지2 (중분류)	선택지3 (소분류)	포함 여부 (○, X)	추가 여부 (○, X)	추가 조사항목	추가 조사항목 선택지
기관개황	작성자	성명	직접기입				포함			
		전화번호	직접기입				포함			
		내선번호	직접기입				포함			
		핸드폰번호	직접기입				포함			
		이메일주소	직접기입				포함			
		팩스번호	직접기입				삭제			
	기관현황	기관명	직접기입				포함			
		기관장명	직접기입				포함			
		기관설립일	직접기입				포함			
								X	기관설립목적 /주요사업 및 기능	3줄 이내로 직접기입
								X	전체 사업내용	직접 기입
								X	주요 교육사업	직접 기입
		기관유형대분류	자동입력	초·중·등 학교부설	기관유형소분류			추가	※부산: 기타법령에 따 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도 포함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청소년시설, 여성관련 시 설, 복지관, 문화원, 직업훈 련시설, 기타시설
				유치원			포함			

기관개황	기관현황	기관유형대분류	자동입력	초·중·등 학교부설	초등학교		포함	추가	※ 경기도: 22대 평생교육기관 유형	지자체(시군구청 직접운영, 평생교육전담기관(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등), 주민자치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초·중·등 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비정규학교 및 학력인정시설 등), 원격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유동업체 부설 평생교육기관, 문화센터 등), 지식연력개발 평생교육기관(기업체 연수원 등),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 평생교육기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건강보건 평생교육기관, 청소년 평생교육기관, 여성 평생교육기관, 성인문해교육기관, 직업훈련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학원(성인대상 기술계, 전문계, 외국어계 등), 기타
					중학교		포함			
					고등학교		포함			
					초·중·등 학교		포함			
					중·고등학교		포함			

기관개황	기관현황	기관유형대분류	자동입력	대학(원)부설	기관유형소분류			추가	※ 강원도 기관 분류	학교형교육기관(초중등 부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공공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문화원, 사회복지관 등), 민간 교육산업기관(문화센터, 학원 등), 훈련 및 연수형 교육기관(직접훈련기관, 공공연수기관, 민간연수기관 등),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시민단체형 교육기관(청소년, 여성, 노인단체, 종교단체 등), 기타
				대학(원)부설	4년제 일반대학		포함			
					대학원대학		포함			
					산업대학		포함			
					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		포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함			
					기술대학		포함			
					각종학교		포함			
					원격대학		포함			
					사내대학		포함			
					기능대학		포함			
				사업장부설	기관유형소분류					
					유통업체문화센터		포함			
					산업체부설		포함			
				언론기관부설			포함			
				지식,인력개발형태			포함			
				시민사회단체부설			포함			
				원격형태			포함			

기관개황	기관현황	기관유형대분류	자동입력	평생학습관			포함			
		기관유형소분류	자동입력							
		설립구분	선택	국립			포함			
			선택	공립			포함			
			선택	사립			포함			
		본/분교구분	선택	본교			삭제			
			선택	분교			삭제			
			선택	캠퍼스			삭제			
	기관위치	우편번호	검색				포함			
		주소	직접기입				포함			
		대표전화번호	직접기입				포함			
		내선번호/기타번호	직접기입				포함			
		FAX번호	직접기입				포함			
		홈페이지	직접기입				포함			
								x	DB 구축여부	직접기입
								x	교통편	직접기입
		상위기관명	자동입력				포함			
	설립현황	국적	선택	대한민국			포함			
		국적	선택	외국			포함			
		설립주체	선택	국가/지자체			포함			
			선택	법인			포함			
			선택	개인			포함			
			선택	기타			포함			
		법인명	직접기입							
									영리/비영리	1) 영리 2) 비영리
		운영형태	선택	직영			포함			
			선택	위탁			포함			

기관개황	설립현황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여부	자동입력				삭제			
								추가	평생학습관 지정여부	1) 지정 받음 2) 지정 받지 않음
		입시관련시설여부	선택	예			삭제			
			선택	아니오			삭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여부	자동입력				포함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여부	선택	예			삭제			
			선택	아니오			삭제			
		건물소유형태	선택	공공소유			포함			
			선택	법인소유			포함			
			선택	개인소유			포함			
			선택	임차			포함			
								x	임차	전세
								x		월세
			선택	위탁			포함			
			선택	기타			포함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선택	예			포함			
			선택	아니오			포함			
								추가	교육시설현황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실수
							x			시설 총 수용인원
							x			기타 교육관련 시설
							x		기관 주요 시설 현황	강당 유무
							x			강당 최대 수용 인원
							x		교육시설 전체면적	
							x		실습실 설치여부	예, 아니오
							x		자료실 설치여부	예, 아니오
							x		상담실 설치여부	예, 아니오

기관개황								x	인터넷전용선설치여부	예, 아니오
								추가	부대시설 유무	1) 주차 2) 실습실 3) 유아 휴게실 4) 도서관/자료실 5) 인터넷 6) 상담실 7) 기타
								x	기관예산(연간)	자체도달예산액
								x		비용 외부지원예산액 비용
								추가	연간예산규모	
								추가	재정지원여부	지원없음
								추가		국고지원(중앙정부지원)
								추가		교육청지원
								추가		지방자치단체지원
								추가		기업지원
								추가		기타지원(민간시민단체지원)
								x	운영재원	수익사업 %
								x		정부보조 %
								x		기금 조성 %
								x		기타 %
								x	재정지원형태	국고보조 %
								x		후원금 %
								x		교육수강료 %
								x		기타 %
								x	연간 예산	
								x	교육프로그램운영예산	
								x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이유	1) 정부지원내용에 관하여 일지 못함

기관개황							X		2) 지원내용은 알고 있지만 필요성 느끼지 못함
							X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이유	3) 지원받고싶지만 규정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못함
							X		4) 기타 (직접 기입)
							X	정부에 우선적으로 요구하고싶은 항목	1) 교육 시설 및 장비 지원
							X		2) 우수기관 선정 등을 통한 홍보
							X		3) 프로그램 개발, 보급
							X		4)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X		5)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화
							X		6) 기관, 프로그램, 인력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급
							X		7) 기타 (직접 기입)
							X	기관사업 중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비율	20% 이하, 21%~40%, 41%~60%, 61%~80%, 81%~100%
							X	기관의 주 홍보방법	1)신문, 지역정보지, 잡지
							X		2)전단, 포스터, 현수막 등
							X		3)PC통신 및 인터넷
							X		4)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X		5)홍보 실시하지 않음
							X		6)기타 (직접 기입)
							X	기관운영시 예산, 재정의 애로사항의 정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충분
							X	기관운영시 시설, 장비의 애로사항의 정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충분

기관개황								X	기관운영시 인력 관리의 애로사 항의 정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충분
								X	기관운영시 기관 홍보의 애로사 항의 정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충분
								X	기관운영시 타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애로사항 정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충분
								X	기관운영시 정책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의 애로사항 정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충분
								X	기관운영시 정부의 행정정책 지 원의 애로사항 정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충분
								X	기관운영시 교육과 정개발의 애로사항 정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충분
								X	기타 애로사항 기입	
프로그램및 학습자	-	프로그램유무	선택	있음				삭제	※ 연간교육시수 8시간 이상 프로그램이 조사 대상 1) 프로그램 개발 후 운영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제 공만 되는 프로그램은 조 사대상에서 제외 2) 프로그램 운영개발에 개입 안하고 강의공간만 제공한 프로그램은 제외 3) 동일한 프로그램명이 라도 교장사, 교육기간, 재정지원여부, 수요대상, 포르캠 개발 형태, 운영형 태 중 하나라도 다른 경우	
			선택	없음				삭제		

프로그램 및 학습자	-	프로그램총수	직접기입	1개월 미만			포함			
	-		직접기입	1개월 이상			포함			
	-	프로그램분류	선택	인문계열	한국어	한국어	삭제			
	-		선택			논술, 글쓰기	삭제			
	-		선택			독서	삭제			
	-		선택			한글지도(문해)	삭제			
	-		선택			수화(손언어)	삭제			
	-		선택		외국어	영어	삭제			
	-		선택			일본어	삭제			
	-		선택			중국어	삭제			
	-		선택			한문	삭제			
	-		선택			기타 외국어	삭제			
	-		선택		문학	문학이론, 문예창작	삭제			
	-		선택			한국문학	삭제			
	-		선택			동서양문화	삭제			
	-	프로그램분류	선택		인문	인문교양	삭제			
	-		선택			역사	삭제			
	-		선택			철학	삭제			
	-		선택			종교	삭제			
	-		선택			문화	삭제			
	-		선택			풍수, 사주	삭제			
	-		선택			심리, 상담	삭제			
	-		선택			윤리	삭제			
	-		선택			여성	삭제			
	-		선택	사회계열	경영, 경제	경영이론	삭제			
	-		선택			경영정보	삭제			
	-		선택			마케팅	삭제			
	-		선택			전략, 국제경영	삭제			
	-		선택			조직관리	삭제			

프로그램 및 학습자	-	프로그램분류	선택	사회계열	경영, 경제	생산관리	삭제			
	-		선택			금융재무	삭제			
	-		선택			회계, 세무	삭제			
	-		선택			부동산	삭제			
	-		선택			관광, 호텔	삭제			
	-		선택			취업, 창업	삭제			
	-		선택			경제	삭제			
	-		선택		법률	법학	삭제			
	-		선택		사회문화	정치학	삭제			
	-		선택			사회학	삭제			
	-		선택			행정학	삭제			
	-		선택			사회복지	삭제			
	-		선택			결혼, 가족, 가정	삭제			
	-		선택			신문, 방송, 출판	삭제			
	-		선택			소방, 경찰, 경호	삭제			
	-		선택	교육계열	교육	교육학	삭제			
	-		선택			아동지도	삭제			
	-		선택			아동발달	삭제			
	-		선택			진로교육	삭제			
	-		선택	자연계열	과학	과학이론, 교양	삭제			
	-		선택		수학,환경,지리	생물,화학,물리,천문	삭제			
	-		선택			수학	삭제			
	-		선택			통계	삭제			
	-		선택			환경, 지리	삭제			
	-		선택		농림	농업, 원예	삭제			
	-		선택	공학계열	건설, 건축, 토목	건설, 건축, 토목	삭제			
	-		선택		교통, 운송	교통, 운송	삭제			
	-		선택		기계, 금속	기계, 금속	삭제			
	-		선택		전기, 전자	전기, 전자	삭제			

프로그램및 학습자	-	프로그램분류	선택	공학계열	재료, 정밀	재료, 정밀	식제			
	-		선택		컴퓨터, 통신	컴퓨터 기초	식제			
	-		선택			운영체제	식제			
	-		선택			OA	식제			
	-		선택			인터넷	식제			
	-		선택			멀티미디어	식제			
	-		선택			통신	식제			
	-		선택			프로그래밍	식제			
	-		선택			데이터베이스	식제			
	-		선택	의약계열	의료, 보건	의료	식제			
	-		선택			보건	식제			
	-		선택			한방	식제			
	-		선택		간호, 치료	간호	식제			
	-		선택			응용치료	식제			
	-		선택	예체능계열	디자인	디자인이론, 교양	식제			
	-		선택			글씨디자인	식제			
	-		선택			의상디자인	식제			
	-		선택			실내인테리어	식제			
	-		선택		응용예술	전통공예	식제			
	-		선택			생활공예	식제			
	-		선택			꽃예술	식제			
	-		선택			사진, 인화	식제			
	-		선택			영상예술	식제			
	-		선택		무용, 체육	무용이론, 교양	식제			
	-		선택			전통무용	식제			
	-		선택			현대무용	식제			
	-		선택			생활무용	식제			
	-		선택			체육이론, 교양	식제			
	-		선택			건강, 미용	식제			

프로그램 및 학습자	-	프로그램 분류	선택	예체능 계열	무용, 체육	레저, 스포츠	삭제			
	-		선택			레크리에이션	삭제			
	-		선택		미술, 조형	미술이론, 교양	삭제			
	-		선택			그림, 회화	삭제			
	-		선택			일러스트레이션	삭제			
	-		선택			조형	삭제			
	-		선택			서예, 서화	삭제			
	-		선택		공연예술	연극	삭제			
	-		선택			마술	삭제			
	-		선택		음악	음악이론, 교양	삭제			
	-		선택			대중음악	삭제			
	-		선택			중고음악	삭제			
	-		선택			국악, 민요	삭제			
	-		선택			성악	삭제			
	-		선택			전통악기	삭제			
	-		선택			서양악기	삭제			
	-		선택		생활교양	다도	삭제			
	-		선택			게임	삭제			
	-		선택			제과제빵	삭제			
	-		선택			생활요리	삭제			
	-		선택			식생활	삭제			
	-	프로그램명	직접기입						서울시: 분류체계별 대표 프로그램 조사	
	-	주제구분	선택	학력보완 (1. 학력보완(초중 등), 2. 학점인정 (고등) 분리)	학력보완(초중등)		포함	대구경북 인적자원개발 지표조사 : 6대영역+건강/스포츠, 자기능력개발(어학, 컴퓨터활용능력), 다문 화관련(외국인 및 다문 화 2세 대상) 포함		
					학점인정(고등)		포함			

프로그램 및 학습자	-	선택	성인기초/문자해독		포함			
	-	선택	직업능력향상		포함			
	-	선택	인문교양		포함			
	-	선택	문화예술		포함			
	-	선택	시민참여		포함			
						추가	강의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 라인 혼합 중 기재
	-	교육시간 (1회 등록시 교육기간)	선택 1개월미만		포함			
	-	교육시간	선택 1개월		삭제			
	-		선택 2개월		삭제			
	-		선택 3개월		삭제			
	-		선택 4개월		삭제			
	-		선택 5개월		삭제			
	-		선택 6개월		삭제			
	-		선택 7개월		삭제			
	-		선택 8개월		삭제			
	-		선택 9개월		삭제			
	-		선택 10개월		삭제			
	-		선택 11개월		삭제			
	-		선택 12개월		삭제			
	-		선택 13개월		삭제			
	-		선택 14개월		삭제			
	-		선택 15개월		삭제			
	-		선택 16개월		삭제			
	-		선택 17개월		삭제			
	-	교육시간	선택 18개월		삭제			
	-		선택 19개월		삭제			
	-		선택 20개월		삭제			

프로그램 및
학습자

-		선택	21개월			삭제			
-		선택	23개월			삭제			
-		선택	24개월			삭제			
-		선택	25개월 이상			삭제			
-		선택	연간(온라인강좌)			포함			
							x	교수방법	1) 강의식
							x		2) 토론식
							x		3) 탐구형
							x		4) 사례연구형
							x		5) 기타
-	교육시수 (프로그램1회운영시 교육시간수)	() 분 × () 총회수				포함			
-	연간교육횟수	직접기입				포함			
-	총모집정원	직접기입				포함			
							x	월 평균 교육인원	
-	총수강인원 남	직접기입				포함			
-	총수강인원 여	직접기입				포함		※ 프로그램별 등록 학습자 중 프로그램 을 이수한 학습자수	
							x	프로그램 학습자 수	어린이(0세-만8세)
							x		청소년(만9세-만24세)
							x		성인(만25세-만64세)
							x	프로그램 학습자 수	노인(만65세 이상 대상)
							x	교육프로그램 연학습자수	
							x	교육프로그램 일일 학습자수	
							x		1) 학생(초,중,고,대학생)
							x		2) 주부/여성

프로그램 및 학습자							X	수요대상별 학습자 수	3) 직장인/ 구직자
							X		4) 노인
							X		5) 장애인
							X		6) 성인/일반인
							X		7) 외국인/ 다문화 2세
							X		8) 기타 (직접 기입)
	-	수강료 지원	선택	자비		포함			
			선택	자비 + 부분지원		포함			
	-		선택	전액지원		포함			
	-	수강료 최고	직접기입			삭제			
	-	수강료 최저	직접기입			삭제			
						추가		수강료 받는 형태	1) 전액 수강생 부담 (직장 위탁교육 포함)
						추가			2) 수강생 부담+정부지원
						추가			3) 수강생 부담+자체 예산
						추가			4) 정부 지원+자체 예산
						추가			5) 전액 정부 지원
						추가			6) 전액 자체 예산(무료교육)
						추가			7) 기타
	-	재정지원	선택	지원없음		삭제			
	-		선택	국고지원		삭제			
	-		선택	교육청지원		삭제			
	-		선택	지방자치단체지원		삭제			
	-	재정지원	선택	기업지원		삭제			
	-		선택	기타지원		삭제			
	-	수요대상	선택	영유아		포함			
				어린이(초등학생)		포함			
	-		선택	청소년(중학생~대학생)		포함			
	-		선택	성인		포함			

프로그램 및
학습자

-		선택	노인			포함			
-		선택	통합			포함			
							X	초중고	
							X	2년제대학	
							X	4년제 대학(원)	
							X	성인	
							X	여성	
							X	고령자	
							X	장애인	
							X	외국인	
							X	실업자	
							X	취약계층	
-	학점인정여부	선택	예			포함			
-		선택	아니오			포함			
-	프로그램 개발형태	선택	자체개발			삭제			
-		선택	위탁개발			삭제			
-		선택	외국도입			삭제			
-	프로그램 운영형태	선택	자체운영			삭제			
-		선택	위탁운영			삭제			
-		선택	병행운영			삭제			
							X	강의 교재 개발 방법	1) 자체 개발
							X		2) 외부전문가에게 개발 의뢰
							X		3) 강의 담당자가 개발
							X	강의 교재 개발 방법	4) 기존 개발된 외부자료사용
							X		5) 기타
							X	교육프로그램개발시 학습자 요구분석 실 시여부	예, 아니오

프로그램 및 학습자							x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습자 요구/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예, 아니오
							x	실시한 요구조사 결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반영 여부	예, 아니오
							x	교육 후 학습평가 실시 및 그 결과의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여부	예, 아니오
							x	프로그램 개선 빈도	1) 거의 개선하지 못함 2) 2-3년마다 3) 1년 마다 4) 연 2회 5)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선
							x	프로그램개선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	1)학습자의 요구
							x		2)교장의 의견
							x		3)해당 분야 시장, 기술, 지식의 변화
							x		4)기관 경영자의 경영 방침
							x		5)지역사회의 요구
							x		6)기타(직접 기입)
							추가	각 교육프로그램별 평균 교육이수율	10%미만, 10-29%, 30-49%, 50-69%, 70-89%, 90%이상
							x	기관 학습자들이 학습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	1) 교육 이외에 가사, 직장 업무 등과의 병행의 어려움

프로그램 및 학습자								X	기관 학습자들이 학습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	2) 교육비 부담
								X		3) 가족, 직장 내의 이해 부족
								X		4) 학습능력부족 및 자신감 결여
								X		5) 교육내용, 방법, 운영에서의 불만족
								X		6) 기타 직접 기입
								X	기관의 프로그램이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도움안된다, 별로도움이 안된다, 상관없음, 조금 도움이 된다, 매우도움이 된다 중 선택
								X	기관의 프로그램이 학점,학위 또는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도움안된다, 별로도움이 안된다, 상관없음, 조금 도움이 된다, 매우도움이 된다 중 선택
								X	기관의 프로그램이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도움안된다, 별로도움이 안된다, 상관없음, 조금 도움이 된다, 매우도움이 된다 중 선택
								X	기관의 프로그램이 구직활동(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도움안된다, 별로도움이 안된다, 상관없음, 조금 도움이 된다, 매우도움이 된다 중 선택
								X	기관의 프로그램이 교양 함양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도움안된다, 별로도움이 안된다, 상관없음, 조금 도움이 된다, 매우도움이 된다 중 선택
								X	기관의 프로그램이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도움안된다, 별로도움이 안된다, 상관없음, 조금 도움이 된다, 매우도움이 된다 중 선택

								x	기관의 프로그램이 인간관계 개선에 도 움이 되는 정도	전혀도움안된다, 별로도움 이 안된다, 상관없음, 조금 도움이 된다, 매우도움이 된다 중 선택
프로그램 및 학습자								x	기관의 프로그램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도움안된다, 별로도움 이 안된다, 상관없음, 조금 도움이 된다, 매우도움이 된다 중 선택
								x	지역주민을 위해 앞 으로 개설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	직접 기입
								x	수강생들이 가장 만 족해하는 프로그램	직접 기입
								x	프로그램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	1) 강사의 전문성 2) 친절한 운영진 3) 프로그램의 실용적내용 4) 저렴한 수강료 5) 편리한 교육시설 5) 기타
								x	주된 교육프로그램 의 학습자 모집방법	1)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2) 신문광고, 지역신문, 관 보 등 인쇄 매체 3)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이용 4)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등 5) 주위사람들의 권유 6) 기타(직접 기입)
								x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큰 장애요인	1) 기관의 무관심 2) 시민의 무관심 3) 능력있는 강사의 부재 4) 직원의 전문성 결여 5) 자체 교육공간의 부족 6) 교육 기자재 부족 7) 업무인력의 부족 8) 기타(직접 기입)

							X		동아리명
							X		대표(리더)
							X		전화번호
							X		회원수
							추가		결성일자
							추가		활동목적
교강사현황	-	이름	직접기입				삭제		
	-	성별	선택	남			포함		
	-		선택	녀			포함		
	-	생년월일	직접기입				포함		
	-	최종학력	선택	고졸이하			포함		
	-		선택	전문대졸					
	-		선택	대졸					
	-		선택	대학원이상					
								강사 학력	석사 수
									박사 수
	-	입사년월	직접기입						
	-	담당강의수	직접기입					※ 조사기준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자(내외국인 포함)	
		교강사 및 사무직원 현황의 조사항목은 일부 수정 및 유지하되, 개인별 조사가 아니라 기관의 전체 현황표로 제시함						교강사의 (비)정규직 수	정규직 남, 여, 총수
									비정규직 남, 여, 총수
									임시직 남, 여, 총수
								교강사의 평생교육사 자격 (미)소지 수	1급
									2급
									3급
									1)신문광고
									2)지역생활정보지
									3)인터넷
								가사 개요 조던 바버	

								영역 제한 T R 8 분	4)직접 제외
									5)외부 추천
									6)기타
								시간당 평균 감사료	
사무직원현황	-	사무직원유무	선택	있음					
	-	사무직원유무	선택	없음					
	-	이름	직접기입						
	-	성별	선택	남					
	-		선택	녀					
	-	대표자 여부	선택	대표자					
	-		선택	사무직원					
	-	생년월일	직접기입						
	-	최종학력	선택	고졸이하					
	-		선택	전문대졸					
	-		선택	대졸					
	-		선택	대학원이상					
								최종학력	석사 이상
									박사 이상
사무직원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선택	없음					
	-		선택	1급					
	-		선택	2급					
	-		선택	3급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기관	1)평생교육사 양성기관
									2)대학교 관련학과
									3)전문대 관련 학과
									4)방통대 관련 학과
									5)학점은행제
									1)교육전략 수립

사무직원현황								평생교육사 주된역할	2)교육프로그램 개발
									3)교육프로그램 운영
									4)학습자 상담
									5)교재 개발
									6)교수방법 및 개발 및 지도
									7)감사 또는 학습촉진자
									8)교육프로그램 평가
									9)교수매제 개발
									10)기타
	-	고용형태	선택	정규직					
	-		선택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근로계약 없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자)
								직원 중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중 평생교육사 수
								직원 채용 주된 방법	1) 신문광고
									2) 지역생활정보지
									3) 인터넷
									4) 직접 섭외
									5) 외부 추천
									6) 기타
	-	입사년월	직접기입	->근속년수로 대치					
								직원재교육 실시여부	예, 아니오
								직원재교육 형태	1) 자체 프로그램 실시
									2) 민간영리연수기관에 위탁
									3) 소속관련단체(각종 협회 등) 위탁
									4) 정부교육기관에 위탁
									5) 기타

사무직원현황								직원재교육 빈도	1) 주 1회 2) 월 1회 3) 연 5-6회 4) 연 3-4회 5) 연1-2회 6)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정도	1) 정기적 실시 2) 필요에 따라 실시 3) 형식적으로 연 1,2회 실시 4) 거의 실시하지 않음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 교육내용	직접 기입
								종사자교육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5) 거의 도움되지 않았다
								교육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를 위해 희망하는 실무자 교육의 교육분야	1) 기관경영전반에 관한것 2) 교육프로그램 개발 3)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4) 기관 간의 연계, 협력 5) 평생교육 관련 요구조사 기법 6) 기타(직접 기입)

4절. 개선과제명: 조사내용의 장표 및 자료집에 대한 개선

□ 평생교육통계자료 → 핵심지표 중심으로 재설계

- 첫째, 현재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는 평생교육통계자료는 조사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라 평생교육공급체계를 대표하는 핵심지표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마치 한 국가의 1년 GDP가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설명하는 핵심지표인 것처럼, 우리나라 평생교육통계공급패턴과 변동추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개발, 발전시키는 매개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쟁점이 될 만한 개념들이 표준화되고 정착됨으로써 평생교육의 각종 지표와 지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어야 한다.
-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지표들의 예시이다. 이러한 예시를 활용하여 분석된 데이터 및 지표들을 통계집의 주요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 교육기관의 도농격차 지표: 시군구별 x 기관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수
 - 교육기관의 공공성 지표: 주체별(지자체, 국가, 민간, 개인) 평생교육기관 수
 - 프로그램 지향성 지표: 시군구별 x 프로그램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수
 - 프로그램 공급패턴 분석 지표: 기관 유형별 x 프로그램 유형별 x 지역별 프로그램 수
 - 프로그램 회전율: 1년간 프로그램 개설 횟수의 평균
 - 명목상 프로그램 수 대 실질 프로그램 수: 명목상 프로그램 수란 실질 프로그램 수에 프로그램 회전율을 곱한 수이다.
 - 집합 교육 비중: (전체 프로그램 수 - 원격교육 프로그램 수)

/ 전체 프로그램 수 x 100

- 기초 교육 비중: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 + 학력보완 프로그램 수 +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 / 전체 프로그램 수 x 100

□ 평생교육통계 원자료의 공개

- 평생교육통계 원자료를 지역 및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공개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조합과 매트릭스는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평생교육통계조사체제는 조사에 필요한 핵심개념과 지표, 이론적 개념체계를 구안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히려 원자료를 다양한 연구목적과 지역정책의 기반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 다양한 자료와 지표를 생산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조사항목의 조정사항의 반영

- 조사항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안된 조정사항을 검토한 후 반영하고, 방향제시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논의단계를 거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절. 개선과제명: 조사기관 범위의 재설정

□ 평생교육통계 조사 대상의 확장

- 평생교육통계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통계의 조사 기관의 범주를 확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새롭게 조사에 포함될 기관들의 범위와 영역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평생교육기관 조사에서 평생교육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타 법령에 따르는 평생교육관련 시설까지 포함하여 설정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는 2010년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이외의 기타법령 등록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00여개의 기관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

□ 평생교육기관의 범주와 유형의 개념적 재설정

- 평생교육통계의 조사 대상을 확장하는 노력과 아울러서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적 범주와 유형을 재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과 성격의 교육시설을 통계의 조사 대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생교육기관의 범주와 유형을 재설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의 유형구분을 바탕으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범주화는 크게 4가지 유형과 비등록기관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4 가지 유형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2유형 기관들은 새롭게 조사되어야 할 영역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절에서 논한다.

구분	시설분류	정의	시설 유형		조사유형
조사 대상	전담 평생교육 기능시설 (1유형)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평생교육실천을 주기능으로 하는 시설	평생학습관		직접조사
			학교의 평생교육	(※현재 조사하지 않음)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직접조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간접조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간접조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직접조사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직접조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직접조사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직접조사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직접조사
	복합 평생교육 기능시설 (2유형)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수행에 덧붙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방계학교, 기능대학 등	간접조사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간접조사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신규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청소년 수련원 등	신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신규
			노동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각종 직업훈련시설	신규
	학원 (3유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 실시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개방된 다수 학습자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기관	기술계 평생교육직업학원		간접조사
	직능단체의 특별 연수기관 (4유형)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서 제한된 교육대상 범위를 가짐	※ 기업체 연수원, 금융연수원, 공무원연수원, 교육연수원 등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만을 대상으로 조사		신규
비조 사대 상	비등록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1~3유형 기관유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종교단체 부설 등		-

[표 25] 평생교육시설 분류 및 조사대상 범위 예시 (조사유형 포함)

기관명		프로그램수	기관수
평생교육법 등록기관 (1유형)	대학(원)부설	8,096	71
	사업장부설	5,744	52
	시민단체부설	478	63
	언론기관부설	486	69
	지식·인력개발형태	4,393	320
	원격형태	42,295	562
	평생학습관	2,224	37
	소계	63,716	1,174
기타법령 등록기관 (2유형)	도서관	2,860	77
	박물관/미술관	201	13
	청소년시설	3,704	51
	여성관련시설	4,660	32
	복지관	5,700	191
	문화원	1,591	23
	직업훈련시설	1,691	34
	기타시설	14,134	568
	소계	32,317	952
총계		98,257	2,163

[표 26]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대상기관 현황

자료: 서울시 2010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시				교육청				평생교육 운영학교
소계	본청	구/군	주민센터	소계	본청	교육 지원청	직속기관	
231	1	16	214	13	1	5	7	458
학교부설	학교형태			원격 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관련
	소계	중학교	고등 학교					
23	11	4	7	28	26	35	9	15
평생 학습관	도서관	박물관/미 술관	청소년시 설	여성 관련 시설	복지관	문화원	직업훈련 시설	기타시설
11	31	8	32	17	206	13	32	51
계	1,250							

[표 27] 부산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대상기관 현황

자료: 서울시 2010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타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들로서 평생교육통계에 포함될 수 있는 기관의 수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기관유형	현황 (단위: 개소)	조사 시점
주민자치센터	2,681	2011.1 현재
청소년 수련원	707	2009 현재
박물관	630	2009 현재
노인복지관	259	2011.6 현재
장애인복지관	186	2011.4 현재
문예회관	182	2009 현재
농업기술센터	160	2009 현재
미술관	131	2009 현재
여성회관	126	2007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90	2011.6 현재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29	2011.6 현재
시·도 교육연수원	16	2011.3 현재

(현황 단위: 개소)

[표 28] 평생교육통계에 포함될 수 있는 타법령에 따른 기관 수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로 분리되었음

6절. 개선과제명: 자료수집 방식의 개선

□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직접조사 방식 적용

- 조사대상 전수를 포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앙의 각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들이나, 지자체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기관들을 막론하고 지자체가 주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 최근 평생학습도시의 확대 및 모든 지자체에서의 평생학습 정책의 중요성 제고로 인하여, 거의 모든 기초 지자체가 평생학습통계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조사 주무기관과 지자체의 협력망은 서로간의 윈-윈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요컨대, 전국단위의 조사와 지자체 자체 조사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조사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요하다.

□ 2유형의 경우, 기관 종류별로 통일된 조사형식 및 방식 필요

- 현재 2유형 기관들의 경우 주무부처에 따라 기관이 관리되고 자료가 확보되는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간접적인 2차 자료를 통해서만 필요한 조사를 시행하기 어렵다.
-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포맷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예컨대, 통일된 포맷은 다음 세 가지 차원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1) 동일 기관 유형 내에서의 통일성: 예컨대 “도서관”은 그 시행 주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포맷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2) 기관 유형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포맷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기관들은 그 각각의 목적과 활동 방식에 상당한 자율성이 있으므로 획일적인 한 가지 포맷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최소한의 공통분모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항목의 두 층위로 분리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기관 유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조사는 통일성 있는 한 가지 포맷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요구가 탄력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 공통 항목 + 지자체 자체 요구 항목의 두 층위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하여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선택, 조정하되 통계조사의 핵심 항목들은 반드시 포함하여 포맷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조사 포맷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Bottom-up조사방식의 필요성

- 실제 조사에서 통일된 포맷을 활용하되, 중앙부처를 통한 top-down 방식의 조사 및 지자체를 통한 bottom-up 방식의 조사 방법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 중앙부처를 통한 top-down 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중복조사가 불가피해진다. 예컨대, 많은 수의 도서관들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써 도서관을 평생학습과 분리하여 조사할 경우,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중복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
- 결국 지자체에서의 수요자적 시각에 맞춘 bottom-up 방식의 조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통계조사에 기초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 조사 주기와 내용

- 지금까지의 조사는 주로 현황 파악 중심의 조사였다면, 평생교육정책결정과 관련된 질문들 격년제로 삼입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1) 기관개황 (2) 프로그램 및 학습자 (3) 교강사 (4) 사무직원 등에 더하여 (5) 정책 관련 질문 영역을 더할 수 있다. 단, 이 영역은 매년 필요에 따라 문항이 조정될 수 있다.

- 이 외에도 항목에 따라서는 격년제로 조사해도 될 항목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조사항목별 주기를 조정한다.

□ 평생교육통계의 전수 범위(parameter)를 규정하기 위한 최초 기초조사 기간 설정 및 조사방법 구축

- 평생교육통계조사가 기존의 1유형 기관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평생교육 실천에 관한 전수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관의 전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의 전체 모수집단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모수집단 파악을 위해 특별 기초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특별 인력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1) 2012년 5월 1일 기준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2)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 검증 및 조사대상 확장을 위한 특별 기초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특별회계와 특별인력을 투입하여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의 존재여부를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조사한다.
- 또한 이 기간 동안 전국단위의 지자체 중심 조사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회를 개최한다.
-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여금 실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 평생교육진흥원은 시군구 평생교육담당자 연수를 통하여 이 조사 방법이 자리 잡도록 노력한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체계

- 1) 통계청의 조사의뢰를 받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요원의 선발 및 교육
- 2) 전년도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신규사업체나 소멸 사업체를 직접 확인
- 3)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체의 수에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조사지역을 나눈 조사 요도 작성
- 4) 요도에 따라서 조사요원별로 일정한 수의 사업체의 방문 및 조사활동
- 5) 수집된 자료를 지자체에서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통계청으로 자료 제공

[표 29]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조사체계

- 이 점에 있어서 매년 통계청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 각 지역 내 사업체 현황을 총망라하여 조사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 각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의 등록기관 정보유지관리 책무 강조

- 전수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관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교육청 및 지자체로 나뉘어있는 평생교육기관 정보관리 체제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설립되고 있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유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인·허가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후의 기관 운영에 관한 질 관리 및 감독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 2유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의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7절. 개선과제명: 조사주체의 전문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

: 세 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개선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중심 : 현재의 조사범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 평생교육통계팀 내 전공자 배치 및 관련 학계 협력연구진의 지속적 활용

- 통계팀 내에 최소 평생교육을 전공한 박사 1명과 통계를 전공한 박사 1명을 배치함으로써 평생교육통계의 작성방법과 작성내용 측면에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 평생교육 내용 전문가 집단을 협력연구진으로 활용하여 통계조사방법, 자료검증, 활용 등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 통계작성과정에서의 오류 생산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개선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통계의 실제적 활용 실태와 통계자체의 작성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한다.
- 시군구 입력담당자 연수 기회 확대함으로써 왜곡된 원자료의 입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체계 강화하여 평생교육통계의 발전 계획 및 오류개선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 평생교육통계 작성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평생교육통계 작성업무를 위하여 연간 최소 2억 추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제한적 차원에서의 2유형 기관 확보

- 중앙부처의 협력을 통한 간접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중앙부처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통계에 활용한다. 여기에서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관 개황을 넘어서 개별 프로그램 및 교강사에 대한 자료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2유형 기관들의 경우 기관의 설립목적 자체가 성인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관 수준의 조사만으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따라서 프로그램 및 교강사 조사의 경우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닌 전체 개황 정도의 현황을 각 주무부처로부터 넘겨받는 제한적 범위의 간접조사가 될 것이다.
- [표 30] (p.124)는 중앙부처의 협력을 통해 2유형 자료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해당 중앙부처의 통계 담당 부서이다.

시설 분류	정의	시설유형		통계담당부서	전화번호
복합 평생교육 기능시설 (2유형)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수행에 덧붙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방계학교, 기능대학 등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 교육통계과	02-2100-6320-5, 6351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82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선진화담당관실	02-2100-3192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02-2023-7162-6,8 7170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02-2075-4560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02-3704-9276-7, 9280
		노동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각종 직업훈련시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시장분석과	02-503-9709

[표 30] 2유형 평생교육시설 관련 해당 중앙부처의 통계담당부서

- 평생교육통계를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전격적 고려
 - 초기 전수조사를 목적으로 했던 이유는 이 자료가 평생교육법에 등록된 기관들에 대한 행정 관리의 목적도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전체 경향성을 보려고 한다면 전수조사를 표본조사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표본조사 설계 연구를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평생교육진흥원 중심: 조사범위를 2유형까지 확대하는 시나리오

- 2유형 기관들을 조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청 중심의 조사방식에서 지자체 중심 조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컨대, 전국 만 여개의 학교를 조사하는 학교통계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체계를 통해 조사되어 최종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전달되는 체계와 유사한 것이다.
- 평생교육의 경우 그 주체가 지자체가 되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실제 가동하고 있는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체적 책임 아래 조사, 검증하고 그 결과를 평생교육통계 주무기관으로 보내는 형태이다. 이 때, 핵심 쟁점은 해당 주무기관이 이러한 협력체계를 이끌어낼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평생교육법이 지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 주무기관으로서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 보인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그리고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평생학습계좌제 사업, 학점은행제 등과 함께 광역시도 단위의 평생교육 정보망사업인 ‘다모아 정보망 구축사업(2011년 현재 부산시와 충남 시범 사업 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구축된 시스템을 확충함으로서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통계 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있다.
-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통한 직접조사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지자체가 자체적인 조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 조사주체와 기초지자체를 연결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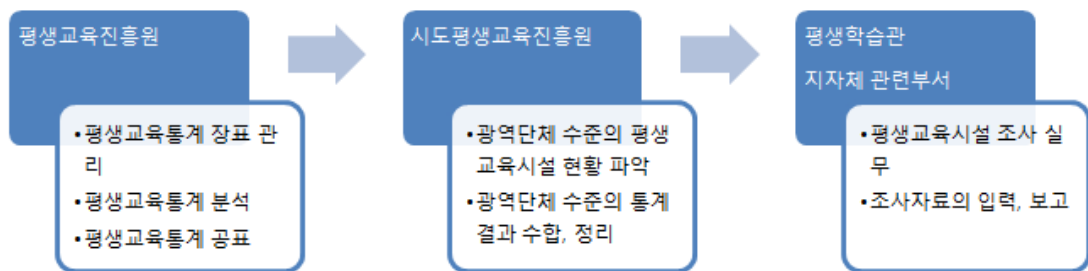
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통계조사는 평생교육법이 정한 평생교육진흥원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그 업무가 고립되지 않고 진흥원의 기획 및 집행 기능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 필요
 - 평생교육진흥원 내의 통계조사팀을 구축하되 통계조사는 평생교육법상 매 5년마다 계획되는 평생학습종합진흥계획, 각 평생교육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진흥원 내의 기획경영실 내에 속하도록 한다.
 - 조사주체를 개발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의 문제, 현재 인력의 재배치 문제, 정원 조정의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최대 약 5년 정도의 기간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단계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 통계조사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을 공동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전체 학습도시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반면, 경험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컨설팅 지원팀의 신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포괄적 지원을 위하여 시도단 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평생교육통계조사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관련 정책을 기획·집행·시행해야 할 시도 및 시군구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은 전문적 컨설팅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중심:

조사의 효율성 개선 및 통계조사의 지역특성화를 위한 시나리오 (향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검토, 그 이전까지는 평생교육진흥원 중심으로 진행한 후 점차적 이관검토 -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자료조사의 실질적 책임을 담당하며, 중앙 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적인 프레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그림 23] 중앙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 평생교육 담당부서와의 협력관계

○ 중앙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간의 협력관계 구축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적으로 5인 이상의 평생교육사 및 그 중 1인 이상의 자격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그 중 최소한 1인에 대하여 평생교육통계 부서의 담당자로 배치하고, 그 역할을 명시한다.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타 기획 및 운영 부서들과 통계담당 부서간의 긴밀히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초기 5년 동안 평생교육조사를 위한 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한다.

- 중앙 평생교육진흥원과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간의 인적협력, 자료공유, 관리체제 공유 등과 같은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상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상시 업데이트한다.
-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통계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며,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시군구 지자체 평생교육담당부서 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정례화하고 그 중 통계조사와 관련된 연수를 반드시 일 년에 두 번 이상 실시한다.

8절. 개선과제명: 분류체계 항목 선택의 구조적 오류

- 프로그램 내용구분이 일관되게 입력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 첫째, 실천 현장에서 사용되는 관습적 구분과 일치될 경우 오류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즉, 각급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전문가들에게 현재 통용되는 현실적 분류기준을 통계 분류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둘째, 각 구분이 논리적 구분일 경우 혼란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현재의 프로그램 6대 분류체계를 폐지하고 새롭게 구분할 수 있는 논리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만일 정책적 차원에서 현재 프로그램 6대 영역 분류를 유지해야 할 경우, 부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높인다.
- 이 가운데 세 번째 선택이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가능하다.
 - 우선, 학력보완교육 - 인문교양교육 - 직업능력향상교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 위의 세 영역 중에 학력보완교육을 선택한 경우 문해교육, 초중등학력보완교육, 대학학점은행제 중 하나를 다시 선택하게 한다.
 - 세 영역 중에 인문교양교육을 선택한 경우에는 언어 컴퓨터 교육, 문화예술교육, 스포츠 교양체육, 시민참여교육 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 세 영역 중에 직업능력향상교육을 선택한 경우 현재 직업학원 분류에 해당하는 분류 영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분야	계열	교습과정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정보처리기술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간호조보기술	간호조무사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경영실무	경영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사무관리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예능	예능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독서실	독서실	

[표 31] 기술계 학원의 교습과정

자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9절. 개선과제명: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 현재 평생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통계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표 32]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 통계조사 관련 조항

자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2008)

- 2유형 기관들을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조사의 주관기관 및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 평생교육법을 통해 기관유형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유형에 관한 명확한 범주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 유지 관리 방안 및 품질 유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계조사는 이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 기관관리에 치중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과 품질 관리를 위한 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임의의 다수 학습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을 유료 무료로 제공하는 모든 기관의 경우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고, 이들 기관들(2유형 기관들)에 대한 통계조사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 이런 전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통계조사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로 하여금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조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또한, 현재 평생교육법에 등록된 교육기관의 대부분이 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교육청의 실질적 감독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대한 등록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맡도록 하거나 아직 설립중일 경우 해당 지자체의 평생교육 담당부서가 맡아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4장. 결론 및 제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이들 기관이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4년간 자료가 축적되었지만, 우선 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그 자료의 활용도는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몇 가지 점에서 기존 평생교육통계시스템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데, 우선 (1) 평생교육전체현황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기관들만을 전수조사함으로써 동향과 추세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보다는 평생교육법의 집행기능을 지원하는 행정적 목적이 더 컸으며, (2)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강제력의 미흡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정확성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3) 조사 실시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주로 구조화된 학교통계조사에 적합한 직제와 과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던데 반해서 평생교육통계는 그와 차별적인 조사시스템과 전문성이 필요로 되었지만, 2008년 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분리 독립하게 됨으로써 이 분야의 통계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협조체계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이번 <평생교육통계 작성 포괄범위 개선 연구>는 2007년 출범한 평생교육통계의 현단계 문제를 보완하고 포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조사의 목적 및 사용자 범위에 대한 재정의, 조사기관 범위에 대한 재정의 및 협조체계 가능성 탐색,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조사체계 개선, 조사내용에 대한 개선 등 전반에 관한 포괄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조사체제 개선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평생교육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은 크게 첫째, 데이터 및 방법적 수준에서, 둘째, 개념과 범주 수준에서, 셋째 운영 및 제도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첫째, 데이터 및 방법적 수준의 단계에서는 (1) 프로그램 영역 데이터 입력의 오류와 (2) 불필요한 데이터 입력의 간소화 문제, (3) 활용가치에 따른 조사항목 조정의 필요성, (4) 조사내용의 장표 및 자료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우선 데이터 오류문제는 통계자료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구조적 차원에서 데이터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입력 담당자들의 정기적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이 기획되어야 하며, 개념적으로 불분명한 분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 4년간 누적된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기관 종사자들이 조사시스템에 접속하여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엑셀형태로 미리 조사 자료를 누적하여 조사기간에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연동시키고, 불필요한 조사항목들은 삭제 혹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항목 조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는 평생교육통계자료는 조사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라 평생교육공급체계를 대표하는 핵심 지표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평생교육통계 원자료를 지역 및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공개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조합과 매트릭스를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제안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둘째, 개념과 범주 수준의 단계에서는 (5) 조사기관 범위의 재설정 (6) 자료수집 방식의 개선, (7) 조사주체의 전문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현재 평생교육통계조사

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평생교육법령 등록 기관만으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실제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자체 수준에서는 이미 평생교육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1유형)을 넘어서 기타법령 등록기관(2유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수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평생교육통계조사가 1유형 기관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평생교육 실천에 관한 전수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관의 전수 범위를 재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생교육통계조사가 확장해야 할 유형을 범주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사주체의 전문성 및 운영방식의 점검을 통해 향후 2유형 기관으로까지 평생교육통계조사를 확장할 경우 현 조사주체가 갖고 있는 행정적 위상의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셋째, 운영 및 제도적 차원에서는 (8) 분류체계 항목 선택의 구조적 오류, (9)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하였다. 여러 부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기관 및 특히 프로그램 조사 분류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새로운 논리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평생교육법을 통해 기관유형 뿐 아니라 프로그램 유형에 관한 명확한 범주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자격조건 유지 관리 방안 및 품질 유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평생교육통계조사의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현재의 조사범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이 되는 체제이고, 둘째는 조사범위를 기타법령 등록기관(2유형)까지 확대하는 시나리오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중심이 되는 체제이고, 셋째는 향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적극적 검토가 가능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계조사의 중심에 두는 체제로서 조사의 효율성 개선 및 통계조사의 지역특성화를 위한 시나리오이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등록된 교육기관의 대부분이 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교육청의 실질적 감독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대한 등록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맡도록 하거나 아직 설립중일 경우 해당 지자체의 평생교육 담당부서가 맡아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되어 있는 평생교육통계조사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로 하여금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조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록 1] 시도별 평생교육기관 조사 범위 및 기관 유형화, 기관조사 항목

시도	기관 범위	기관 유형화	기관조사항목
강원	평생교육법 +기타 법령 기관 (분류 기준 새로 만들)	학교형 교육기관, 공공기관형 교육기관, 민간형 교육산업기관, 훈련 및 연수형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시민단체형 교육기관	일반현황 (기관 성격, 설립·운영주체, 주된 교육대상, 주된 교육내용, 평생교육접유비용), 운영 현황 (운영재원, 수강료 수납형태, 교육인원, 교재개발방법, 홍보방법), 자원 활용 현황 (인력구성 현황, 평생교육사 배치여부, 직원채용방법, 직원 재교육 여부 및 형태, 강사채용방법 등), 운영 애로사항 (전반적 운영 애로사항, 학습자의 학습중단이유, 평생교육참여 저해 이유), 정책적 요구사항 (정부에서의 지원여부, 지원요구항목)
경기	평생교육법 +기타 법령 기관 (분류 기준 새로 만들)	지자체(시군구청 직접운영), 평생교육전담기관(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등), 주민자치센터, 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 초·중등학교부설평생교육기관, 학교형태평생교육기관(비정규학교 및 학력인정시설 등), 원격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사업장부설평생교육기관(유통업체부설 평생교육기관, 문화센터 등), 지식·인력개발평생교육기관(기업체연수원 등), 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평생교육기관,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기관, 건강보건평생교육기관, 청소년평생교육기관, 여성평생교육기관, 성인문해교육기관, 직업훈련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학원(성인대상기술계·전문계·외국어계 등), 기타	1) 평생교육기관: 기관명, 기관설립목적, 주요사업 및 기능, 기관대표자명, 설립연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Fax, e-mail), 홈페이지주소, 조직구성원(전체 직원수, 정규직수, 비정규직수,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자수), 예산(연간예산규모, 재정지원여부: 국고지원, 교육청지원, 지방자치단체지원, 기업지원, 기타지원, 재정지원 없음), 기관주요시설현황(강의실 개수, 강당보유여부), 평생학습관지정여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지정여부, 평생교육기관유형, 권역(경기북부권역/경기남부권역), 평생학습도시(학습도시/비학습도시) 2) 평생교육기관 인적정보: 기관장(성명, 주요활동분야, 연락처,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실무자(성명, 연락처,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평생교육업무 담당기간,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평생교육사자격증 보유여부,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기관)
경남	평생교육법 +기타법령 기관 중 평생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 +평생직업교육 학원	기초자치단체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학교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청소년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여성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노인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문화시설중심 평생교육기관(박물관, 문화원, 도서관 등), 일반 평생교육시설(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사업장 부설), 연수기관(공무원 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공공평생교육시설(주민자치센터 등), 기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초·중고 학교시설, 평생학습관, 경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대학교: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부설 평생교육원	*조사기관별 항목 차이 있음 시군 소재 평생교육기관 현황 조사 항목: (평생교육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 연간 학습자수, 프로그램수,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성격, 설립운영주체), 개인참가비, 학점은행제관련여부, 자격증관련여부, 개설시기,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주참여대상 특성, 참여자수, 프로그램 주목적, 프로그램운영주체, 예산현황 평생교육정보센터 현황 조사 항목: 컨소시엄 기관과의 사업협의 내용, 우수동아리 내용(프로그램명, 운영 주체, 주요내용, 참여대상, 참여자 수)
경북	평생교육법+기타 법령 기관	성격별 분류: 학교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사이버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청소년 평생교육기관, 여성평생교육기관, 노인평생교육기관, 사회복	기관명, 홈페이지, 설립일자,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직원수, 평생교육사수, 담당자명, 담당자 Email, 설립주체(국립/공립/사립 등), 법인번호, 기관설립목적, 기관 회원수, 학습자수, 강사수,

		지기관 및 시설, 문화시설 중심 평생교육기관, 일반평생교육시설, 기타 교육대상분류: 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인(성인일반, 여성, 노인, 대 학생, 교원, 학부모) *광역 조사 없음. 경주시 조사표 참고	운영예산(보조금/자부담), 프로그램현황(강좌명, 기간, 대상, 수강료)
광주		대학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 력개발,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
대구	KEDI 기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모든 기관 (단, 평생교육법 내기관이어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배제)	학교형 교육기관(초중등부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공공기관형 교육 기관(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문화원, 복지관 등), 민간형 교육기관(문화센 터, 학원 등), 훈련 및 연수형 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 공공연수기관, 민간 연수기관 등), 시민사회단체형 교육기관(청소년/여성/노인단체, 종교단체 등), 기타 *광역 조사 없음. 달서구 조사표 참고	기관명, 설립연도, 설립주체(교육청, 구청, 시민단체, 대학, 종교단체, 기타), 기관유형, 직원 수 (정규직, 비정규직, 자원봉사자), 학습동아리 개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프로그램수 강생수, 평생교육 관련 연간예산, 재정적 지원체제(국고보조, 후원금, 수강료, 기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식 및 사업평가(평생학습정책 활성화 정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내 용),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요구(강조되어야 할 핵심정책과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등), 평생교육운영실태(기관에서 평생교육사업의 비중, 운영 프로그램 유형, 평생교육사업 시 장에 요인, 달서구에 요구하는 역할 등)
대전	관내 모든 평생교육시설	통계를 위한 조사는 미시행. 조사 기관 범위 설정 어려움. * 광역 조사 없음(2011년 7월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대덕구 현황	주민 만족도, 요구 조사
부산	평생교육법 +기타 법령 기관 (교과부 기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평생교육 운영 학교,학교부 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원 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부설 평생교 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평 생학습관 기타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관련 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청소년시설, 여성관련시설, 복지관, 문화원, 직업훈련시설, 기타(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 센터, 구민회관 등)	기관유형분류, 소재지, 기관장명, 기관설립일,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작성자(성명, 이메일, 직장전화, 휴대폰, Fax), 설립현황(설립주체, 법인명, 영리/비영리, 운영형태), 건물소유형태(공 공소유, 법인소유, 개인소유, 전세, 월세, 위탁, 기타), 교육시설현황(강의실수, 총 수용인원, 기 타교육관련 보유시설), 조직구성인원(사무직 수, 교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정규직/비정규직,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 여부), 기관예산(자체예산, 외부지원)
서울	기타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연간교육시수 8시간 이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1개 이상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평생교육 운영 학교, 학교부 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원 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부설 평생교 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평 생학습관 기타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관련 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청소년시설,	기관유형분류, 기관기본현황(소재지, 기관장명,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작성자, 설립주체, 법 인명, 영리여부, 운영형태), 시설규모(건물소유형태, 강의실수, 강의실수용인원, 기타교육관련 보유시설), 조직구성인원(사무직, 교강사, 평생교육사 수,정규직 여부, 평생교육사자격증 소지여 부), 기관예산(자체 예산, 외부지원)

	기관(주민자치센터 포함)	여성관련시설, 복지관, 문화원, 직업훈련시설, 기타(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무인가·무등록 야학 등)	
울산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	평생교육진흥원 기준 따름(기관 분류에 대한 논리 필요하다고 봄)	이메일, Fax , 우편, 담당자, 홈페이지, 버스 노선, 시설(주차장, 인터넷, 도서관, 사위실, 회의실), 프로그램 야간 개설 여부
인천	평생교육법+진흥원 기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현황(군구별 평생교육 기관 수 등)	행정구역 일반 현황, 인구 현황(지역별 교육 수준, 노인 인구 분포), 평생학습기관 현황(행정동별로 분포도 조사), 평생교육시설 운영 현황
전남	-	-	-
전북	-	주민자치센터, 문화기관, 청소년기관, 사회복지기관, 학습기관, 공공기관, 노인복지회관, 대학부설, 도서관, 문화의 집, 박물관/미술관, 문해교육기관, 전통문화기관, 기타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학급편성 수, 학생수, 교직원수), 평생학습관 현황(집행기관, 지원액, 강사비, 재료비, 운영비, 기타)
제주	평생교육법 +기타 법령 기관	-	기관(기관명, 회원수, 주소, 전화, FAX , 홈페이지), 대표자(성명, 전화, 이메일), 평생학습업무담당자(직위,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원수(일반직, 전문직, 기타),연간예산, 동아리 현황 (동아리명, 대표, 전화번호, 회원수, 결성일자, 활동목적), 강사현황(성명, 휴대폰, 이메일, 강의과목)
충남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	-
충북	-	-	기관명, 연락처, 직원수(정규직, 비정규직, 평생교육사), 전체사업내용, 주요교육사업, 교육프로그램참여율(연 학습자수, 일일학습자수), 재정적 지원체제(국고보조, 후원금, 교육수강료, 기타), 연간 예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사업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율, 평생교육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여부, 평생교육관련 종사자 교육 내용, 실무자 교육의 효과성, 실무자 교육 요구조사, 충청북도 및 시군의 우선 평생교육 목표, 충청북도 및 시군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조사, 충청북도 및 시군이 평생학습을 집중 지원해야 할 대상(연령대 등),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관련, 충북평생교육진흥원(충북발전연구원)의 요구 역할, 평생학습센터의 요구 역할, 평생교육사 배치 필요성 등

- 표시: 관련 자료가 없음을 의미

[부록 2] 시도별 프로그램 분류 및 프로그램 조사항목

시도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 조사항목
강원	성숙한 시민양성(도서관/학교, 여성, 노인, 아동/청소년, 가족, 사회교육,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민주시민, 지역연구), 사회통합(소외계층, 문해교육), 직업능력(취업인력양성,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교육프로그램 개발 방법, 교육프로그램 개선 빈도, 교육프로그램 평균 이수율, 교육프로그램 성과)
경기	김진화(2009) 6대 분류 따름	기관 대표 10대 프로그램명 등
경남	취미, 오락, 여가, 문화예술교육, 보건, 건강, 스포츠교육, 직업기술, 학력인정, 자녀지도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주 참여 대상(연령별, 대상별), 참여자수(남녀별), 프로그램 주 목적, 프로그램 운영주체(시군지자체 직접운영/주민자치센터/NGO/도서관 등), 개인 참가비, 과목 특징(학점은행제 관련 여부, 자격증 관련 여부, 개설시기), 예산 등
경북	-	강좌명, 대상, 정원, 강의기간(강의시간), 담당강사, 수강료, 운영예산 등 *광역 조사 없음. 경주시 조사표 참고
광주	* 대학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지식인력개발,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분류: 김진화(2009) 6대 분류 따름 *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분류: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수요대상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별), 목적별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등
대구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인터넷 사이버교육, 컴퓨터-정보화 교육, 가족공동체 교육, 외국어 교육, 기타 *광역 조사 없음. 달서구 조사표 참고	학습동아리 개수, 평생교육프로그램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수,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업무(교육프로그램 및 수강생 자료 DB화 여부, 교재 및 학습자료 개발 및 활용 여부, 학습자 출결관리 여부, 학습자 중간 및 만족도 평가 여부, 프로그램 평가 여부, 학습자 상담 여부, 학습동아리 지원 및 운영 여부, 프로그램 수료 후 발표회 여부) 등
대전		-

	* 광역 조사 없음(2011년 7월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대덕구 현황	
부산	김진화(2009) 6대 분류 따름	프로그램 개수, 연간 운영 프로그램 개수(온라인/오프라인/혼합),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 총수, 학습자수(남/여), 교강사수,
서울	김진화(2009) 6대 분류 따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수, 강의방식(온라인/오프라인/혼합), 1회교육기관(월/연간), 교수방법, 1회 교육시수(시간), 연간교육횟수(회), 총모집정원, 총수강인원(남,여), 1회 평균 수강인원, 수강료구분(유료/무료), 수강료(최고, 최저), 재정지원여부, 교육대상, 프로그램개발형태(자체/위탁), 프로그램운영형태(자체/위탁)
울산	프로그램 분류 논리 없다고 봄(담당자 의견)	-
인천	김진화(2009) 6대 분류 따름	프로그램명, 학습참여자 수, 평생교육기관 별 자체 프로그램 계획 운영, 대상별(노인, 여성, 청소년)/기능별(문화예술, 직업훈련, 정보화) 프로그램 등 (2011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발췌)
전남	-	-
전북	문화/예술, 인문/사회, 언어/외국어, 정보/미디어, 과학/기술, 건강, 문해교육, 창업/자격증, 기타 프로그램, 학점은행제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프로그램 개수, 강사현황, 운영사업비 현황
제주	-	프로그램명, 학습대상, 인원, 운영기관, 소요예산
충남	-	-
충북	김진화(2009) 6대 분류 따름	프로그램 수요, 프로그램 만족도 요인,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방법, 프로그램 운영 장애요인, 충청북도 및 시군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정책과제로 삼아야할 교육영역 조사 등

- 표시: 관련 자료가 없음을 의미

김진화(2009) 6대 분류는 [부록 6] 참조

[부록 3] 한국교육개발원과 지역별 조사항목 비교

* 빨간색 표기는 동일 조사항목임.

1) 한국교육개발원과 서울시 조사항목 비교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시
I. 기관 개황 1. 기관명 2. 시설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 ① 평생교육 운영학교 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③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④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⑥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⑦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⑧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⑨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⑩ 평생학습관 ◎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⑪ 도서관 ⑫ 문화시설 ⑬ 여성 관련 시설 ⑭ 청소년 시설 ⑮ 복지관 ⑯ 직업훈련시설 ⑰ 기타시설 3. 시도 4. 지역(해당 평생학습도시의 행정구역) 5. 기관 설립일(관할 기관에 신고 할 때 작성한 기관의 설립 년, 월, 일) 6. 우편번호 7. 주소 8. 대표전화번호 9. 홈페이지 10. 변동사항(신규 시설이나 폐관된 시설의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 II. 예산 1. 지역예산(총액) ▶ 세출예산 총액을 재정별로 입력 1) 국비 2) 시도 비 3) 시군구비 2. 평생교육관련 예산	I. 평생교육기관 현황 1. 기관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 ① 평생교육 운영학교 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③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④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⑥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⑦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⑧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⑨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⑩ 평생학습관 ◎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⑪ 도서관 ⑫ 박물관·미술관 ⑬ 청소년시설 ⑭ 여성 관련시설 ⑮ 복지관 ⑯ 문화원 ⑰ 직업훈련시설 ⑱ 기타시설 2. 기관기본현황 1) 소재지(사무실과 강의실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무실의 주소지를 기재) 2) 기관장 명(시설의 대표자 또는 원장의 이름) 3) 기관설립 일(관할 기관에 신고 할 때 작성한 기관의 설립 년, 월, 일) 4) 대표전화번호, FAX번호 5) 홈페이지 주소 6) 작성자(성명, 이메일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번호) 7) 설립현황 (1) 설립주체(지자체/법인/개인/기타 중 선택기재) (2) (설립주체가 법인인 경우)법인명 (3) 영리/비영리 구분 (4) 운영형태(직영/위탁) 3. 시설 규모 1) 건물소유형태(공공소유, 법인소유, 개인소유, 임차(전세/월세), 위탁, 기타 중 선택기재)

▶ 세출예산 중 평생교육 전담부서에서 자체 집행하는 예산만 입력 1) 국비 2) 시도 비 3) 시군구비 III. 프로그램 ◎ 프로그램 및 학습자 총괄 1. 조사회차 2. 프로그램 유무(있음/없음) 3. 프로그램 총수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3) 계 4. 프로그램 분류 1) 대분류 2) 중분류 3) 소분류 5. 프로그램명 6. 주제구분 1) 학력보완 2) 성인기초/문자해독 3) 직업능력향상 4) 인문교양 5) 문화예술 6) 시민참여 7. 교육기간(1개월 미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24개월, 25개월 이상, 연간(온라인강좌)) 8. 교육시수(시간) 9. 연간 교육 횟수 10. 총 수강인원 1) 남 2) 여 11. 수강료 구분(무료/유료) 12. 수강료 1) 최고 2) 최저 13. 재정지원(지원 없음/국고지원/교육청지원/지방자치단체지원/기업지원/기타지원) 14. 주요 대상(어린이/청소년/노인/통합) 15. 학점인정여부 (예/아니요) 16. 프로그램개발형태(자체개발/위탁개발/외국도입) 17. 프로그램운영형태(자체운영/위탁운영/병행운영) ◎ 교 강사 총괄 1. 조사회차 2. 구분 1) 1년 미만 근무강사 2) 1년 이상 근무강사 3. 교 강사 총 합계 ▶ 1), 2), 3) 각 항목 별 연령대 구분 4. 교 강사 유무 (있음/없음) IV. 담당자 1. 성명 2. 전화번호 3. 이메일 주소	2) 교육시설현황(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실 수, 시설 총 수용인원, 기타 교육관련 시설) 4. 조직구성인원 1) 사무직인원 2) 교. 강사인원 3) 총계(사무직+교.강사) 4) 평생교육사 총계 ▶ 사무직, 교.강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 여부로 구별 5. 기관예산(연간) 1) 자체조달예산 2) 외부지원예산 II.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 분류체계별 프로그램 운영 총괄 표 1. 프로그램 개수(아래의 18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프로그램 수 기재하고 6대 대분류별로 합산하여 소계에 기재, 강의 방식(온라인/오프라인/온오프라인 혼합)구별기재) 1) 기초문해(내국인 한글문해/다문화 한글문해/한글생활문해) 2) 학력보완(초등학력 보완/중등학력 보완/고등학력 보완) 3) 직업능력(직업준비/자격인증/현직직무역량) 4) 문화예술(레저생활 스포츠/생활문화 예술/문화예술 향상) 5) 인문교양(건강심성/기능적 소양/인문학적 교양) 6) 시민참여(시민책무성/시민리더 역량/시민참여활동) 2. 연간 운영 프로그램 총 수(온라인/오프라인/온오프라인 혼합 구별 기재 후 프로그램 총수 합산 기재) 3. 연간 총 수강인원(프로그램별로 매회 등록한 수강생 수를 합산하고 전체 프로그램 등록 수강생 수를 취합 합산 기재) ◎ 분류체계별 1개 대표 프로그램 상세 운영 현황 1. 프로그램 명 2. 강의방식 3. 1회 교육기간 4. 교수방법(강의식, 토론식, 탐구 형, 사례 연구 형, 기타로 구분) 5. 1회 교육시수 6. 연간 교육 횟수 7. 총 모집 정원 8. 총 수강인원(등록인원) 9. 평균 수강인원(남, 여 각각 합산하여 기재) 10. 수강료구분(유료/무료) 11. 수강료
---	--

	12. 재정지원여부(지원 없음/국고지원/교육청 지원/지방자치단체 지원/기업지원/기타지원 중 선택기재) 13. 교육(수요)대상(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중 선택기재) - 어린이 : 0세-만8세 - 청소년 : 만9세-만24세 - 성인 : 만25세-만64세 - 노인 : 만65세 이상 14. 프로그램 개발 형태(자체개발/위탁개발 중 선택기재) 15. 프로그램 운영 형태(자체운영/위탁운영 중 선택기재)
	※ 조사 대상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청소년시설, 여성 관련시설, 복지관, 문화원, 직업훈련시설, 기타시설

2) 한국교육개발원과 부산시 조사항목 비교

한국교육개발원	부산시
I. 기관 개황 1. 기관명 2. 시설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 ① 평생교육 운영학교 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③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④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⑥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⑦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⑧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⑨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⑩ 평생학습관 ◎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⑪ 도서관 ⑫ 문화시설 ⑬ 여성 관련 시설 ⑭ 청소년 시설 ⑮ 복지관 ⑯ 직업훈련시설 ⑰ 기타시설 3. 시도 4. 지역(해당 평생학습도시의 행정구역)	I. 평생교육기관 현황 1. 기관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 ① 평생교육 운영학교 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③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④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⑥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⑦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⑧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⑨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⑩ 평생학습관 ◎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⑪ 도서관 ⑫ 박물관.미술관 ⑬ 청소년시설 ⑭ 여성 관련시설 ⑮ 복지관 ⑯ 문화원 ⑰ 직업훈련시설 ⑱ 기타시설 2. 기관기본현황 1) 소재지(사무실과 강의실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5. 기관 설립일(관할 기관에 신고 할 때 작성한 기관의 설립 년, 월, 일) 6. 우편번호 7. 주소 8. 대표전화번호 9. 홈페이지 10. 변동사항(신규 시설이나 폐관된 시설의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	사무실의 주소지를 기재) 2) 기관장 명(시설의 대표자 또는 원장의 이름) 3) 기관설립 일(관할 기관에 신고 할 때 작성한 기관의 설립 년, 월, 일을 기재) 4) 대표전화번호, FAX번호 5) 홈페이지 주소 6) 작성자(성명, 이메일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번호)
II. 예산 1. 지역예산(총액) ▶ 세출예산 총액을 재정별로 입력 1) 국비 2) 시도 비 3) 시군구비 2. 평생교육관련 예산 ▶ 세출예산 중 평생교육 전담부서에서 자체 집행하는 예산만 입력 1) 국비 2) 시도 비 3) 시군구비	7) 설립현황 (1) 설립주체(지자체/법인/개인/기타 중 선택기재) (2) 지자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3) 법인(설립주체가 법인인 경우) (4) 영리/비영리 구분 (5) 운영형태(직영/위탁) 3. 시설 규모 1) 건물소유형태(공공소유, 법인소유, 개인소유, 임차(전세/월세), 위탁, 기타 중 선택기재) 2) 교육시설현황(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실 수, 시설 총 수용인원, 기타 교육관련 시설) 4. 조직구성인원 1) 사무직인원
III. 프로그램 ◎ 프로그램 및 학습자 총괄 1. 조사회차 2. 프로그램 유무(있음/없음) 3. 프로그램 총수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3) 계 4. 프로그램 분류 1) 대분류 2) 중분류 3) 소분류	2) 교. 강사인원 3) 총계(사무직+교.강사) 4) 평생교육사 총계 ▶ 사무직, 교.강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 여부로 구별 5. 기관예산(연간) 1) 자체조달예산 2) 외부지원예산
III. 프로그램명 6. 주제구분 1) 학력보완 2) 성인기초/문자해독 3) 직업능력향상 4) 인문교양 5) 문화예술 6) 시민참여 7. 교육기간(1개월 미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24개월, 25개월 이상, 연간(온라인강좌)) 8. 교육시수(시간) 9. 연간 교육 횟수 10. 총 수강인원 1) 남 2) 여 11. 수강료 구분(무료/유료) 12. 수강료 1) 최고 2) 최저 13. 재정지원(지원 없음/국고지원/교육청지원/지방자치단체지원/기업지원/기타지원) 14. 수요 대상(어린이/청소년/노인/통합) 15. 학점인정여부 (예/아니요) 16. 프로그램개발형태(자체개발/위탁개발/외국도입) 17. 프로그램운영형태(자체운영/위탁운영/병행운영) ◎ 교 강사 총괄	II.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 분류체계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프로그램 개수(18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프로그램 수 기재하고 6대 대분류별로 합산하여 소계에 기재, 강의 방식은 온라인/오프라인/온오프라인 혼합을 구별기재) 1) 기초문해(내국인 한글문해/다문화 한글문해/한글생활문해) 2) 학력보완(초등학력 보완/중등학력 보완/고등학력 보완) 3) 직업능력(직업준비/자격인증/현직직무역량) 4) 문화예술(레저생활 스포츠/생활문화 예술/문화예술 향상) 5) 인문교양(건강심성/기능적 소양/인문학적 교양) 6) 시민참여(시민책무성/시민리더역량/시민참여활동) 2. 연간 운영 프로그램 총수(온라인/오프라인/온오프라인 혼합 구별 기재 후 프로그램 총수 합산 기재) 3. 참여자수(해당 프로그램에 1년동안 참여한 총수 기재)

1. 조사회차 2. 구분 1) 1년 미만 근무강사 2) 1년 이상 근무강사 3) 교 강사 총 합계 ▶ 1), 2), 3) 각 항목 별 연령대 구분 4) 교 강사 유무 (있음/없음) IV. 담당자 1. 성명 2. 전화번호 3. 이메일 주소	III.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학습자수 1.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학습자수(프로그램에 1년동안 학습자 수로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을 구분하여 기재, 프로그램별 등록 학습자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수) IV. 평생교육기관 교강사 수 1. 조사기준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강의하는 자로 내외국인 포함함 V. 평생교육기관 사무직원 수 1. 조사기준일 현재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하며,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자도 사무직원으로 포함됨) ※ 조사 대상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2.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청소년시설, 여성 관련시설, 복지관, 문화원, 직업훈련시설, 기타시설
---	--

3) 한국교육개발원과 경기도 조사항목 비교

한국교육개발원	경기도
I. 기관 개황 1. 기관명 2. 시설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 ① 평생교육 운영학교 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③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④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⑥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⑦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⑧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⑨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⑩ 평생학습관 ◎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⑪ 도서관 ⑫ 문화시설 ⑬ 여성 관련 시설 ⑭ 청소년 시설 ⑮ 복지관 ⑯ 직업훈련시설	I. 기관 정보 1. 기관명 2. 기관 설립 목적/주요 사업 및 기능 3. 기관 대표자명 4. 기관 설립연도 5. 기관 연락처 1) 주소 2) 대표 전화번호/FAX 3) e-mail 6. 홈페이지 유무(운영 시 주소 기입) 7. 조직구성원 1) 전체 직원 수 2) 정규직 수 3) 비정규직 수 4)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자 수 8. 예산 1) 연간예산규모 2) 재정지원여부(지원없음/국고지원/교육청지원/지방자치단체지원/기업지원/기타지원) 3) 수강료(최고/최저) 9. 기관 주요 시설 현황 1) 강의실 수 2) 강당(보유여부/(보유 시)최대수용인원) 10. 학점은행제운영기관 지정 여부 11. 기관유형

⑦ 기타시설 3. 시도 4. 지역(해당 평생학습도시의 행정구역) 5. 기관 설립일(관할 기관에 신고 할 때 작성한 기관의 설립 년, 월, 일) 6. 우편번호 7. 주소 8. 대표전화번호 9. 홈페이지 10. 변동사항(신규 시설이나 폐관된 시설의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 II. 예산 1. 지역예산(총액) ▶ 세출예산 총액을 재정별로 입력 1) 국비 2) 시도 비 3) 시군구비 2. 평생교육관련 예산 ▶ 세출예산 중 평생교육 전담부서에서 자체 집행하는 예산만 입력 1) 국비 2) 시도 비 3) 시군구비 III. 프로그램 ◎ 프로그램 및 학습자 총괄 1. 조사회차 2. 프로그램 유무(있음/없음) 3. 프로그램 총수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3) 계 4. 프로그램 분류 1) 대분류 2) 중분류 3) 소분류 5. 프로그램명 6. 주제구분 1) 학력보완 2) 성인기초/문자해독 3) 직업능력향상 4) 인문교양 5) 문화예술 6)시민참여 7. 교육기간(1개월 미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24개월, 25개월 이상, 연간(온라인강좌)) 8. 교육시수(시간) 9. 연간 교육 횟수 10. 총 수강인원 1) 남 2) 여 11. 수강료 구분(무료/유료) 12. 수강료 1) 최고 2) 최저 13. 재정지원(지원 없음/국고지원/교육청지원/지방자치단체지원/기업지원/기타지원) 14. 주요 대상(어린이/청소년/노인/통합)	▶ 하단의 기관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 번호 기입 1) 지자체(시군구청 직접운영) 2) 평생교육전담기관(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등) 3) 주민자치센터 4)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5)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6)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비정규학교 및 학력인정시설 등) 7) 원격평생교육기관 8) 사회복지기관 9)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유통업체 부설 평생교육기관) 10)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기관(기업체 연수원 등) 11)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12) 문화예술 평생교육기관 13)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14) 건강보건 평생교육기관 15) 청소년 평생교육기관 16) 여성 평생교육기관 17) 성인문해교육기관 18) 직업훈련교육기관 19) 도서관 20) 박물관 21) 학원(성인대상 기술계·전문계·외국어계 등) 22) 기타평생교육기관(상기 분류로 구분되기 어려운 기관 유형) II. 프로그램 정보 1. 기초문해 1) 문자해독프로그램(한글교실(초급)/한글교실(중급)/미 인정 한글강좌) 2) 기초생활기술프로그램(다문화교육/가족 문해 교실/한글교실(고급)/한글응용교육) 3) 문해 학습계좌프로그램(초등학력인정과정/학습계좌신청 문해강좌/귀화인한국어교육) 2. 학력보완프로그램 1) 초등학력보완프로그램(중입 검정고시강좌/초등 학력인증강좌/초등 교과 연계강좌/과학교실) 2) 중등학력보완프로그램(고입검정고시강좌/대입검정고시강좌/중고생교과연계강좌/진로강좌) 3) 고등학력보완프로그램(독학사강좌/학점은행제강좌/시간제등록강좌/대학비학점강좌) 3. 직업능력 1) 직업준비프로그램(인력양성과정/창업관련과정/취업준비과정/재취업정보교육) 2) 자격인증프로그램(외국어자격인증/지도사 양성과정/자격증취득과정/자격인증과정/토익·토플강좌) 3) 현직직무역량프로그램(공통직무연수/전문 직무연수/평생교육사 연수) 4. 문화예술 1) 레저생활스포츠프로그램(레저활동 강좌/생활스포츠강좌/스포츠예술활동/수영·골프강좌/벨리댄스교실/활쏘기) 2)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풍선아트강좌/사진예술 강좌/천연염색 강좌/생활 공예 강좌/노래교실)
---	---

15. 학점인정여부 (예/아니요) 16. 프로그램개발형태(자체개발/위탁개발/외국도입) 17. 프로그램운영형태(자체운영/위탁운영/병행운영) ◎ 교 강사 총괄 1. 조사회차 2. 구분 1) 1년 미만 근무강사 2) 1년 이상 근무강사 3) 교 강사 총 합계 ▶ 1), 2), 3) 각 항목 별 연령대 구분 4) 교 강사 유무 (있음/없음) IV. 담당자 1. 성명 2. 전화번호 3. 이메일 주소	3)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음악·무용·미술·서예지도/문화예술관람/도자기·공예/연극·영화) 5. 인문교양 1) 건강심성프로그램(상담치료/종교교육/식생활교육/생활의료교육/보건교육) 2)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역할수행교육/예절교육/정보인터넷활용/생활외국어·생활한자/가정생활) 3) 인문학적교양프로그램(일반 문학 강좌/과학일반강좌/역사·전통강좌/철학·행복학강좌/독서 강좌) 6. 시민참여 1)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인권교육/양성평등교육/다문화이해/환경생태체험강좌/주민자치교육) 2) 시민리더역량프로그램(지역리더양성/평생학습리더양성/NPO지도자과정/지역 문화 해설 사) 3) 시민책무성프로그램(학습동아리교육/평생교육자원봉사/환경실천교육/평생학습네트워크) ▶ 위 78개 영역 중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체크 7. 핵심 10대 평생교육프로그램 명 III. 인적정보 1. 평생교육원장 1) 성명 2) 주요 활동(전공)분야 3) 연락처(사무실 전화번호/e-mail) 4) 성별 5) 연령대 6) 최종학력 2. 평생교육 업무담당 실무자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e-mail) 3) 소속 및 직위 4) 담당업무 5) 평생교육 업무 담당 기간 6) 설별 7) 연령대 8) 최종학력 9)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10)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기관(평생교육사만 응답) ※ 조사 대상 지자체(시군구청 직접운영), 평생교육전담기관(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등), 주민자치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비정규학교 및 학력인정시설 등), 원격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유통업체 부설 평생교육기관),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기관(기업체 연수원 등),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 평생교육기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건강보건 평생교육기관, 청소년 평생교육기관, 여성 평생교육기관, 성인문해교육기관, 직업훈련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학원(성인대상 기술계·전문계·외국어계 등), 기타평생교육기관(상기 분류로 구분되기 어려운 기관 유형)
--	--

[부록 4] 평생교육통계조사를 하는 지역 사례 자료

1) 강원도 삼척시

- 평생교육통계조사의 과정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과정
 -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삼척시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두 축으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조례 제·개정, 예산 및 회계 업무,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대학 프로그램 등을 담당한다. 2007년 개소한 평생학습지원센터는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평생학습도시 성과집 발간 및 통계작성,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평생교육통계 관련 업무는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행정력과 인력이 더 많은 평생학습관의 협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평생교육통계를 조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 전 과정을 정책입안자, 기관 담당자, 일반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담당자들이 있다.
-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주기
 - 삼척시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는 삼척시에서 교육지원경비를 지원받아 교육사업을 하는 기관들을 모두 평생교육기관 조사의 범위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기관 조사를 하는 평생학습센터가 이렇게 범주를 설정하더라도, 기관들이 스스로를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인식하지 않아 기관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조사방법은 공문 시행, 전화, 방문 조사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 주체가 기관 대상으로 삼더라도, 기관이 스스로를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관 조사에 앞서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전에는 스스로를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기관들도 이제는 스스로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대상 기관에 있어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조사주기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 활용 방식

- 기본적으로 매년 보고서와 성과집을 발간하는데, 이는 다음해 예산을 받기 위한 의회 보고용, 삼척시 보고용으로 활용되며, 평생교육협의회에 성과 보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도시, 학습동아리 관계자 연수, 평생학습축제 등을 할 때 자료집마다 평생교육통계를 넣어서 관계자 및 일반 시민들이 지역의 평생학습 현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 또한 삼척 평생교육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자 이력, 강사 및 학습동아리 DB를 구축하기 위해 삼척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https://lifelong.samcheok.go.kr>)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2007년 3월 구축되었으며(예산: 20,000천원), 이후 2009년 3월 웹 접근성 개선(예산: 20,000천원)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학습 소식지인 아릅드리를 발간(2009년 3월 창간, 계간지)했다.

2) 경기도 시흥시

□ 네트워크를 활용한 평생교육통계 조사

- 시흥시는 2006년 7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기획계를 통합하여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였고, 현재는 평생교육원 아래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팀, 중앙도서관의 네 개의 과가 조직되어 있다. 이 중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기획, 평생학습센터, 여성비전센터의 3계로 나누어져 있다.

- 시흥시의 평생교육통계 조사에는 기관 네트워크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흥시는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의 세 개 권역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영역을 나누고 있는데, 각 권역별로 매년 대표 기관을 1개씩 지정한다. 이 대표기관의 주도 아래 권역 기관들이 함께 권역 공동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공동 사업의 성격이 점차 지역에 공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평생교육통계의 측면에서는 기관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관이나 신설 기관을 발굴해내고 그 기관의 현황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관 주도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하면 비협조적이었던 기관도,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관이 접촉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보았다.

□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주기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아이어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라면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조사 방법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교육기관 발굴과 현황 조사 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 한다. 왜냐하면 기관의 기본사항은 거의 바뀌지 않으며, 기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정기적인 기관조사는 아니지만, 2012년 평생학습도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평생교육기관 단체 실무자, 주민자치위원, 강사, 수강생, 학습동아리회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1년 7월)를 하는 등의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사

들을 고민하여 실시하고 있다.

□ 활용 방식

- 교육개발원, 평생교육진흥원 통계조사, 2010년 경기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료집을 만들 때 기초 자료로도 활용한다. 또한 2007년 12월 오픈한 평생교육정보서비스홈페이지와 2008년 12월 발간을 시작한 평생학습소식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 자원활동가들에 의한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현황 업데이트

- 연수구는 2003년 9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2004년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05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평생학습센터 소식지 발간가 구축되는 등 그 체계가 일찍이 잡혔다. 이에 2005년 평생교육기초조사를 시작으로 데이터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연수구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 설문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으며, 필요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기관들이 러닝함에 홍보물을 비치하면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 러닝샵 학습설계사(자원활동가)들이 기관의 프로그램을 웹에 업데이트 하며, 홍보물이 없는 기관들은 전화 연락을 하여 정보를 수합하고 있다.

□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주기

- 조사 범위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 외에도 기타 법령에 근거한 기관들까지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행정 구역 일반 현황, 인구 현황(지역별 교육수준, 노인 인구 분포 등), 평생학습기관 현황, 행정 동별 분포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등이다. 조사 방식은 일반 기관 현황의 경우에는 매년 변동사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기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보다는 거의 통계청이나 구정 현황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기관에 공문으로 자료 요청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필요에 의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로는 요구조사(2010년도 실시), 연수구 평생학습도시 SWOT분석 등이 있다.

□ 활용 방식

- 현재는 연수구의 평생교육 사업 방향을 잡기 위한 내부 자료로 사용하고 있고 평생학습소식지 발간에 활용하는 정도이나, 앞으로 워크숍, 강사 교육, 실무자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책자로 발간을 하고자 하나, 예산의 부족으로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
- 연수구는 그나마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데이터가 잘 수합이 되어 있는 편이나, 같은 인천 지역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마다 그 편차가 크다. 이는 개별 단체장의 의미와 부서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연수구 평생교육 담당자는 이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중앙 추진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4) 경주시

□ 지역에 맞는 평생교육기관 분류 시도

- 경주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과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을 분류함에 있어 경주시의 특성에 맞는 분류를 나름대로 시도하고 있다. 가령, 경주가 문화예술 대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전통기관도 별도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경주시

관공서에서의 평생교육은 예산이나 수강료 등에 있어 여타 기관들과 차이가 많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기관의 범주에 속하는 시설들은 우선적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정해 서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조사 방식은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전화하고, 조사가 잘 안 되는 곳은 홈페이지, 홍보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기관들은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받아 정보를 수집한다. 주기적으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며, 편의상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다.

☐ 활용 방식

- 기관 간에 비교가 되는 것을 꺼려하여 홈페이지에 각 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수강생 수나 수강료 등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전화상으로 문의가 왔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모 사업, 위탁 사업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경주시 평생교육담당자는 각 지자체의 데이터를 구축해나가는 통계조사가 현재 평생교육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자체 수준에서 해나갈 때는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평생교육통계조사를 할 때도 결국 지자체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5) 대구 달서구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설정

- 달서구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교과부에서 제시한 범위

를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다. 달서구 평생교육 담당자는 평생교육법에 속하지 않더라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부가 조사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기관이더라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용인시의 조사지를 참고하여 달서구에 맞는 조사항목을 넣은 조사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었던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 사업에 2008년 참여하여 평생학습도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자원을 발굴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09).

□ 주민 요구조사와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 달서구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의 학습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교육기관 간의 중복적인 프로그램 운영, 낮은 접근성 등이 학습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지역 내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 요구조사와 자원조사였다(평생교육진흥원, 2010c: 110).

6) 울산광역시

□ 교육사업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 울산광역시는 교육 사업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범위의 설정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다. 현장에서 의미 있는 기관의 범주와 분류 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현황 조

사 자체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학습동아리 현황 조사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기관 조사 양식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활용할 예정이다.

- 조사 방식은 교육 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각 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울산 지역에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기관들 중에 오히려 참여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으며(사업장 부설, 언론기관 부설 등), 도서관, 문화원(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시민단체, 문해 교육 기관 등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 광역 지역 내 모든 기관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부서에 요청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수합하기도 한다. 조사 주기는 2년에 한 번 정도이다.

□ 쌍방향 소통을 위한 기반으로 평생교육통계를 활용할 계획

- 울산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한 홍보 자료로 쓰고 있다. 현재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소식을 중심으로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으나 점차 울산 지역 내 평생교육관련 정보를 수합·소개하여 지역 주민들이 수합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평생교육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기관과 학습자가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7) 대전 대덕구

□ 강좌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 선택

- 대덕구는 5명 이상의 대덕구민이 모여 관심 있는 강좌를 신청하면 구민이 모이는 장소로 강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배달 강좌

제)를 실시하고 있다. 배달 강좌제는 구민의 일상으로 다가가는 평생학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법이며, 대덕구에서 실시한 이후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해왔다. 이러한 배달강좌제의 경우 공문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를 통해서 주민 만족도와 요구 조사를 하거나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 만족도 조사와 요구 조사는 의견을 서술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조사 주기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 배달 강좌제를 제외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은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사한다. 그런데 대덕구의 경우에는 기관 관련 조사를 하되 통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적은 아직까지 없다. 통계를 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 기관의 범위나 조사 항목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8) 충남 아산시

- 평생교육진흥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한 신규 평생교육기관 발굴
 - 충남 아산시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을 모두 포함하여 평생교육기관 조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시설보다 기타 법령에 근거하지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평생교육기관 조사를 위해서 신규 기관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데,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신규 기관을 가장 잘 발굴되고 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이메일, 공문을 통해서 조사지를 전달해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 활용 방식

- 지역 내에서 어떤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를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사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홍보 및 안내용으로 활용을 많이 한다. 대개의 경우 아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며, 2010년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편람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 적도 있다. 그러나 책자를 배포하는 데에는 여러 제한점들이 있어 현재는 다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만 안내하고 있다.
- 그리고 지역 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 조사를 하여 부족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보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평생교육통계 조사에 대한 데이터로 사용하기도 한다.

9) 남양주시

□ 지역 평생교육담당자에게 유의미한 조사 항목에 대한 고민

- 남양주시 평생교육 담당자는 대개 평생교육통계 조사 항목은 일반적인 현황 조사에 그친다고 보고 좀 더 유의미한 조사 항목을 넣어 올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나 프로그램의 증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의 증가 정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 삶에 태도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의 변화, 지역주민간의 관계 및 소통 등의 질적 데이터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비롯한 질적인 데이터들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실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질적인 영역을 양화할 수 있도록 시도도 할 예정이다. 양적 지표를 가지고 변인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조사 범위, 조사 방식, 조사 주기

- 남양주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되어 있는 시설과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시설, 복지관, 문해교육 단체 등 기타 법령에 따르는 기관들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한다. 또한 민간연구소, 문화원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는 모두 포함한다. 남양주시의 평생교육기관은 총 60개 정도여서 일대일로 공문을 보내어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협조가 잘 되는 편이다. 조사 주기는 경기도 통계조사나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를 할 때 일정과 맞춰서 진행하며, 자체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활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세세하게 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그러한 항목을 매년마다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남양주시는 네트워크 공모 사업이 있을 때 연락을 취하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활용 방식

- 조사 결과는 직접적으로는 관련 담당자 교육이나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다산서당: <http://www.dasanedu.org/>)를 통해 기관의 현황,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이버 학습프로그램 등을 시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10) 경남 거창군

□ 조사의 범위

- 거창군에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관내 등록되어 있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창군의 경우는 지역이 크지 않아서 각 기관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지 않은 편이다. 조사 방식은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데이터를 수합한다.

□ 기관 간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거창군에서는 평생교육기관 조사의 결과를 각 기관들과 공유하여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조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군의 입장에서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군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공유하면 군청에서 각 기관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들이 다른 기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면서 운영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부록 5] 프로그램 분류체계(KLPCS) 설명

(평생교육진흥원의 한국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지침 자료)

대 분 류		중 분 류	
6대영역	정 의	하위영역	정 의
기초문해교육 (언어적 기초와 활용)	한글을 읽고, 쓸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내국인한글문해 프로그램	내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다문화한글문해 프로그램	다문화·외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	문자해득 후 한글을 응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학력보완교육 (학력 조건과 인증)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직업능력교육 (직업준비와 직무역량개발)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준비프로그램	특정직업에 새롭게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기능을 획득하고 관련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격인증프로그램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	현직 종사자에게 보다 발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하고, 관련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레저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관련 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있게 체험하고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인문교양교육 (교양확장 및 소양개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건강심성프로그램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인 안정을 촉진하고 신체 건강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일상생활의 적절한 역할수행과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과 관련된 기능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전인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고,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사회적 책임성과 공익적 활용)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시민책임성 프로그램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성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고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조직 및 공익적 사업에 대한 개인적·집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참고문헌

- 경상남도(2011). 2011년도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경남발전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2009)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 김은숙(2009). 강원도 평생학습 활성화 기본구상 및 2010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강원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센터.
- 김진화(2009)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 문환규(2010). 지역평생교육정책의 환경변화와 광주광역시의 평생교육 진흥방안. 광주연구 4호. 광주발전연구원.
- 이동기(2010). 전라북도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 센터.
- 최운실(2010) 경기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연구. 경기도청.
- 평생교육진흥원(2010a) 2009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기반 조성 지원사업.
- 평생교육진흥원(2010b) 2009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 평생교육진흥원(2010c)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백서.
-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European Commission(2002). European report on quality indicators of lifelong learning. Retrieved May 24, 2005 from [http:// europa.eu.int/comm/education/policies/lll/life/report/quality/report_en.pdf](http://europa.eu.int/comm/education/policies/lll/life/report/quality/report_en.pdf)
- European Commission(2005). *Task force report on adult education survey*. EUROSTAT working papers and studie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06). *Classification for Learning Activities Manual*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기관 조사 양식

경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자료 조사 양식

대구광역시 달서구청(2009). 대구 달서구 평생교육 관계자 설문조사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2009). 평생학습에 대한 달서구 학습자 의식조사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2011). 평생교육시설 조사지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서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서 작성지침

울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울산중부도서관(2011). 2011년 울산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집.

울산발전연구원(2010). 울산지역 평생교육기관 현황 조사표.

울산발전연구원(2010). 학습동아리 현황표.

인천광역시(2011)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제주시(2008). 기관단체현황 조사서

충북평생교육진흥원(2011). 충청북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표.

충북평생교육진흥원(2011). 충청북도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사업 현황조사표.